

현안분석 2012-04

#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주요조문 비교분석 및 평가

이 주 윤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현안분석 2012-04

#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주요조문 비교분석 및 평가

이 주 윤

#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주요조문 비교분석 및 평가

A Comparative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Main  
Provisions under the Korean Free Trade Agreements

연구자 : 이주윤(초청연구원)  
Lee, Joo-Yun

2012. 9. 14.

# 요약문

## I. 배경 및 목적

- FTA에 관한 그동안의 연구가 주로 경제학적 관점에 치우쳐 있어 FTA와 관련한 법적 측면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함
-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FTA 협상은 물론, 향후 진행될 FTA 체결에 있어 우리나라에 보다 적절하고 유리한 조약문 채택을 위해서는 기존에 체결된 FTA 협정에 대한 선행 검토가 요구됨
-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FTA 협정 전체를 일견해 봄으로써, 모든 협정문의 구조와 규율 형식은 물론 각 협정문의 주요 규정을 비교 고찰하고자 함

## II. 주요 내용

-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의 현황과 협정문의 구조 분석
  - 현재 정체되어 있는 WTO체제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규율하기 위해 국가들은 최근 FTA 체결을 확대하고 있음
  - 2012년 9월 현재, 우리나라는 45개의 국가와 8개의 FTA를 체결하여 해외시장 확보 및 국가 시스템의 선진화를 추구하고 있음

- 8개 FTA의 내용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유사한 구조, 즉 총칙,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경쟁,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행정 및 조직규정, 분쟁해결 및 최종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음

□ 상품무역규정에 관한 각 FTA별 비교 분석

-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에 관해 각 FTA는 GATT의 관련 규정을 그대로 또는 준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원산지규정과 통관절차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각 FTA별로 차이가 있음
- 무역구제에 관해 각 FTA는 주로 WTO 플러스 방식을 지향하고 있으며, FTA의 일반 분쟁해결절차 대신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에 관해 각 FTA는 SPS협정상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며, FTA의 일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표준관련조치에 관해 각 FTA는 TBT협정의 이행이나 TBT협정상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며, 표준관련조치의 이행을 위해 위원회나 작업반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서비스무역과 투자 및 지식재산권규정에 관한 각 FTA별 비교 분석

- 국경간 서비스무역에 관해 각 FTA는 보통 ‘상업적 주재’를 제외한 세 유형의 서비스무역을 대상으로 하여 GATS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합치되도록 자유화할 의무를 부여하며, 투자에

관해 한·EU FTA를 제외한 모든 FTA는 분쟁 발생시 ISD절차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경쟁정책에 관해 FTA는 보통 국내경쟁법의 집행 또는 협의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FTA의 일반 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부조달에 관해 FTA는 주로 GPA에 규율된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하거나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식재산권에 관해 FTA는 TRIPs 또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제 조약의 이행이나 TRIPs에 규정된 기존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며, FTA보다 국내법상 더 광범위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행정 및 환경규정에 관한 각 FTA별 비교 분석

- 분쟁해결에 관해 FTA는 자신과 WTO의 분쟁해결절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절차는 배타적으로 이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예외규정 중 일반예외와 안보예외에 관해 FTA는 GATT와 GATS의 관련 규정을 그대로 또는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환경규정에 관해 FTA 중 별도의 챕터를 포함하고 있는 한·EU FTA, 한·페루 FTA 및 한·미 FTA는 환경법의 적용과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권고적 성격의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발전이 기대되는 분야임

### Ⅲ. 기대효과

- 그 동안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FTA 협정문의 주요 조문에 대한 전체적 연구가 미진하였기 때문에, 통합적 측면에서 협정문을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는 학문적 기회를 제공함
- 향후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FTA에서 우리에게 보다 유리한 조문 구성을 위한 정책 구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주제어 : FTA, WTO, 내국민대우, 원산지규정, 무역구제, 서비스무역, 지식재산권, 분쟁해결, 예외규정, 환경규정

# Abstract

## I . Background and Purpose

- As the study on the Free Trade Agreements has been focusing upon the economic aspects until now, it is necessary to do legal research more systematically and comprehensively.
- In order to adopt the Agreements which are proper and useful to Korea in the forthcoming conclusion of the FTAs, including the current FTA negotiations, it is required that we should take the existing FTAs into account.
- This research is aimed at comparing and evaluating the main provisions under the FTAs to which Korea has acceded as well as the structures and forms of those FTAs, by taking a look at the FTAs on the whole.

## II . Main Contents

- Current Status of the Korean FTAs and Analysis of their Structure
  - Presently, more and more the WTO Members are trying to increase the adoption of the FTAs with a view to dealing with the unresolved problems under the WTO system.



- As of September 2012, Korea has concluded total 8 FTAs with 45 countries and sought for global market access and the advancement of governmental system.
- Even though the contents of 8 FTAs are not entirely all the same, they are usually composed of similar structures, for example general aspects, trade in goods, trade in services, investment, competition, government procuremen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dministrative and institutional provisions, dispute settlement and final provisions.
- Comparative Analysis concerning the Provisions on Trade in Goods under the FTAs
  - Having regard to national treatment and market access for goods, the FTAs set out that the parties shall accord them in accordance with relevant GATT provisions or apply to them by those provisions *mutatis mutandis*.
  - Having regard to rules of origin and customs procedures, the FTAs have different provisions in concrete contents.
  - Having regard to trade remedies, the FTAs mostly take WTO plus approach and regulate that neither party may or shall have recourse to dispute settlement under the FTAs.
  - Having regard to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the FTAs provide that the parties affirm their existing rights and duties under the SPS Agreement and that neither party may or shall have recourse to dispute settlement under the FTAs.

- Having regard to standards-related measures, the FTAs lay down that the parties affirm their existing rights and duties under the TBT Agreement and that they shall establish the Committee or Working Group in order to implement the measures at issue.
- Comparative Analysis concerning the Provisions on Trade in Services, Investment and Intellectual Property under the FTAs
  - Having regard to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the FTAs usually state that the parties shall apply to it in accordance with relevant GATS provisions or liberalize it consistently with those provisions, subject to three modes of service supply except commercial presence. With respect to investment, all the FTAs except the Korea-EU FTA, set out that the parties shall have recourse to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for any matter arising under investment chapter.
  - Having regard to competition, the FTAs normally put emphasis upon the application of national competition laws and the significance of consultation and cooperation, and mention that neither party may or shall have recourse to dispute settlement under the FTAs.
  - Having regard to government procurement, the FTAs generally govern that the parties reaffirm their existing rights and duties under the GPA or shall apply to it by relevant GPA provisions *mutatis mutandis*.
  - Having regard to intellectual property, the FTAs lay down that the parties affirm their existing rights and duties under the TRIPs and

that they may implement in their domestic law more extensiv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an is required under the FTAs.

Comparative Analysis concerning Administrative and Environmental Provisions under the FTAs

- Having regard to dispute settlement, the FTAs set out that the parties may choose one of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under the FTAs and WTO, and that the forum selected shall be used to the exclusion of the other.
- Having regard to general exceptions and security exceptions, the FTAs regulate that the parties shall accord them in accordance with relevant GATT and GATS provisions or apply to them by those provisions *mutatis mutandis*.
- Having regard to environmental provisions, the Korea-EU FTA, Korea-Peru FTA and the KORUS FTA which have separate environmental chapter in general include provisions in advisory effect, except those concerning the application and implementation of national environmental laws. Besides, it is estimated that environmental issues will continue to develop in the future.

### **III. Expected Effect**

- As the overall study relating to the main provisions under the FTAs has not been enough, this research will supply academic

opportunities to consider the Agreements from a systemic comparative perspective.

- This research will be expected to contribute to policy-making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the provisions more favorable to Korea in the forthcoming FTAs.

➤ Key Words : FTA, WTO, National Treatment, Rules of Origin, Trade Remedies, Trade in Service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ispute Settlement, Exceptions Provisions, Environmental Provisions

# 목 차

요 약 문 .....	3
Abstract .....	7
제 1 장 서 론 .....	17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17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8
제 2 장 한국이 체결한 FTA 현황과 협정의 구조 .....	21
제 1 절 FTA 의의와 체결현황 .....	21
1. 세계무역질서에서 FTA가 주는 함의 .....	21
2. FTA 체결현황 .....	24
제 2 절 FTA의 구조와 최초규정 .....	31
1. FTA의 기본 구조 .....	31
2. FTA의 최초규정 .....	37
제 3 장 FTA의 상품무역규정에 대한 비교분석과 평가 .....	41
제 1 절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	41
1. 개 요 .....	41
2. FTA 규정의 비교분석 .....	42
3. 소 결 .....	48
제 2 절 원산지규정 .....	50
1. 개 요 .....	50

2. FTA 규정의 비교분석 .....	53
3. 소 결 .....	59
제 3 절 통관절차 .....	62
1. 개 요 .....	62
2. FTA 규정의 비교분석 .....	63
3. 소 결 .....	69
제 4 절 무역구제 .....	73
1. 개 요 .....	73
2. FTA 규정의 비교분석 .....	74
3. 소 결 .....	78
제 5 절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	81
1. 개 요 .....	81
2. FTA 규정의 비교분석 .....	81
3. 소 결 .....	85
제 6 절 표준관련조치 .....	87
1. 개 요 .....	87
2. FTA 규정의 비교분석 .....	88
3. 소 결 .....	92
제 7 절 평가 및 소결 .....	94
제 4 장 FTA의 서비스무역과 투자 및 지식재산권규정에 대한 비교분석과 평가 .....	97
제 1 절 국경간 서비스무역 .....	97
1. 개 요 .....	97

2. FTA 규정의 비교분석 .....	98
3. 소 결 .....	104
제 2 절 투 자 .....	106
1. 개 요 .....	106
2. FTA 규정의 비교분석 .....	106
3. 소 결 .....	113
제 3 절 경쟁정책 .....	116
1. 개 요 .....	116
2. FTA 규정의 비교분석 .....	117
3. 소 결 .....	121
제 4 절 정부조달 .....	122
1. 개 요 .....	122
2. FTA 규정의 비교분석 .....	123
3. 소 결 .....	128
제 5 절 지식재산권 .....	131
1. 개 요 .....	131
2. FTA 규정의 비교분석 .....	132
3. 소 결 .....	136
제 6 절 평가 및 소결 .....	138
제 5 장 FTA의 행정 및 환경규정에 관한 비교분석과 평가 .....	141
제 1 절 분쟁해결 .....	141
1. 개 요 .....	141

2. FTA 규정의 비교분석 .....	142
3. 소 결 .....	146
제 2 절 예외규정 .....	148
1. 개 요 .....	148
2. FTA 규정의 비교분석 .....	149
3. 소 결 .....	152
제 3 절 환경규정 .....	154
1. 의 의 .....	154
2. FTA 협정문의 환경규정 .....	155
3. 주요 환경규정의 내용과 쟁점 .....	159
제 4 절 평가 및 소결 .....	176
제 6 장 결 론 .....	179
참 고 문 헌 .....	181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우리나라는 2012년 9월 현재, 45개 국가와 8개의 FTA를 체결하여 발효 중에 있으며 최근 들어 터키, 콜롬비아와 FTA 협상을 타결하였다. 이처럼 FTA 체결이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체결된 협정문에 기재되어 있는 규정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그 동안의 FTA에 관한 연구가 주로 경제학적 관점에 치우쳐 있는 현실에서 국제법상 조약에 해당되며, 국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국내법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FTA와 관련하여 법적 측면의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며, FTA에 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체결하고 있는 FTA 조문에 대한 기초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기체결된 FTA에 대해서는 특정 이슈에 관한 단편적 연구에 그치고 있으며, 협정문 전체에 대한 통합적인 법적 측면의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FTA 체결이 계속해서 주요 국정 현안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이 때,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FTA 전체를 일견해봄으로써, 모든 FTA 협정문의 구조와 규율 형식은 물론 각 협정문에 사용된 용어가 일관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전반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각 FTA 간의 주요 조문을 비교해서 고찰함으로써 개별 협정이 우선시하고 있는 국제법적 쟁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향후 체결되는 FTA 체결시에 우리나라에 적절한 협상 기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를 통해 2004년에 발효한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12년의 한·미 FTA에 이르기까지 변화 발전된 협정문의 조문을

비교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의 FTA 협상에서 지향해야 할 기초적이며 중요한 법적 쟁점에 대해 연구 기반으로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8개의 FTA, 즉 2004년에 발효된 한·칠레 FTA, 2006년에 발효된 한·싱가포르 FTA와 한·EFTA FTA, 2009년에 발효된 한·ASEAN FTA, 2010년에 발효된 한·인도 CEPA, 2011년에 발효된 한·EU FTA와 한·페루 FTA 및 2012년에 발효된 한·미 FTA의 주요 챕터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을 한 뒤, 이를 기초로 이슈별 평가를 내려 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먼저 다자무역체제인 WTO와 지역주의를 대변하는 FTA의 의미에 대해 고찰한 뒤, 한국의 FTA 추진 현황에 대해 간단히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가 가입국으로 있는 FTA의 기본 구조를 파악한 뒤, 각 FTA의 설립 근거 규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후 본 연구의 중심이 되는 제3장에서 제5장은 8개의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크게 상품무역, 서비스무역과 투자 및 지식재산권, 그리고 분쟁해결과 예외규정 및 환경규정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각 협정에서 특별히 쟁점이 되고 있거나 새롭게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특히, 환경규정과 관련하여서는 최근에 서명되고 발효된 한·EU FTA, 한·페루 FTA와 한·미 FTA, 이렇게 3개의 FTA에서만 별도의 챕터로 다루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분석 결과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FTA의 주요 규정에 대한 의미와 지향점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일차적 자료인 8개 FTA의 영문본과 국문본을 기초로 하여 검토를 진행하며,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학술논문과 연구보고서 등의 문헌자료를 참조하고, 그 외에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 제 2 장 한국이 체결한 FTA 현황과 협정의 구조

### 제 1 절 FTA 의의와 체결현황

#### 1. 세계무역질서에서 FTA가 주는 함의

우루과이라운드에서의 극적 타결로 1995년 1월 1일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라 부름)가 출범한 이래, 157개의 국가 또는 독립관세구역(separate customs territory)이 WTO 회원으로 참가하고 있다.<sup>1)</sup> WTO는 국제법상 별도의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즉 패널과 항소기구)를 갖추고 국제통상문제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자기완비적 체제(self-contained regime)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up>2)</sup>

무역자유화를 목적으로 창설된 WTO가 출범 당시 해결하지 못했던 농업이나 반덤핑 문제, 후속협상으로 미루어졌던 기본통신, 금융서비스, 해운 분야 및 환경, 노동, 투자, 경쟁정책 등과 같은 새로운 이슈들을 다루기 위해 2001년에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소위 도하라운드 협상을 시작하였지만, 이러한 보편적 차원의 세계무역질서를 형성하려는 WTO의 시도는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의 충돌과 대립으로 정체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자 국가들은 점차적으로 지역적 또는 양자적 차원에서 관세를 철폐하거나 공동관세를 채택하는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s)을 체결하기에 이르렀고, 이는 현재 유행처럼 번져 나가 매년 지역무역협정의 수는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었다. 지역무역협정은 보통 경제통합의 수준에 따라 회원국간 관세철폐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

1) WTO 회원의 자격 및 가입에 관해서는 WTO 설립협정 제XII조 제1항 참조.

2) 김대순, 『국제법론』, 제16판, 삼영사, 2011, 713쪽.

(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라 부름), 회원국간 관세철폐와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를 적용하는 관세동맹(Customs Union),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 간 생산요소, 즉 상품, 노동, 서비스, 자본의 자유이동을 허용하는 공동시장(Common Market), 그리고 단일통화를 사용하고 회원국 간 정치·경제적 통합을 이루는 완전한 경제통합인 단일시장(Single Market)으로 구분되는데, 국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역시 가장 느슨한 통합단계인 FTA를 체결하는 것이다.<sup>3)</sup> WTO에 통고된 자료에 기초하여 집계해보면, 2012년 6월 현재 지역무역협정의 발효 건수는 총 335건이며, 이 중에서 FTA는 176건을 차지하고 있다.<sup>4)</sup>

FTA는 원래 회원국 간 상품의 관세철폐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상품의 관세철폐는 물론이고 서비스와 투자 자유화 및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으로 대 상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한편, 다자무역질서인 WTO와 별개로 이처럼 지역무역체제를 형성하고, 무엇보다 WTO체제의 근간을 형성하는 기본원칙인 비차별원칙 중 최혜국대우(Most-Favored Nation)<sup>5)</sup>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WTO법상 허용가능한 것일까? GATT 제XXIV조(영토적 적용, 국경무역,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역)와 GATS 제V조(경제통합)가 이 질문에 답을 해 주고 있는데, 동 조항에 의하면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역 영토를 원산지로서 하는 제품의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substantially all the trade)’에 관하여 ‘관세 및 그 밖의 제한적인 상거래 규정(duties and other restrictive regulations of commerce)’을 철폐하는 경우 WTO 회원국들은

---

3) David A. Lynch, *Trade and Globalization: An Introduction to Regional Trade Agreements*,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10, pp. 19-20.

4) <http://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053>; 주요국가의 FTA 체결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명진호·백청아, 2011년 주요국 FTA 추진동향과 시사점 - 18개 경제권(64개국)을 중심으로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1 참조.

5) 여기서 ‘최혜국대우’란 한 외국의 상품에 부여하는 최고의 대우를 다른 외국의 동종상품에도 똑같이 부여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상품무역 또는 서비스무역을 자유화하는 양자 간의 혹은 여러 당사자 간에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역을 형성하거나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협정을 채택할 수 있다. 그러나 관세동맹과 FTA의 실체적 요건 중 역내기준을 구성하는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과 ‘그 밖의 제한적인 상거래 규정’의 구체적인 법적 의미가 무엇인지는 확실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sup>6)</sup>

또한 FTA를 위주로 한 지역무역협정 또는 지역주의의 확산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우려의 시각도 많은데, 2005년 WTO 사무총장 자문협의회가 기초한 Sutherland 보고서에 의하면 지역주의의 확대가 다자주의를 기초로 하는 WTO체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았다. 그 이유로 비차별원칙인 최혜국대우에 합치되지 않아 FTA에 참가하지 않는 제3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유발할 것이며, 무역창출효과보다 무역전화효과가 강하며, FTA에 규정된 원산지규정으로 인해 오히려 보호무역이 확산될 우려가 있으며, 결국 다자무역주의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들고 있다.<sup>7)</sup> 또한 FTA 대상국가에 따라 다른 규정이 적용됨으로써 얽히고 설키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 모습이 스파게티 접시 속 국수가락과 유사하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스파게티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가 나타날 수 있는데, 즉 여러 나라와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체결하다 보면 각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법체계 및 표준 등을 확인하는 데 드는 인력과 시간 낭비로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거래비용 절감이라는 FTA의 기대효과가 반감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sup>8)</sup> 이러한 역기능에도 불구하고

6)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신국제경제법』, 박영사, 2012, 546-547쪽.

7) Peter Van den Bossche, *The Law and Policy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Text, Cases and Materials*, 2<sup>nd</sup>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pp. 696-697.

8) 이균, “WTO의 FTA룰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7권 제1호, 2007, 188쪽;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앞의 책, 540-544쪽; David A. Gantz, *Regional Trade Agreements: Law, Policy and Practice*, Carolina Academic Press, 2009, pp. 22-23.

현재 한국을 포함해 국가들은 계속해서 FTA 체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그것은 WTO체제의 다자간협상은 기간이 오래 걸리고, 의사결정을 반대 부재시 통과시키는 컨센서스(consensus)로 진행하기 때문에 합의 도출이 어려우며, FTA의 무역개방을 통해 경쟁 심화로 생산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외국인투자가 늘어나며, FTA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반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선진국들은 FTA 회원국 간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 달성을 그 이유로 들고 있기도 하다. 여기에 덧붙여 우리나라는 수출경쟁력 유지와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와 무역자유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시킬 필요성을 강조한다.<sup>9)</sup>

## 2. FTA 체결현황

한국은행과 지식경제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우리나라는 GDP 대비 무역액의 비율인 무역의존도가 97%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이에 관해 해외의 불확실성이나 위험에 국가경제가 취약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sup>10)</sup> 한국이 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어왔으며 좁은 내수시장에서 무역 확대가 국가의 중요 과제 중의 하나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해 온 현황을 간단히 살펴볼수록 하겠다. 먼저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결정하고 첫 상대국으로 칠레를 선정하였다. 그 후, 6차례의 협상을 거쳐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

9) 문준조, 우리나라의 FTA 체결을 위한 체계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5, 37쪽;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앞의 책, 556쪽; <http://www.fta.go.kr/new/ftakorea/policy.asp>; 김동훈·김봉철·박찬호, 한-EU FTA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7, 44-45쪽.

10)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2012040513294982255>.

of the Republic of Chile, 이하 ‘한·칠레 FTA’)이 정식으로 서명되었으며, 2004년 4월 1일자로 동 협정이 발효되었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이하 ‘한·싱가포르 FTA’)은 1999년 9월 APEC에서 처음으로 논의가 시작되어 2004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본격적 협상을 거쳐 2005년 8월 정식 서명되었으며, 2006년 3월 2일자로 발효되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의 경제연합체인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이하 ‘EFTA’)<sup>11)</sup>과 2004년 FTA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2005년 1월 공식협상을 시작하여 12월에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EFTA States, 이하 ‘한·EFTA FTA’)을 서명하였으며, 동 FTA는 2006년 9월 1일자로 발효되었다. 한·EFTA FTA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선진경제권이자 유럽경제권과 FTA를 맺은 것으로, 이전에 비해 경제규모가 가장 큰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 및 사회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창설되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의 10개 국가를 회원국으로 두고 있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이하 ‘ASEAN’)과 2003년 FTA 논의를 시작하고 2005년 2월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mong the Govern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ember Countrie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을 채택하였다. 동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

---

11) <http://www.efta.int/> 참조.



in Goods under the 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mong the Govern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ember Countrie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2007년 6월 1일, 동 기본협정하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under the 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mong the Govern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ember Countrie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2009년 5월 1일, 동 기본협정하의 투자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nvestment under the 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mong the Govern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ember Countrie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2009년 9월 1일자로 각각 발효하였다.<sup>12)</sup> 또한 2003년 12월 한국과 인도는 양국 간 무역, 투자 및 서비스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관계 수립을 위한 공동연구그룹 설립 문제를 검토하기로 합의한 후, 2006년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거쳐 2009년 8월 7일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sup>13)</sup>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India, 이하 ‘한·인도 CEPA’)을 정식 서명하였으며, 이는 2010년 1월 1일자로 발효되었다. 또한 2006년 5월부터 한·EU FTA 체결을 위한 예비협약에 들어가 2007년 5월부터 본격 협상을 시작하였으며, 2010년 10월 6일 서명하여 2011년 7월 1일

---

12) ASEAN 회원국의 FTA 발효일자는 상이한데,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2007년 6월 1일, 베트남은 2007년 6월 29일, 미얀마는 2007년 11월 27일, 인도네시아는 2007년 12월 7일, 필리핀은 2008년 1월 1일, 브루나이는 2008년 7월 1일, 라오스는 2008년 10월 1일, 캄보디아는 2008년 11월 1일, 태국은 2010년 1월 1일에 각각 발효하였다. [http://cert.korcham.net/html/fta2/fta02\\_01.jsp?menu=1](http://cert.korcham.net/html/fta2/fta02_01.jsp?menu=1) 참조.

13)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CEPA’)이란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로서, 실질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

자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One Part, and the European Union and its Member States, of the Other Part, 이하 ‘한·EU FTA’)이 잠정발효<sup>14)</sup>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은 페루와 2007년 10월부터 FTA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2009년 3월부터 본격 협상에 들어가 2011년 3월 11일 정식 서명하였으며,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Peru, 이하 ‘한·페루 FTA’)이 2011년 8월 1일자로 발효되었다. 그리고 한국은 2003년 8월 “FTA 추진 로드맵”을 작성하여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목표로 삼았는데, 2005년 사전실무점검회의를 시작으로 2006년 6월부터 8차례의 공식협상을 거쳐 2007년 6월 30일에 정식 서명하였으며, 이후 추가협의를 거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하 ‘한·미 FTA’)은 2012년 3월 15일자로 발효되었다.<sup>15)</sup>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체결하여 발효한 위 8개의 FTA를 대상으로 한다. 참고로 다음 표는 2012년 6월 26일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해 오고 있는 FTA의 현황 및 의의에 관해 간단히 설명해 주고 있다.

14) 27개 EU 회원국들의 국내 비준 절차가 끝나야 완전한 형태의 발효가 되겠지만, EU 차원에서는 발효가 되어 EU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FTA의 중요한 대부분의 내용은 효력을 갖게 되었으며, 회원국의 권한으로 넘겨진 사안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동 협정이 발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잠정발효(provisional application)’라는 용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정확한 법률용어가 아니므로 ‘잠정적용’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가 있다.

15) [http://www.fta.go.kr/new/ftakorea/daylist.asp?country\\_idx=11](http://www.fta.go.kr/new/ftakorea/daylist.asp?country_idx=11).

〈 표 1 〉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진행단계	상대국	추진현황	의 의
발 효 (8건, 45개국)	칠 레	99.12월 협상 개시 03.2월 서명, 04.4월 발효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
	싱가포르	04.1월 협상 개시 05.8월 서명, 06.3월 발효	ASEAN 시장의 교두보
	EFTA (4개국)	05.1월 협상 개시 05.12월 서명, 06.9월 발효	유럽시장 교두보
	ASEAN (10개국)	05.2월 협상 개시 06.8월 상품무역협정 서명 07.6월 발효 07.11월 서비스협정 서명 09.5월 발효 09.6월 투자협정 서명 09.9월 발효	우리의 제2위 교역대상(2011년 기준)
	인 도	06.3월 협상 개시 09.8월 서명, 10.1월 발효	BRICs국가, 거대시장
	E U (27개국)	07.5월 협상 출범 09.7월 협상 실질 타결 09.10.15 가서명 10.10.6 서명, 11.7.1 잠정발효	세계 최대경제권 (GDP기준)
	페 루	09.3월 협상 개시 10.8월 협상 타결 10.11.15 가서명 11.3.21 서명, 11.8.1 발효	자원부국, 중남미 진출교두보
	미 국	06.6월 협상 개시 07.6월 협정 서명 10.12월 추가 협상 타결, 11.10.22 “한·미 FTA 이행법” 미 의회 상·하원 통과 11.11.22 비준동의안 및 14개 부수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2.3.15 발효	거대 선진경제권

진행단계	상대국	추진현황	의 의
타 결 (2건, 2개국)	터 키	08.6월~09.5월 공동연구 총 4차례 공식협상 개최 (10.4월, 7월, 11.3월, 12.3월) 12.3.26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 협정 가서명 12.8.1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 협정 정식서명	유럽·중양아 진출 교두보
	콜롬비아	09.3월~9월 민간공동연구 총 6차례 공식협상 개최 (09.12월, 10.3월, 6월, 10월, 11.10월, 12.4월) 12.6.25 협상 타결 선언	자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협상 진행 (8건, 13개국)	캐나다	05.7월 협상 개시 08.3월 제13차 협상 개최	북미 선진 시장
	GCC (6개국)	07.11월 사전협의 개최 총 3차례 공식협상 개최 (08.7월, 09.3월, 7월)	자원부국, 아중동 국가와의 최초 FTA, 우리의 제3위 교역대상 (2011년 기준)
	멕시코	07.12월 기존의 SECA를 FTA로 격상하여 협상 재개 08.6월 제2차 협상 개최	북중미 시장 교두보
	호 주	07.5월~08.4월 민간공동연구, 총 5차례 공식협상 개최 (09.5월, 9월, 12월, 10.3월, 5월)	자원 부국 및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뉴질랜드	07.2월~08.3월 민간공동연구, 총 4차례 공식협상 개최 (09.6월, 9월, 12월, 10.5월)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인도 네시아	11.10월 공동연구보고서 완 료, 12.3.28 한·인니 CEPA 협상개시 선언 12.7.12 한-인도네시아 CEPA 제1차 협상 개최(자카르타)	ASEAN 회원국 중 우리의 최대 교역국 (2011년 기준)

제 2 장 한국이 체결한 FTA 현황과 협정의 구조

진행단계	상대국	추진현황	의 의
	중 국	07.3월~10.5월 산관학 공동연구, 10.9월~ 민감성 처리방안 등에 관한 사전 실무협의, 12.5.2 협상개시 선언, 12.5.14 제1차 협상 개최	우리의 제1위 교역대상 (2011년 기준)
	베트남	11.11월 공동연구보고서 완료 12.8.6 협상개시 선언 12.9.3 한·베트남 양자통상장 관회담 12.9.3 ~ 4 한·베트남 FTA 제1차 협상 개최	우리의 제6위 투자대상국 (2011년 기준)
협상준비 또는 공동연구 (7건, 14개국)	일 본	03.12월 협상개시, 04.11월 6차 협상후 중단, 08~11년 협상 재개 환경조성을 위한 실무협의 총 6차례 개최	우리의 제4위 교역대상 (2011년 기준)
	한중일	03~09년 민간공동연구, 총 7 차례 산관학 공동연구회의 개최(10.5월, 9월, 12월, 11.3월, 6월, 8월, 12월) 11.12월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	동북아 경제통합 기반 마련
	MERCO SUR (4개국)	05.5월~06.12월 정부간공동연구(07.10월 연구보고서 채택) 09.7월 무역협정(TA) 추진 협의를 위한 공동협약체 설립 MOU 체결	BRICs국가, 자원부국
	이스라엘	09.8월 민간공동연구 개시 10.8월 종료	서부 중동지역 거점시장
	몽 골	08.10월 민간공동연구 개시 합의	자원부국

진행단계	상대국	추진현황	의 의
	중 미 (5개국)	10.10월 공동연구 개시 11.4월 공동연구 보고서 완료 (*중미5개국: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북미와 남미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
	말레이 시아	11.5월 한·말레이시아 FTA 타당성연구 개시 12.4월 타당성연구 중간점검 회의 개최	한-ASEAN FTA Upgrade, 자원부국

출처: 외교통상부 웹사이트.<sup>16)</sup>

## 제 2 절 FTA의 구조와 최초규정

### 1. FTA의 기본 구조

우리나라가 체결한 8개 FTA의 내용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유사한 구조, 즉 총칙,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경쟁,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행정 및 조직규정, 분쟁해결 및 최종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한·칠레 FTA 협정문은 전문과 총 7개의 부(Part), 21개의 장(Chapter)과 부속서<sup>17)</sup> 및 교환각서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부속서는 양국의 상품에 대한 관세철폐계획, 품목별 원산지규정,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에 대한 유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동 협정문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다른 협정문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표로 구성해 보았다.

16) <http://www.fta.go.kr/new/ftakorea/ftakorea2010.asp>.

17) 한·칠레 FTA 제21.1조: “이 협정의 부속서, 부록 및 주석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해당 조항은 다른 FTA에서도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부속서, 부록 및 주석은 협정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 표 2 〉 한·칠레 FTA의 구조

구 성		내 용
제 1 부 총칙	제 1 장	최초조항
	제 2 장	일반적 정의
제 2 부 상품무역	제 3 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제 4 장	원산지규정
	제 5 장	통관절차
	제 6 장	긴급수입제한조치
	제 7 장	반덤핑 및 상계관세 사항
	제 8 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 9 장	표준관련 조치
제 3 부 투자·서비스 및 관련사항	제10장	투 자
	제11장	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12장	전기통신
	제13장	기업인의 일시입국
	제14장	경 쟁
제 4 부 정부조달	제15장	정부조달
제 5 부 지식재산권	제16장	지식재산권
제 6 부 행정 및 조직규정	제17장	투명성
	제18장	협정의 운영
	제19장	분쟁해결
제 7 부 그 밖의 규정	제20장	예 외
	제21장	최종조항

구 성		내 용
부속서	부속서 I	현생조치를 위한 유보와 자유화 약속 (제10, 11장)
	부속서 II	장래 조치를 위한 유보(제10장, 제11장)
	부속서 III	수량규제(제11장)
	부속서 IV	기타약속(제11장)

한·싱가포르 FTA 협정문은 전문과 총 22개의 장 및 부속서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조항, 일반적 정의,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원산지규칙, 통관절차, 무역구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상호인정, 국경 간 서비스무역, 투자, 전기통신, 금융서비스, 기업인의 일시입국, 전자상거래, 경쟁, 지식재산권, 협력, 투명성, 분쟁해결, 예외, 행정 및 최종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칠레 FTA와 비교하면, 금융서비스와 전자상거래 및 협력이 새로운 장으로 들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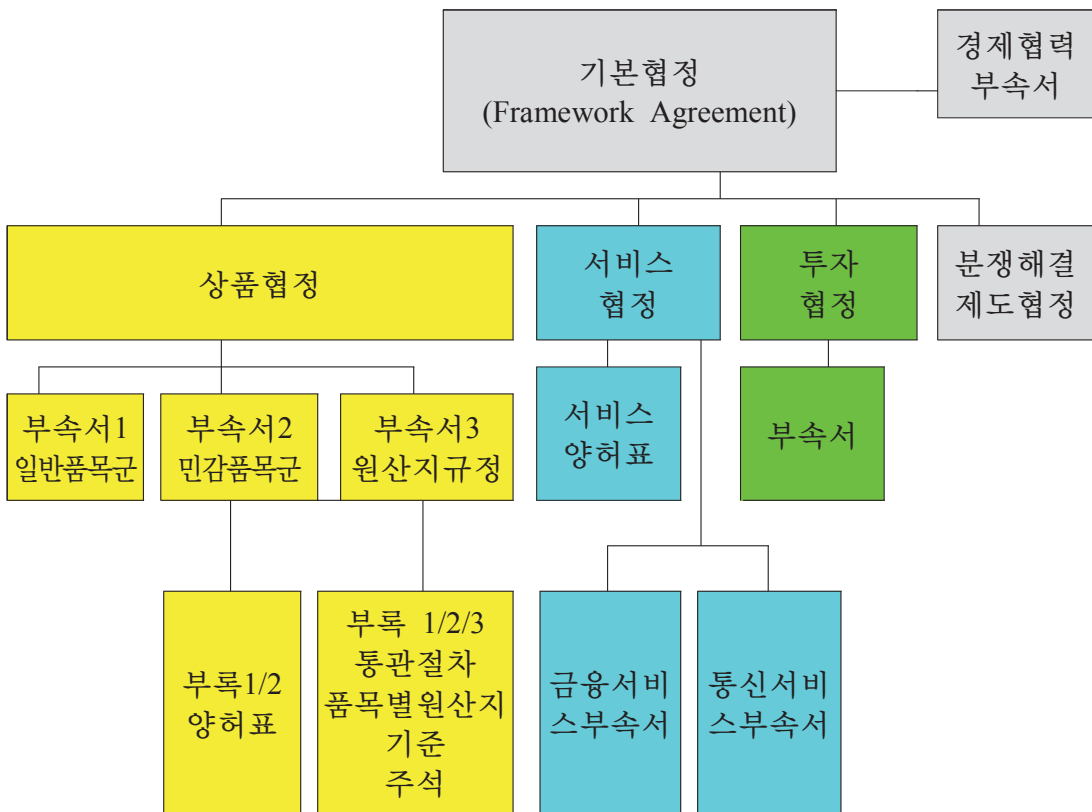
한·EFTA FTA 협정문은 서문과 총 10개의 장, 13개의 부속서 및 농업 및 투자와 관련된 개별 협정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총칙,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금융서비스, 경쟁,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조직규정, 분쟁해결, 최종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협정문은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협정문과는 달리, 시장접근,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무역구제조치, 원산지규정, 통관절차가 ‘상품무역’이라는 하나의 장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개별 협정문으로 우리나라와 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스위스간의 투자협정과 우리나라와 아이슬란드, 우리나라와 노르웨이 및 우리나라와 스위스간의 양자 농업협정이 포함되어 있다.

한·ASEAN FTA에서는 단일협상방식이 아닌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을 기초로 하여 상품협정과 서비스협정 및 투자협정을 순차



적인 협상을 거쳐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는데, 먼저 한·ASEAN FTA의 모범이 되는 기본협정과 분쟁해결제도협정 및 경제협력부속서가 2005년에 서명되고, 이후 상품협정이 2006년에 서명되어 이들 협정은 2007년 6월 1일에 발효되었다. 그리고 서비스협정이 2007년에 서명되어 2009년 5월 1일에 발효되고, 마지막으로 투자협정이 2009년에 서명되어 동년 9월 1일자로 발효되었다.

〈그림 1〉 한·ASEAN FTA 협정문 구조



출처: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한·ASEAN FTA 기본협정은 전문과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칙, 자유화, 경제협력, 그 밖의 분야 및 최종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품협정의 경우, 전문과 총 21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내국민대우, 관세인하 및 철폐, 원산지규정, 무역구제조치 등이 규정되어 있다. 분쟁해결제도협정의 경우, 전문과 총 21개의 조항 및 부속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체약국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협정의 경우, 전문과 총 32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정의 및 적용범위, 투명성, 구체적 및 추가적 약속, 예외 등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투자협정은 전문과 총 31개의 조항 및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이행요건, 투명성, 수용 및 보상, 예외 등이 규정되어 있다.

한·인도 CEPA 협정문은 서문과 총 15개의 장 및 관련 부속서와 교환각서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규정 및 정의, 상품무역, 원산지규정, 원산지절차, 무역원활화 및 관세협력, 서비스무역, 통신, 인력이동, 시청각 공동제작, 투자, 경쟁, 지식재산권, 양자 간 협력, 분쟁해결과 행정 및 최종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협정문에는 시청각 공동제작이 별도의 장으로 들어가 있는 점이 눈에 띈다.

한·EU FTA 협정문은 서문과 총 15개의 장 및 관련 부속서와 부록, 양해 및 의정서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목적 및 일반정의,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무역구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관세 및 무역원활화, 서비스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 지급 및 자본이동, 정부조달, 지식재산, 경쟁, 투명성,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분쟁해결과 제도·일반 및 최종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협정문은 전자상거래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별개의 챕터를 두고 있는 것이 다른 FTA 협정문과 구별되며,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제목 하에 환경보호를 위한 장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한·페루 FTA 협정문은 서문과 총 25개의 장 및 관련 부속서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초규정 및 정의,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원산지규정, 원산지절차,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무역구제, 투자, 국경 간 서비스무역, 기업인의 일시입국, 금융서비스, 통신, 전자상거래, 경쟁정책,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노동, 환경, 협력, 투명성, 협정의 운영, 분쟁해결, 예외와 최종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교적 최근에 체결된 동 FTA에는 원산지절차가 별개의 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전자상거래, 금융서비스, 노동, 환경에 관한 챕터를 포함하고 있는 점이 초창기 FTA 협정문과는 구별된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 협정문은 서문과 총 24개의 장 및 관련 부속서와 서한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초규정 및 정의,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농업, 섬유 및 의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원산지규정 및 원산지절차,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무역구제, 투자, 국경 간 서비스무역, 금융서비스, 통신, 전자상거래, 경쟁 관련 사안,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노동, 환경, 투명성, 제도 규정 및 분쟁해결, 예외와 최종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FTA에는 농업, 섬유 및 의류, 의약품 및 의료기기가 별개의 장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며, 최신 FTA 협정문들과 마찬가지로 전자상거래, 노동, 환경을 비중 있게 규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표 3 〉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협정문의 구성

FTA	협정문 구성
한·칠레	전문과 21개의 장 및 부속서
한·싱가포르	전문과 22개의 장 및 부속서
한·EFTA	전문과 10개의 장 및 부속서와 농업 및 투자협정

FTA	협정문 구성	
한·ASEAN	기본협정	전문과 5개의 장
	상품협정	전문과 21개의 조항
	분쟁해결 제도협정	전문과 21개의 조항과 부속서
	서비스협정	전문과 32개의 조항
	투자협정	전문과 31개의 조항과 부속서
한·인도	서문과 15개의 장 및 부속서와 교환각서	
한·EU	서문과 15개의 장 및 부속서와 부록 및 양해, 의정서	
한·페루	서문과 25개의 장 및 부속서	
한·미	서문과 24개의 장 및 부속서와 서한	

## 2. FTA의 최초규정

먼저 한·칠레 FTA는 최초조항(initial provisions)의 하나인 제1.1조에서 양국은 GATT 제XXIV조 및 GATS 제V조에 합치되는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를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3조 제2항에서 동 FTA와 다른 국제협정이 충돌하는 경우 동 협정이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싱가포르 FTA는 한·칠레 FTA와 마찬가지로 제1.1조에서 양국은 GATT 제XXIV조 및 GATS 제V조에 합치되는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3조 제2항과 제3항에서 동 FTA와 다른 국제협정이 충돌하는 경우 국제법의 일반원칙을 고려하여 상호만족스러운 해결(mutually satisfactory solution)을 위해 협의하고, 충돌에 관한 조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EFTA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이전의 FTA와 마찬가지로 제1.1조에서 양국은 GATT 제XXIV조 및 GATS 제V조에 합치되는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5조에서 동 FTA의 규정은 WTO협정과 국제협정상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ASEAN FTA의 기본협정은 전문과 제1.3조에서 당사국들은 GATT 제XXIV조 및 GATS 제V조에 합치되는 한·ASEAN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4조 제1항에 의해 동 기본협정, 상품무역협정, 서비스무역협정, 투자협정, 분쟁해결제도협정 및 그 밖의 협정이 한·ASEAN FTA 법적 문서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4조 제2항과 제3항은 다른 협정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제2항에서는 동 기본협정이 기존 협정상의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무효화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한국과 싱가포르 간에 체결된 FTA가 효력을 잃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 제3항에서는 동 기본협정이 ASEAN 회원국 간 또는 한국과 ASEAN 회원국 간에 양자 또는 복수국간 협정의 체결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싱가포르 이외의 ASEAN 개별 회원국과 FTA를 체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한·인도 CEPA는 제1.1조에서 동 협정의 목적 중 하나가 ‘자유무역지대’에서 양 당사국 기업에게 보다 유리한 환경 조성이 기여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공정경쟁의 여건을 증진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제1.2조 제2항에서는 동 협정과 양 당사국이 회원국으로 있는 협정이 합치되지 않는 경우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찾기 위해 즉시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EU FTA는 제1.1조 제1항에서 양 당사국은 동 협정에 따라 상품, 서비스, 설립 및 관련 규칙에 관한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페루 FTA는 제1.1조에서 양국은 GATT 제XXIV조 및 GATS 제V조에 합치되는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동 FTA와 다른 국제협정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국제법의 일반원칙을 고려하여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을 찾기 위해 즉시 서로 협의해야 한다.

또한 한·미 FTA는 제1.1조에서 양국은 GATT 제XXIV조 및 GATS 제V조에 합치되게 동 협정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동 협정은 상품·서비스·투자 또는 인(persons)에 대하여 동 협정보다 더 유리한 대우를 규정한 양 당사국의 어떠한 국제법적 의무로부터 이탈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 제 3 장 FTA의 상품무역규정에 대한 비교분석과 평가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법적 의미를 갖는 상품무역에 있어서의 핵심규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와 시장접근, 원산지규정과 통관절차, 무역구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와 표준관련조치에 대해 주로 검토하도록 할 것이다.

### 제 1 절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 1. 개 요

WTO법상 GATT 제III조의 내국민대우원칙(National Treatment Principle)<sup>18)</sup>, GATT 제II조의 관세(tariff, customs)<sup>19)</sup> 인하 또는 철폐 약속과 GATT 제XI조의 비관세장벽의 폐지를 통한 외국상품의 시장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의무에 속한다. 보통 WTO 회원국들은 자신의 관세양허표(Schedules of Concessions)<sup>20)</sup>에 상품에 따른 관세율의 상한선을 기재하는데, GATT 제II조 제1항 a호에 의해 “수입품에 대해 관세양허표에 기재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또한 수입 및 수출에 대한 수량제한조치의 철폐를 통해 관세 이외의 무역장벽을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국민대우

18) ‘내국민대우원칙’은 외국산 제품을 국내산 제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19) ‘관세’는 수입품에 대해 수입시점에 부과하는 재정적 부과금을 말한다.

20) ‘관세양허표’란 국가간 무역협상의 결과 시장개방 조건에 따른 자유화 계획 일정표로서, 일반적으로 관세율 인하 조건과 일정 등을 정해 놓은 표를 뜻하는데, 영문본에는 Schedules, Schedules of (Tariff) Concessions 등으로 사용한다. 한편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및 한·EFTA FTA 협정문에서는 ‘관세철폐계획(Tariff Elimination Schedule)’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및 관세양허와 비관세조치를 통한 시장접근의 개선은 WTO에서는 물론이고, FTA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의무이자 주요원칙을 구성한다.

## 2. FTA 규정의 비교분석

### (1) 한·칠레 FTA

한·칠레 FTA는 상품무역을 다루고 있는 제3장부터 제9장 중, 제3장에서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National Treatment and Market Access for Goods)’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먼저 제3.3조에 의하면 양국은 GATT 제III조에 합치되게 내국민대우를 부여한다고 밝히고 있다. 제3.4조에 따르면, 상대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관세철폐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폐지하여야 하며(shall progressively eliminate),<sup>21)</sup> 기존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도입할 수는 없다. 또한 일방 당사국이 비당사국에 대해 협정에 포함된 상품의 최혜국관세를 인하할 경우 관세율의 조정을 위해 협의해야 하며,<sup>22)</sup> 양 당사국은 관세철폐계획을 부속서 3.4 관세철폐와 부록에 자세히 기재하고 있다. 제3.8조에 의해 관세평가는 WTO 관세평가협정에 의하여 규율되며, 제3.9조에 의해 양 당사국은 GATT 제XI조를 따른 경우 이외에 수입 및 수출제한과 같은 비관세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해서는 아니된다. 또한 제3.12조 농산물에 대한 긴급조치 조항(Emergency Clause for Agricultural Goods)에 따르면, ‘농산물’의 수입급증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나 혼란의 야기 및 우려가 있는 경우 일방당사국은 관세 인하 정지 또는 최혜국관세나 관세철폐계획의 기준관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세 인상 등의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1) 국제조약이나 영어로 된 계약서에서 ‘shall’을 사용하면 해당 조문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본 연구보고서에는 ‘shall’이 들어간 조약문을 인용할 때 “해야 한다”라고 번역하였다.

22) 한·칠레 FTA 제3.4조 제3항.



## (2) 한·싱가포르 FTA

한·싱가포르 FTA는 상품무역을 다루고 있는 제3장에서 제8장 중, 제3장은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을 규정하고 있는데, 먼저 제3.3조에 의하면 양국은 GATT 제III조에 따라 내국민대우를 부여하여야 하는데, 제III조는 동 협정에 수용되어 일부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4조에 의해 각 당사국은 관세철폐계획에 따라 타방 당사국의 상품에 관세, 그 밖의 수입제세 또는 부과금을 점진적으로 철폐하여야 한다. 특히 부속서 3A인 관세철폐계획에 의하면, 싱가포르는 협정 발효일로부터 한국의 모든 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은 모든 상품의 91.6%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하여 유형에 따라 최대 10년 이내 관세를 철폐하여야 한다. 또한 제3.8조에 따라 WTO협정 또는 동 협정에 의하지 않은 수출입 제한을 도입하거나 유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3.6조에서는 양국 간의 수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금지하였다.

## (3) 한·EFTA FTA

한·EFTA FTA는 상품무역을 규율하고 있는 제2장(Trade in Goods) 중 제2.3조 내지 제2.6조에서 시장접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먼저 제2.6조에 의하면 당사국들은 동 협정에 수용되어 일부를 형성하는 GATT 제III조에 따라 내국민대우를 적용해야 한다. 또한 관세와 관련하여 제2.3조에서 동 협정이 발효하는 경우 우리나라와 EFTA 회원국들은 우리나라와 EFTA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수출입에 대한 모든 관세, 그 밖의 수입제세 또는 부과금을 폐지하여야 하며(shall abolish), 새로운 도입이 금지된다(No ... shall be introduced). 특히, 부속서 VI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관세(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Article 2.3 Customs Duties)에 따라 EFTA는 협정 발효일로부터 농산물을 제외한

모든 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고, 우리나라는 86.3% 상품의 즉시 철폐를 포함한 96.6%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하여 유형에 따라 최대 10년 이내에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해야 한다. 관세의 기준세율은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MFN customs duty rate applied on 1 January 2005)로 계산한다.<sup>23)</sup> 또한 제2.5조에 따라 당사국들은 쿼터(quota, 수입할당), 수입 또는 수출 허가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통한 모든 수입이나 수출의 금지 또는 제한을 철폐해야 하며 새로이 도입해서도 아니된다.

#### (4) 한·ASEAN FTA

한·ASEAN FTA 기본협정의 제2장에서는 상품·서비스·투자의 자유화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데, 제2.1조에 따르면 당사국들은 ‘실질적으로 모든 상품무역(substantially all trade in goods)’에 대하여 관세 및 그 밖의 제한적인 상거래규정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철폐해야 한다.

또한 상품무역협정 제2조에 의하면, 당사국들은 동 협정에 수용되어 일부를 형성하는 GATT 제III조에 따라 내국민대우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동 협정 제3조에서는 관세 인하 및 철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즉 당사국들은 상품에 대한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applied MFN tariff rates)을 관세 인하 또는 철폐 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인하 또는 철폐해야 한다. 한편, 이전의 FTA 협정문에서는 품목별로 양허일정을 정하는 방식으로 관세철폐계획을 작성하였으나, 한·ASEAN FTA에서는 전체품목에 대한 양허방식을 결정하고 각 당사국이 자국 산업의 민감도에 따라 품목을 배정하는 방식(Modality)을 사용하였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관세 인하 및 철폐방식은 전체품목을 먼저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으로 구분하고, 민감품목군은 일반민감품목군과 초민감품목군으로

23) 한·EFTA FTA 제2.4조; 참고로 ‘실행관세율’이란 수입물품에 실제 적용되는 관세로서, 무역협상 결과에 의한 국가별 양허표상의 관세인 양허관세보다는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구분하였으며, 초민감품목군을 다시 5개의 그룹(A, B, C, D, E)으로 구분하였다.<sup>24)</sup>

또한 동 협정 제8조 제1항에 의해 각 당사국은 WTO협정상 권리와 의무 및 동 협정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상품의 수출에 대하여 어떠한 비관세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해서도 아니된다.

#### (5) 한·인도 CEPA

한·인도 CEPA는 상품무역을 규율하고 있는 제2장에서 A절은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2.3조에 따르면 각 당사국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mutatis mutandis*)’<sup>25)</sup> 동 협정에 수용되고 일부가 된 GATT 제III조 및 주해에 따라 타당사국의 상품에 내국민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또한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부속서 2-A 관세 인하 또는 철폐(Tariff Reduction or Elimination)의 양허표(Schedule of Tariff Concessions)에 따라 타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여야 한다. 한편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한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허표에서 제외된 상품을 포함하여 부속서에 규정된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가속화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하는데, 동 조항을 통해 인도가 다른 국가와 체결하는 FTA에서 우리보다 유리한 관세인하를 하는 경우 양허표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제2.6조에 의해 위의 한·ASEAN FTA와 마찬가지로 비관세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24)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속서 1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철폐 방식과 부속서 2 민감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철폐 방식 및 부록 1 민감품목 목록, 부록 2 초민감품목 목록 참조.

25) 한·ASEAN FTA 제2조의 국문본에서는 ‘*mutatis mutandis*’를 ‘상응하는’으로 잘못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 (6) 한·EU FTA

한·EU FTA는 제2장에서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을 규율하고 있는데, 제2.5조 제1항에 의해 각 당사국은 부속서 2-A 관세 철폐(Elimination of Customs Duties)에 포함된 자신의 양허표(Tariff Schedule)에 따라 타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는 협정 발효 3년 후, 한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세 철폐를 가속화하고 그 범위 확대의 검토를 위해 협의를 하도록(shall consult)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8조에 의하면 각 당사국은 주해를 포함한 GATT 제III조에 따라 타당사국의 상품에 내국민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GATT 제III조 및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동 협정에 수용되고 일부가 된다. 그리고 제2.9조는 비관세장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GATT 제XI조 및 주해에 따라 수입 및 수출과 관련하여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 외의 어떠한 금지나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하여서는 아니되며(neither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GATT 제XI조 및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동 협정에 수용되고 일부가 된다.

#### (7) 한·페루 FTA

한·페루 FTA는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와 시장접근에 관한 제2장 중 내국민대우를 규정하고 있는 제2.2조 제1항을 한·EU FTA 제2.8조와 동일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2항에 의해 부속서 2A 내국민대우와 수입 및 수출 제한(National Treatment and Import and Export Restrictions)에 규정된 조치, 즉 페루의 중고품 수입 관련 조치 및 WTO 분쟁해결기구에 의해 승인된 조치에 대해서는 내국민대우(와 제2.8조의 수출입제한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세철폐를 규정하고 있는 제2.3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각 당사국은 부속서 2B 관세 철폐(Elimination of Customs Duties)의 양허표(Tariff Schedule)에 따라 관세를 철폐해야 하며, 기존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채택해서는 아니된다. 또한 제4항에 의해 한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 철폐의 가속화를 검토하기 위해 협의해야 한다. 특히, 양 당사국은 동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교역 중인 모든 상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 이는 수입액 기준이며, 품목수로 볼 때 우리는 97.4%, 페루는 98.9%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다.<sup>26)</sup>

그리고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각 당사국은 동 협정 및 GATT 제XI조와 주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및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어떠한 비관세조치(any non-tariff measures)도 채택하거나 유지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러한 목적으로 GATT 제XI조 및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동 협정에 수용되고 일부가 된다.

#### (8) 한·미 FTA

한·미 FTA는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을 규정하고 있는 제2장에서 내국민대우 부여의무에 관한 제2.2조 제1항을 한·EU FTA 및 한·페루 FTA의 규정과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다. 또한 한·페루 FTA와 마찬가지로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즉 부속서 2-A 내국민대우와 수입 및 수출 제한(National Treatment and Import and Export Restrictions)에 규정된 조치, 예컨대 미국의 경우 원목수출통제나 수송운송규제 등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3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각 당사국은 부속서 2-B 관세 철폐(Tariff Elimination)의 양허표(Tariff Schedule)에 따라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해야 하며, 기존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채택해서는 아니된다. 또한 제3항에 의해

26) 부속서 2B 관세 철폐 참조.

한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 철폐의 가속화를 검토하기 위해 협의해야 한다. 제2.8조에서는 비관세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1항에 의하면 각 당사국은 동 협정 및 GATT 제XI조와 주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및 수출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으며(neither Party may adopt or maintain), 이러한 목적으로 GATT 제XI조 및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동 협정에 수용되고 일부가 된다.

### 3. 소 결

이상으로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와 시장접근에 대한 8개 협정문의 주요 규정을 살펴보았다. 협정문 모두에서 내국민대우를 기본적인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품무역을 자유화하고 시장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관세 인하 또는 철폐와 비관세장벽의 제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좀 더 세밀하게 각 협정문을 살펴보면, 관세 인하 방식이나 내국민대우 및 비관세조치에 관한 태도가 아래와 같이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GATT 제III조와 제XI조와의 연관성은 계속해서 눈에 띄며, 한·EU FTA 이후 발효된 FTA는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내국민대우와 시장접근에 관한 모델규정이 형성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4 〉 FTA별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비교

FTA	내국민대우	관세 양허	비관세조치
한·칠레	GATT 제III조에 합치되도록 부여	관세철폐계획에 따라 ‘점진적’ 폐지	수출입제한의 채택이나 유지 금지
한·싱가포르	동 협정에 수용되어 일부가 된 GATT 제III조에 따라 부여	관세철폐계획에 따라 ‘점진적’ 철폐	수출입제한의 도입이나 유지 금지

FTA	내국민대우	관세 양허	비관세조치
한·EFTA	동 협정에 수용되어 일부가 된 GATT 제III조에 따라 부여	모든 관세, 그 밖의 수입세제 또는 부과금 ‘폐지’ (우리나라는 점진적 철폐)	쿼터, 수입 또는 수출 허가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통한 수출입제한의 금지
한·ASEAN	동 협정에 수용되어 일부가 된 GATT 제III조에 따라 부여	관세 인하 또는 철폐 계획에 따라 ‘점진적’ 인하 또는 철폐 (민감도에 따라 품목 배정)	비관세조치의 채택이나 유지 금지
한·인도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동 협정에 수용되어 일부가 된 GATT 제III조 및 주해에 따라 부여	양허표에 따라 관세 인하 및 철폐; 가속화 가능성 협의	비관세조치의 채택이나 유지 금지
한·EU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동 협정에 수용되어 일부가 된 GATT 제III조 및 주해에 따라 부여	양허표에 따라 관세 철폐; 가속화 및 확대 검토를 위해 협의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동 협정에 수용되어 일부가 된 GATT 제XI조 및 주해에 따라 비관세조치의 채택이나 유지 금지
한·페루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동 협정에 수용되어 일부가 된 GATT 제III조 및 주해에 따라 부여	양허표에 따라 관세 철폐; 가속화 가능성 협의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동 협정에 수용되어 일부가 된 GATT 제XI조 및 주해에 따른 경우 이외의 어떠한 비관세조치의 채택이나 유지도 금지

FTA	내국민대우	관세 양허	비관세조치
한·미국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동 협정에 수용되어 일부가 된 GATT 제III조 및 주해에 따라 부여	양허표에 따라 관세의 ‘점진적 철폐; 가속화 가능성 협의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동 협정에 수용되어 일부가 된 GATT 제XI조 및 주해에 따른 경우 이외의 어떠한 비관세조치의 채택이나 유지도 금지

## 제 2 절 원산지규정

### 1. 개 요

1차상품인 농수산물과 달리, 2차상품인 제조업의 경우에는 부품의 생산지, 디자인 및 조립공정이 이루어지는 국가가 각각 다를 수 있으므로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무엇보다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sup>27)</sup>은 FTA 상대국에게만 적용되는 특혜관세를 부여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국제무역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보통 원산지규정은 적용 목적에 따라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비특혜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으로 구분되는데, 특혜원산지규정은 FTA 또는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와 같이 특혜관세를 부여할 목적으로 사용되며, 비특혜원산지규정은 최혜국대우,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원산지 표시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sup>28)</sup>

27) ‘원산지’란 상품을 생산한 곳을 의미하며, ‘원산지규정’이란 특정 상품이 어디에서 생산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하는 규정을 의미한다.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앞의 책, 341쪽.

28)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위의 책, 342쪽.



원산지 판정의 기준은 보통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or Produced Rule)과 실질적 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Rule)으로 구분되며, 실질적 변형기준은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Test or Ad Valorem Percentage Criterion) 및 특정가공공정기준(Special Manufacturing or 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완전생산기준이란 상품의 재료 및 생산공정이 완전히 한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이루어진 경우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하며, 실질적 변형기준이란 2개 이상의 국가에서 제조 및 가공공정을 거쳐 상품이 생산되는 경우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실질적 변형의 기준 중 세번변경기준이란 품목분류(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이하 ‘HS’)<sup>29)</sup>를 이용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최종물품의 세번이 다른 경우 후자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이다. 일반적으로 HS 4단위(heading) 혹은 6단위(subheading)가 기준으로 사용되는 편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2단위(chapter)에서의 세번변경을 요구하기도 한다.<sup>30)</sup> 부가가치기준은 상품의 생산 및 가공공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고려하여 특정한 비율 이상의 부가가치를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인데, 이 때 수입산 함량, 국내산 함량, 부품가액 등을 기준으로 부가가치를

29) ‘품목분류’란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각종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에 의거하여 품목번호에 분류하는 것으로서 각국은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협약)’의 HS체계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품목분류 업무를 수행한다. 품목분류가 중요한 이유는 물품을 수입할 때,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해당 품목번호마다 미리 정해져 있는 관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게 되기 때문에 정확한 품목분류가 선행되어야 납부할 관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확한 관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시 올바른 품목분류가 중요하다. <http://www.ftahub.go.kr/kr/apply/customs/01/>.

30) 김한성·조미진·정재완·김민성,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33쪽.

계산한다.<sup>31)</sup> 특정가공공정기준은 상품의 생산 및 가공과정에서 특정한 공정이 수행된 경우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이며, 주로 섬유 및 의류제품의 원산지 결정에 이용된다.<sup>32)</sup>

그리고 실질적 변형기준을 보완하거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최소허용기준(de minimis rule) 또는 용인기준(tolerance rule), 누적기준(accumulation rule), 중간재 흡수 원칙(roll-up principle or absorption/takeover principle), 추적심사(tracing test), 불인정공정(insufficient operations) 또는 최소가공공정(minimal process), 세번변경기준특례, 부속품 및 예비부분품, 직접운송원칙(direct consignment) 등과 같은 보충적 원산지 판정기준도 사용되고 있다. 이들 외에도 역외가공(outward processing), 재수입물품, 대체가능물품(fungible goods), 간접재료,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원산지 특칙규정(sector-specific special rules)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sup>33)</sup>

한편 FTA에서 많이 사용되는 원산지규정으로는 NAFTA 방식과 Pan-European 방식<sup>34)</sup>이 있으며, ASEAN 국가들은 특유의 ASEAN 방식을

---

31) 부가가치기준은 공제법, 집적법 및 순원가법으로 나누어지는데, 공제법(Build-down Method)은 조정가치(Adjusted Value, 조정된 관세가격)에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역내 부가가치로 보는 방식을 말하며, 집적법(Build-up Method)은 생산자가 상품의 생산에 사용한 원산지재료비가 상품의 조정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역내 부가가치로 보는 방식을 의미하며, 순원가법(Net Cost Method)은 공제법의 일종으로 총원가에서 판매비용 등 일정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입법조사처,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주요 정책 및 입법과제 I, 2012, 229쪽; 한편 한·칠레 FTA 제4.3조 국문본에는 ‘집적법’을 ‘직접법’으로 잘못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32) 채형복·황해륙, “한·EU FTA 원산지규정에 관한 연구”, 『법학논고』 제32집, 2010, 607-612쪽; 강준하, “한국-미국 FTA 원산지규정에 관한 연구”, 『통상법률』 통권 제80호, 2008, 71-72쪽;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앞의 책, 344-345쪽.

33) 김한성·조미진·정재완·김민성, 앞의 연구보고서, 31-32쪽.

34) Pan-European 방식은 EC, EFTA 국가, 중동부 유럽국가들 사이에 체결된 FTA를 말하며, EC-불가리아 FTA, EC-체코 FTA, EFTA-터키 FTA 등 50여 개가 있다. 김한성·조미진·정재완·김민성, 위의 연구보고서, 36쪽, 주 15; WT/REG/W/45, 5 April 2002, p. 3, fn. 3 and p. 16.

사용하기도 한다.<sup>35)</sup> NAFTA 방식과 Pan-European 방식 모두 역내산업 보호를 위한 우회수입 방지 및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엄격한 원산지규정을 채택해 왔다.<sup>36)</sup> 일반적으로 Pan-European 방식은 부가가치기준을 채택하는 반면, NAFTA 방식은 주로 세번변경과 부가가치의 두 가지 기준에 기초하고 있다. NAFTA 방식은 자동차 및 특정의 중요한 자동차 부품과 같은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만 배타적으로 부가가치기준에 의존한다. 한편, 부가가치의 계산방법이 각 유형에 따라 다른데, Pan-European 방식에서는 공장인도가격(ex-works price)에서 비원산지재료가치(non-originating material value)를 제하여 계산하며, NAFTA 방식에서는 거래가격법(transaction value method) 또는 순원가(순비용)법(net cost method)에 의해 계산한다.<sup>37)</sup> 한편, 동아시아 국가들이 ASEAN 과 체결한 FTA는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간결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사용되고 있다.<sup>38)</sup>

## 2. FTA 규정의 비교분석

### (1) 한·칠레 FTA

한·칠레 FTA는 제4장에 원산지규정을 두고 있는데, 동 협정은 NAFTA, EU·칠레 FTA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국내 산업구조와 칠레와의 교역 등을 검토하여 원산지 판정기준을 결정하였다. 제4.2조(Originating Goods)에 원산지로 인정되는 상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완전생산기준에 따른 상품은 물론이고, 실질적 변형기준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는 세번

35)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앞의 책, 364쪽.

36) 김한성·조미진·정재완·김민성, 앞의 연구보고서, 36쪽.

37) Maureen Irish (ed.), *The Auto Pact: Investment, Labour and the WTO*, Kluwer Law International, 2004, p. 118.

38) 조미진·김한성·김민성·양주영, 동아시아 FTA를 대비한 한국 원산지규정 추진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98쪽.

변경기준을 적용하고, 부가가치기준 및 특정공정기준을 보완적으로 사용하였다.<sup>39)</sup> 또한 농산물의 경우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세번변경기준을 엄격한 2단위 변경으로 규정하고 부가가치기준을 높게 설정하고 있는 반면, 공산품의 경우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세번변경기준을 4단위 및 6단위 변경으로 완화하고 부가가치기준 역시 낮게 설정하였다.<sup>40)</sup> 이외에도 제4.5조 내지 제4.13조에 최소허용기준, 누적기준, 불인정공정 등 보충적 원산지 판정기준도 규정하고 있다.

## (2) 한·싱가포르 FTA

한·싱가포르 FTA는 제4장에 원산지규정<sup>41)</sup>을 두고 있는데, 동 협정은 제4.1조에 완전생산기준으로 인정되는 상품에 대해 규정하였다. 실질적 변형기준으로는 세번변경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품목에 따라 부가가치기준과 특정공정기준을 보완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부가가치기준의 경우 제4.5조에서 공제법에 따라 45~55% 이상의 역내가치 포함비율을 요구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sup>42)</sup>

제4.4조의 역외가공을 포함하여 제4.6조 내지 제4.16조에 원산지기준의 보충원칙들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4.3조에 의해 부속서B의 개성공단<sup>43)</sup>과 한반도 내의 기타 공업지구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양해되는 상품

39) 정인교, 한·칠레 FTA의 주요 내용,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35쪽.

40) 정인교, 위의 보고서, 36, 37쪽.

41) 협정문의 국문본에서는 ‘원산지규칙’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42)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싱가포르 FTA의 주요 내용, 2005, 25쪽.

43) 1991년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과 북의 교역을 민족 내부교류로 규정하고, 1995년에 제정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5조도 “남북한간의 거래는 민족 내부거래로서 협정에 의한 국가간의 거래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최혜국대우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북한이 WTO 회원국이 아니므로 개성공단제품은 높은 관세율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FTA에서는 상대국과의 협상을 통하여 개성공단제품에 관한 특례규칙을 마련하고 있다. 박덕영, “한미 FTA 협정상 관세관련 주요 내용 고찰”, 『조세법연구』 제13집 제2호, 2007, 506-507쪽; 개성공단과 FTA의 관계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고준성,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FTA 원산지 특례규정 활용방안”, 『안암법학』 제28권, 2009, 485-530쪽 참조.

(HS 6단위 96류 4,625개)이 한국 영토를 거쳐 싱가포르에 수출되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 (3) 한·EFTA FTA

한·EFTA FTA 제2.2조에 따르면, 원산지규정은 부속서 I(제1부)에 규정되어 있다. 부속서 I의 제2조에 의해 당사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당사국에서 완전히 획득되지 않은 재료를 통합할 경우 당사국에서 충분한 작업 또는 공정을 거치거나, 특별히 지정된 재료로부터 획득된 상품에 대해서만 원산지로 인정된다. 동 협정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혹은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전체 품목의 35.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단독으로 사용되는 품목은 총 1,469개로 28.1%에 해당한다.<sup>44)</sup>

한편 한·싱가포르 FTA와 마찬가지로 부속서 I의 부록 4(영역원칙의 면제: Exemptions from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에 의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해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 (4) 한·ASEAN FTA

한·ASEAN FTA의 상품무역협정 제5조에 따르면, 원산지규정은 부속서 3에 규정되어 있다. 부속서 3의 제2조 내지 제4조에 의해 완전 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 중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집적법과 공제법 적용)에 의해 원산지를 결정하고 있다.

동 협정의 원산지규정은 ‘품목별 원산지규정’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간결한 형태를 띠고 있다. 총 5,224개 품목 중 4,014개 품목에 대해 부가가치기준 또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한·ASEAN

44) 김한성·조미진·정재완·김민성, 앞의 연구보고서, 96쪽.

FTA 원산지규정이 간결한 형태를 지니게 된 데에는 원산지규정을 설정함에 있어 Negative List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즉, 5,224개 전 품목에 대해 일일이 결정기준을 명시하는 Positive List 방식이 아닌 품목별 원산지규정에서 언급되지 않은 품목은 역내가가치포함비율이 FOB가격의 40% 이상이거나 4단위 세번변경이 일어나는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일반적 원산지 결정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실제로 총 5,224개 품목 중 품목별 원산지규정으로 정의되지 않은 3,920개 품목은 일반 원산지 결정규칙을 따르고 있다. 또한 한·ASEAN FTA에서 458개 품목은 실질적 변형으로 인한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고 완전생산품목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농축수산물에 적용되고 있다.<sup>45)</sup>

한편 부속서 3의 제7조 내지 제14조에서 보충적인 원산지 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특정상품의 취급: Treatment for Certain Goods)에 의해 개성공단제품에 대한 원산지인정이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 문제에 민감하게 대응한 ASEAN을 위해 개성에서 역외가공된 상품으로 인해 ASEAN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발동할 수 있는 ‘특별긴급수입제한’이나 ‘5년 후 철회조항’과 같은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았다.<sup>46)</sup>

#### (5) 한·인도 CEPA

한·인도 CEPA는 제3장에 원산지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3.3조와 제3.4조에 원산지로 인정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히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였다. 제3.4조에 의하면, 부속서 3-A에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으로 규정되거나 역내부가가치 포함비율이 FOB

45) 김한성·조미진·정재완·김민성, 앞의 연구보고서, 96-97쪽.

46)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ASEAN FTA 주요 내용, 2007, 36-37쪽.

가격의 35% 이상이고, 상품이 그 제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가 분류된 세번에서 HS 6단위 기준으로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원산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제3.6조 내지 제3.12조 및 제3.15조에 보충적 원산지 결정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3.14조(영역원칙의 예외: Exemption from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에 의해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상품은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며, 부록 3-B-1(영역원칙의 예외의 적용대상이 되는 품목표: Product List Subject to Exemption from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에 HS 6단위 기준 108개의 상품이 규정되어 있다.

#### (6) 한·EU FTA

한·EU FTA는 별도의 ‘원산지 상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Protocol Concerning the Definition of ‘Originating Products’ and Methods of Administrative Cooperation)<sup>47)</sup> 제1절에 원산지규정을 두고 있는데, 동 의정서 제2조는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을 원산지 판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품목에 대한 개별적 원산지 판정기준은 부속서에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동 협정은 EU가 지지해 온 엄격한 결합기준원칙(세번변경기준 및 부가가치기준)을 처음으로 선택 기준(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으로 변경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sup>48)</sup> 동 의정서 제5조 제2항에 의해 부가가치기준과 관련하여서는 비원산지재료의 총가치가 해당 상품의 공장도가격 기준의 1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원산지로 인정된다.

또한 동 의정서 제3조와 제8조 내지 제11조 및 제13조에서 보충적 원산지 결정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12조(영역원칙: Principle of Territoriality) 제3항에 의해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상품이 원산지로 인정될 수 있게

47) 한·EU FTA 제15.13조: “이 협정의 부속서, 부록, 의정서 및 주석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따라서 동 의정서는 협정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48) 외교통상부, 한·EU FTA 상세설명자료, 2010, 90쪽.

되었다. 특히 부속서 4에 의해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를 설립하여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해서는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7) 한·페루 FTA

한·페루 FTA는 제3장에 원산지규정을 두어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적 원산지 판정기준은 부속서 3A(품목별원산지규정: Product Specific Rules of Origin)에 규정하고 있다. 동 협정 제3.1조에 따라 완전생산기준 또는 부속서 3A에 규정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또는 주요공정기준 등의 실질적 변형기준에 의해 원산지로 인정하고 있다. 제3.3조에는 역내가치포함비율(Regional Value Content)을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제법과 집적법을 선택적으로 사용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 협정 제3.4조 내지 제3.14조는 보충적 원산지 결정기준을 규율하고 있으며, 제3.15조(영역원칙: Principle of Territoriality) 제3항에 의해 부속서 3B(영역원칙의 예외: Exemption from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에 열거된 상품, 즉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상품에 대해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가능하게 하였다.

#### (8) 한·미 FTA

한·미 FTA는 제6장에 원산지규정을 두고 있는데, 한·페루 FTA와 마찬가지로 원산지 판정에 관한 일반원칙은 협정문에, 개별 품목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은 부속서에 규정하고 있다. 동 협정 제6.1조와 제6.22조에 완전생산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질적 변형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제6.1조에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또는 주요공정기준을 규정하였다. 또한 역내가치포함비율을 계산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6.2조에



공제법과 집적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경우 제6.2조 제3항과 제5항에 따라 집적법, 공제법 또는 순위가법을 기업이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 협정 제6.5조 내지 제6.13조는 보충적 원산지 결정기준을 규율하고 있으며, 부속서 22-B(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의 규정을 통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해 한국산과 동일한 관세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한·미 FTA는 섬유 및 의류에 관한 제4장에 별도의 원산지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4.2조와 부속서 4-A 및 4-B를 통해 섬유 원산지를 결정하는 원칙과 예외 품목 등을 규정하였다.

### 3. 소 결

이상으로 원산지규정에 대한 8개 협정문의 주요 규정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는 특혜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을 채택하고 있고, 실질적 변형기준으로는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협정문 구성은 다소 차이가 있는데,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인도 CEPA, 한·페루 FTA, 한·미 FTA는 협정문과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나, 한·EFTA FTA와 한·ASEAN FTA는 바로 부속서에, 한·EU FTA는 별도의 의정서에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양자간 FTA와 다자간 FTA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미 FTA를 제외한 4개의 FTA에서는 원산지규정 챕터를 통해 FTA 상의 특혜관세혜택을 받는 상품을 정하는 기준만을 규정하고 그 외의 절차적인 내용은 모두 통관절차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한·미 FTA에서는 원산지규정 챕터에 특혜관세 혜택을 받는 상품의 기준뿐만 아니라 이 상품들에 대한 신청절차까지도 규정하고 있다.<sup>49)</sup>

49) 강준하, “한국-미국 FTA 원산지규정에 관한 연구”, 『통상법률』 통권 제80호, 2008, 73쪽.

원산지규정은 체결 상대국에 따라 그 유형이 구분되는데, 한·칠레, 한·미 FTA의 경우 미국의 NAFTA 방식이 반영되었으며, 한·EFTA, 한·EU FTA는 EU의 Pan European 방식의 특징이 나타난다. 한편 한·ASEAN FTA의 경우 부가가치기준이나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최소한으로 운용하는 비교적 단순한 ASEAN 방식이 반영되었다.<sup>50)</sup> 이와 같이 FTA 원산지규정에 대해서는 협상 상대국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스파게티볼 효과를 막기 위해서라도 가능한 동일한 기준을 마련하여 상대국에 요청해야 할 필요가 있다.

〈 표 5 〉 FTA별 부가가치기준 비교

FTA	요건 <sup>51)</sup>	산출공식	상품가격계상기준	근거규정
한·칠레	RC(30~45%)	공제법/집적법	조정가치	제4.1조, 제4.3조
한·싱가포르	RC(45~55%)	공제법	관세가격	제4.1조, 제4.5조
한·EFTA	MC(30~60%)	MC	공장도가격	제6.1조 마, 하, 거
한·ASEAN	RC(35~60%)	공제법/집적법	FOB <sup>52)</sup>	제1조, 제4조
한·인도	RC(25~40%)	공제법	FOB	제4.3조
한·EU	MC(20~50%)	MC	공장도가격	의정서 제5.1조 및 부속서 2

50) 조미진·김한성·김민성·양주영, 앞의 연구보고서, 48쪽.

51) 부가가치 계산법에는 RC법과 MC법이 있는데, RC법(Regional Contents)은 역내 부가가치가 일정수준(집적법에 의거해 최소 35% 또는 공제법에 의거 최소 45%) 이상일 것을 요구하며, MC법(iMport Contents)은 역외 부가가치가 일정수준(50%) 이하일 것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국회입법조사처,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주요 정책 및 입법 과제 I, 2012, 229쪽, 주 9; [http://fta.customs.go.kr/kcsweb/user.tdf?a=common.HtmlApp&c=1102&page=/fta2010/html/kor/export\\_info/DBAQ204.html&mc=FTA2010\\_EXPORT\\_INFO\\_040](http://fta.customs.go.kr/kcsweb/user.tdf?a=common.HtmlApp&c=1102&page=/fta2010/html/kor/export_info/DBAQ204.html&mc=FTA2010_EXPORT_INFO_040).

52) ‘FOB(Free On Board)’란 본선인도가격을 말하는데, 수출품을 수출자가 선착장에서 본선까지 인도하기 전까지의 가격으로 수입국의 내국소비세가 포함되지 않는 가격을 의미한다.

FTA	요 건	산출공식	상품가격 계상기준	근거규정
한·페루	RC(35~60%)	공제법/집적법	FOB	제3.3조
한·미	RC(35~60%)	공제법/집적법/ 순원가법	조정가치	제6.2조~ 제6.4조

출처: 관세청, 한·미 FTA 활용 매뉴얼, 2011.<sup>53)</sup>

〈 표 6 〉 FTA별 개성공단 특례조항 비교

구 분	한·싱가포르	한·EFTA	한·ASEAN	한·인도	한·EU, 한·미
적용 방식	ISI 방식 <sup>54)</sup>	OP 방식 <sup>55)</sup>	OP 방식	OP 방식	위원회 방식
적용 조건	한국에서 선적 후 수출	역외부가 가치 40% 미만, 역내산 재료비 60% 이상	역외부가 가치 40% 미만, 역내산 재료비 60% 이상	역외부가 가치 40% 미만, 역내산 재료비 60% 이상	협정발효 후 1년 시점에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일정 기준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
적용 품목수	4,625개 (HS 6단위)	267개 (HS 6단위)	100개 (HS 6단위) (한국 선정품목 중, ASEAN 각국 선정)	108개 (HS 6단위) (한국 선정품목 중, 인도 최종 선정)	

53) <http://www.custra.com/content.do?method=getContent&gcd=S01&siteCmscd=CM0001&topCmscd=CM0025&cmscd=CM0517&pnum=2&num=6>.

54) 'ISI(Integrated Sourcing Initiative) 방식'이란 양국간 실제 원산지 여하를 불문하고 상대국에서 수출되는 일정상품을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55) 'OP(Outward Processing) 방식'이란 당사국에서 수출된 재료로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생산 또는 가공과정을 거쳐 다시 당사국으로 재수입하여 역내산으로 상대국에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구 분	한·싱가포르	한·EFTA	한·ASEAN	한·인도	한·EU, 한·미
참고 사항	싱가포르 는 북한산 제품에 대해서도 거의 모든 품목에 이미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큰 반대없이 우리측 요구를 대부분 반영	적용 대상으로 개성공단을 명시하지는 않되, 시범단지 15개 업체의 생산예정품 목을 대상품목 으로 적시	개성공단 생산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ASEAN의 우려를 반영, 특별긴급수 입제한조치 연례검토, 5년 후 철회 가능성 등 규정	개성공단 생산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인도의 우려를 반영, 한·ASEAN FTA와 같은 방식으로 특별긴급수입 제한조치 연례검토, 5년 후 철회 가능성 등 규정	개성공단 외 다른 북한지역도 한반도역외 가공지역위 원회로 선정이 가능토록 하여, 남포, 신의주 등 제2, 제3의 남북경제특 구 건설의 중요한 전기 마련

출처: 외교통상부, 한·미 FTA 상세설명자료, 2011, 58쪽.

위 표에 나타나 있지 않은 한·칠레 FTA의 경우 개성공단 관련 특례조항이 없으며, 한·페루 FTA는 OP방식으로 100개 품목에 대해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개성공단과 관련하여 한·EU FTA와 한·미 FTA에서는 협정발효 후 1년 뒤에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하기로 하였는데, 보다 진전된 형태의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설득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제 3 절 통관절차

#### 1. 개 요

FTA 협정문에 따라 통관절차(Customs Procedures) 또는 원산지절차(Origin Procedures)의 두 가지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보통

상품의 수출입자가 준수해야 하는 상품의 원산지증명 관련 의무와 당사국 정부의 원산지 확인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2. FTA 규정의 비교분석

### (1) 한·칠레 FTA

한·칠레 FTA는 제5장에서 통관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원산지 발급은 수출자 및 생산자의 자율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협정문은 원산지증명서<sup>56)</sup> 및 신고서, 수출입 관련 의무 및 예외, 원산지 검증, 원산지 사전검증, 심사 및 상소, 벌칙, 통일규칙, 협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동 협정 제5.2조 제8항에 의하면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이 정부 또는 정부에 의해 위임된 기관에 의한 증명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제5.3조에 의해 수입국이 원산지 확인 후 원산지 증명서가 허위로 또는 근거 없이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원산지규정 준수를 입증할 때까지 특혜관세대우 요구를 중지할 수 있다.

동 협정 제5.8조 제1항에 의하면 원산지 검증을 위해 수입 당사국은 수출 당사국에 원산지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may request), 제2항에 의해 세관당국은 수출국의 수출업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생산관련 기록 및 설비를 검사할 수 있다. 또한 통관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5.9조에 사전검증(Advanced Rulings on Determinations of Origin)<sup>57)</sup>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5.10조에 의해 원산지 판정에 대한 이의 제기 및 재심사(Review and Appeal)가 가능하며, 제5.11조에

56) ‘원산지증명서’란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 또는 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57) ‘Advanced Rulings’을 국문본에서 사전검증, 사전판정, 사전심사 등 여러 가지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한·인도 CEPA 이후부터 ‘사전심사’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다.

의해 각 당사국은 통관절차와 관련된 자국의 법규 위반에 대해 ‘형사, 민사 또는 행정적 책임’을 부과하는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

## (2) 한·싱가포르 FTA

한·싱가포르 FTA 역시 제5장에서 통관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협정문은 원산지증명서, 특혜관세신청, 수출관련의무, 기록유지의무, 원산지 검증, 원산지 사전판정, 관세협력, 관세접촉선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속서(5A, 5B, 5C, 5D)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원산지증명서 양식, 관세접촉선(Customs Contact Point) 등을 규율하고 있다.

동 협정 제5.3조 제1항에 의해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기 위하여 협정관세적용신청서와 요구가 있을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제5.2조 제2항에 의해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당사국의 발급기관에서 발급하여야 한다. 부속서 5A에 의하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청, 대한상공회의소 및 우리정부가 승인한 기관이 되며, 싱가포르는 세관 및 싱가포르정부가 승인한 기관이 된다.

또한 협정 제5.7조에 의해 원산지 검증을 위해 수입 당사국은 수출 당사국에 원산지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세행정기관(customs administration)은 수출국의 수출업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생산관련 기록 및 설비를 검사할 수 있다. 또한 제5.9조에는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는(may deny)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5.8조에는 통관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판정(advance rulings)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제5.11조에 의해 원산지 판정에 대한 검토 및 불복청구가 가능하며, 제5.12조에 의해 각 당사국은 통관절차와 관련된 자국의 법규 위반에 대해 ‘형사 또는 행정적 벌칙’을 부과하는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제5.15조 제2호는 통관절차 및 원산지규정을 다루기 위해 관세접촉선을 지정하도록(shall designate) 규정하였다.

### (3) 한·EFTA FTA

한·EFTA FTA 제2.2조에 따르면, 부속서 I(제2부)에 통관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동 부속서 제15조 제2항에 의하면 통관절차 간소화 및 비용절감을 위해 원산지신고서는 송품장(invoice) 또는 기타 상업적 서류로 제공될 수 있다. 제24조의 원산지신고서 검증과 관련하여 이전의 FTA에서 채택하고 있던 직접검증방식 대신 간접검증방식을 도입하였는데, 즉 수입국의 관세당국은 수출자 및 생산자에 대한 현지조사를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대신 검증과정에 참관인(observer)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동 부속서 제16조의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sup>58)</sup> 규정에 의하면,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수출자가 서명 없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인증할 수 있다. 또한 제28조에는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1조는 동 부속서에 관련된 협의를 위해 관세연락창구를, 제32조는 관세 및 원산지 소위원회(Sub-Committee on Customs and Origin Matters)를 설치하여 정보교환 및 원산지규정 검토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다.

### (4) 한·ASEAN FTA

한·ASEAN FTA의 상품무역협정 제5조에 따르면, 부속서 3 및 그 부록에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Operational Certification Procedures)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부록 1(원산지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의 제9조에 의하면, 특혜관세대우의 신청목적상 수입자는 수입시에

58) ‘원산지인증수출자’란 관세당국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FTA 체결국가가 증가하면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관세청,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2010, 1쪽; <http://ecustoms.tistory.com/1895>.

원산지증명서와 기타 서류를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부록 1의 제14조에서는 원산지 검증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수입자에게 원산지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15조에 의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수출국에 현지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제17조에 특혜관세대우의 배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22조에서 원산지증명서와 관련된 부정행위에 대해 법적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제23조에 해당 부록에 관한 모든 사안을 다루기 위해 연락창구(contact point)<sup>59)</sup>를 지정하도록(shall designate) 규정하였다.

#### (5) 한·인도 CEPA

한·인도 CEPA는 제4장에서 원산지절차(Origin Procedures)를, 제5장에서 무역원활화 및 관세협력(Trade Facilitation and Customs Cooperation)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제4장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과 원산지증명서 양식에 관한 부속서를 포함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신청과 발급, 효과 및 검증 등을 다루고 있으며, 제5장은 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관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동 협정 제4.8조는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기 위하여 수입자는 수입된 상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와 기타 서류를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제4.11조에서는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한 원산지 검증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수입자에게 원산지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4.12조에 의해 예외적 상황에서 수출국에서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제4.14조에 특혜관세대우의 배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4.16조에

---

59) ‘contact point’에 대한 국문본을 살펴보면, 연락창구, 관세접촉선, 접촉선, 접촉부서, 연락처 등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통일적인 번역이 필요하다.



의해 각 당사국은 원산지절차와 관련된 자국의 법규 위반에 대해 ‘형사, 민사 또는 행정상의 제재’를 부과하는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동 협정 제5.7조는 관세당국이 내린 결정에 대한 불복청구(Review and Appeal)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5.8조는 사전심사(Advance Rulings) 조문을 통해 원산지 결정 등의 신속한 발급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5.10조와 제5.11조를 통해 각각 관세위원회와 관세접촉선 설치를 규정함으로써 관세 관련 문제를 다루고 제5장 및 관련 챕터의 효과적인 이행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였다.

#### (6) 한·EU FTA

한·EU FTA는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의 제2절 원산지절차와 동 협정의 제6장 관세 및 무역원활화(Customs and Trade Facilitation)를 통해 통관절차 및 관세협력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먼저 동 의정서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제17조에 정의되어 있는 인증수출자가 스스로 원산지증명을 발급받도록 하는 자율증명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원산지증명서는 한·EFTA FTA와 마찬가지로 제15조 제1항에 의해 송품장 방식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제27조에 의하면 원산지증명의 검증과 관련하여서도 한·EFTA FTA와 동일하게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수행하는 간접검증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동조 제8항에 의해 양 당사자가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공동 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해 줌으로써 협정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sup>60)</sup> 동 협정 제19조에 의해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는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또한 제28조에 의해 원산지 증명의 검증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관세위원회(Customs Committee)에 제출되어야 하며, 제29조에는 벌칙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60) 외교통상부, 한·EU FTA 상세설명자료, 2010, 82쪽.

한편, 동 협정 제6장은 당사국 간 무역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간소화되고 효율적인 통관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6.6조는 사전심사(Advance Rulings)를 규율하고 있으며, 제6.7조는 불복청구 절차(Appeal Procedures)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15조에서는 관세접촉선을, 제6.16조에서는 관세위원회 설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7) 한·페루 FTA

한·페루 FTA는 제4장에서는 원산지절차를, 제5장에서는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4.13조 이행조항(Implementation)에 의하여 원산지증명은 협정 발효 후 5년 동안은 자율증명제도를 규정한 협정 제4.1조 및 제4.6조를 대신하여 기관증명과 인증수출자를 규정한 부속서 4A(원산지 증명)가 적용되며, 5년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제4.1조 및 제4.6조가 적용되는 자율증명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동 협정 제4.4조에서는 특혜관세대우 신청에 관해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4.8조에서는 검증 방식에 관해 규율하고 있는데 직접검증 및 간접검증 방식 모두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직접검증의 경우에도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동행하여야 한다.

또한 동 협정 제5.6조는 불복청구(Review and Appeal) 조항을 통해 통관절차 또는 관련인에 대한 사법적 및 행정적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5.7조는 사전심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제5.10조에서는 문의처(Inquiry Points)를 지정하여 통관 사안에 대한 문의를 다루도록 하고, 제5.25조에서는 원산지규정 및 원산지절차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한 관세·원산지 및 무역원활화 위원회(Committee on Customs, Origin, and Trade Facilitation) 설치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다.

## (8) 한·미 FTA

한·미 FTA는 제6장 제2절에서는 원산지절차를, 제7장에서는 관세 행정 및 무역원활화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6.18조에서는 원산지 검증절차를, 제6.19조에서는 수입관련의무, 제6.20조에서는 수출관련의무를 규율하고 있다.

제7장에서는 양자간 무역을 원활화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이 상품의 효율적인 반출을 위한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7.2조나 제7.7조를 통해 보통은 상품 도착 후 48시간, 특송화물의 경우 4시간 이내에 상품을 반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7.8조는 재심 및 불복청구(Review and Appeal)를, 제7.9조는 민사상 또는 행정상의 벌칙 및 형사상 제재를, 제7.10조는 사전심사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3. 소 결

이상에서 8개 FTA에 규정되어 있는 통관절차(또는 원산지절차)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각 FTA별 원산지 증명방식과 검증의 구체적 방법 및 인증수출자제도와 관련하여 아래에서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 표 7 〉 FTA별 원산지 증명방식 비교

FTA	증명방식	발급자	증명서식	유효 기간	사용 언어	사용 회수
한·칠레	자율증명 <sup>61)</sup>	수출자	양국간 통일증명 서식	2년	영어 사용 원칙	1회 사용 원칙

61) ‘자율증명’이란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 서명(당해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관련서류에 수출자가 원산지국가를 기재할 것을 포함)하여 사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 3 장 FTA의 상품무역규정에 대한 비교분석과 평가

FTA	증명방식	발급자	증명서식	유효기간	사용언어	사용회수
한·싱가포르	기관증명 <sup>62)</sup>	싱가포르: 세관/한국: 세관, 상의, 자유무역관리원	국가별 증명서식	1년	영어 사용 원칙	1회 사용 원칙
한·EFTA	자율증명	수출자	송품장 신고방식	1년		
한·ASEAN	기관증명	아세안: 정부기관/한국: 세관, 상의	통일증명서식-AK서식	6개월		
한·인도	기관증명	인도: 수출검사위원회/한국: 세관, 상의	통일증명서식-AK서식	1년		
한·EU	자율증명	수출자	송품장 신고방식	1년	EU 당사국 언어 및 한글	
한·페루	기관증명(5년간), 자율증명	기관(페루:통상관광부/한국:세관, 상의); 자율(수출자)	기관:통일증명서식; 자율: 송품장신고방식	1년	영어	
한·미	자율증명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권고서식	4년	영어, 한글 (요구시 번역본 제출)	12개월 내에 포괄 발급 가능

출처: 관세 포털 홈페이지.<sup>63)</sup>

62) ‘기관증명’이란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관세당국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63) [http://fta.customs.go.kr/kcsweb/user.tdf?a=common.HtmlApp&c=1102&page=/fta2010/html/kor/export\\_info/DBAQ205.html&mc=FTA2010\\_EXPORT\\_INFO\\_050](http://fta.customs.go.kr/kcsweb/user.tdf?a=common.HtmlApp&c=1102&page=/fta2010/html/kor/export_info/DBAQ205.html&mc=FTA2010_EXPORT_INFO_050).

〈 표 8 〉 FTA별 원산지 검증의 간접검증과 직접검증

FTA	간접검증	직접검증	비 고
한·칠레	수출국 세관에 정보요청	서면질의 정보요청 방문조사	제5.8조
한·싱가포르	수출국 세관을 통하여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원산지소명서 및 정보요청	방문조사	순차적용 (제5.7조)
한·EFTA	수출국 세관에 검증의뢰 및 검증과정 참관	없음	
한·ASEAN	수출국 발급기관에 검증의뢰	방문조사	순차적용 (부속서3 부록 1 제14~15조)
한·인도	수출국 발급기관에 검증의뢰	방문조사	순차적용 (제4.11~4.12조)
한·EU	수출국 세관에 검증의뢰 및 검증과정 참관	공동조사	
한·페루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통해,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의 추가적인 정보의 서면 요청	권한 있는 당국의 공무원이 동행하는 방문조사	
한·미	섬유제품의 경우 제한적 간접검증 방식 적용	정보요청 서면질의 방문조사	

출처: FTA 포털 홈페이지.<sup>64)</sup>64) [http://fta.customs.go.kr/kcsweb/user.tdf?a=common.HtmlApp&c=1102&page=/fta2010/html/kor/orgwarnty\\_info/DBAQ405.html&mc=FTA2010\\_ORGWARNTY\\_INFO\\_020](http://fta.customs.go.kr/kcsweb/user.tdf?a=common.HtmlApp&c=1102&page=/fta2010/html/kor/orgwarnty_info/DBAQ405.html&mc=FTA2010_ORGWARNTY_INFO_020).

〈 표 9 〉 FTA별 인증수출자제도 비교

FTA	인증 전	인증 후
한·ASEAN 한·싱가포르 한·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전산으로 신청)</li> <li>- 첨부서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출신고필증 사본</li> <li>(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li> <li>(3) 원산지소명서</li> <li>(4) 원산지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li> <li>(5) 그 밖의 원산지증명서</li> </ul> </li> <li>- 현지확인(필요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전산으로 신청)</li> <li>- 첨부서류 제출 생략</li> <li>- 현지확인 생략 가능</li> </ul>
한·EF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로 (통상 invoice 신고 시) 수출자의 서명 필요</li> <li>* 전자문서 이용 불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로 (통상 invoice 신고 시) 수출자의 서명 생략</li> <li>* 전자문서 이용 가능</li> </ul>
한·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로 수출자의 서명 필요</li> <li>* 전자문서 이용 불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000유로 이상 상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특혜관세 적용 가능)</li> </ul>
한·페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화 2,000달러 초과 상품을 수출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만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화 2,000달러 초과 상품을 수출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및 자율발급 모두 가능</li> </ul>
기 타	동 제도 미적용	

출처: 관세청,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2010, 2쪽.

## 제 4 절 무역구제

### 1. 개 요

국제무역의 자유화를 위해서는 무역에 대한 관세 또는 비관세장벽의 철폐와 더불어, 국가 혹은 기업의 덤핑이나 보조금과 같은 불공정한 무역관행의 제거가 필수적이다.<sup>65)</sup> 이를 위해 WTO는 긴급수입제한 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afeguards), 반덤핑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을 부속서로 채택하고 있다. 먼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의하면, 수입의 급증으로 인해 국내산업(domestic industry)이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를 입은 경우 구제수단으로 수입국은 수입관세율을 조정하거나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measures)를 취할 수 있다.<sup>66)</sup> 또한 덤핑행위로 인해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를 입은 경우에 수입국은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보조금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FTA에서 다루고 있는 무역구제조치를 살펴보면, 위의 WTO 무역구제조치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거나, ‘WTO 플러스 방식’으로 이를 강화하는 방식을 채용하거나, WTO 원칙을 그대로 준용하거나 WTO 원칙 대신 당사국의 국내절차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채택한 FTA에서는 주로 WTO 플러스 방식을 지향하고 있다.

65) 김대순, 『국제경제법론』, 삼영사, 1998, 98쪽.

66) 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하여, FTA에서는 대부분 WTO협정과 유사한 다자간 조치를 인정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양자간 조치 또는 지역적 조치도 병행하는 경우가 있다. 오현석, “한·미 무역구제제도 및 KORUS-FTA 제10장에 대한 평가 및 유의점에 관한 고찰”, 『한국무역상무학회지』 제41권, 2009. 2, 241쪽.

## 2. FTA 규정의 비교분석

### (1) 한·칠레 FTA

한·칠레 FTA는 제6장과 제7장에서 무역구제조치, 즉 긴급수입제한 조치(Safeguard Measures)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사항(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Matters)에 관하여 각각 한 개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6.1조에 의하면 양 당사국은 GATT 제XIX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며, 이에 따라 취해진 조치는 동 협정의 제19장, 즉 일반 분쟁해결절차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또한 제7.1조에 의하면, 양 당사국은 GATT 제VI조 및 반덤핑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며, 이에 따라 취해진 반덤핑조치와 상계조치는 동 협정의 일반 분쟁해결절차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 (2) 한·싱가포르 FTA

한·싱가포르 FTA는 제6장에서 무역구제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6.2조에서 위의 한·칠레 FTA와 마찬가지로 양 당사국은 GATT 제XIX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며, 이에 따라 취해진 조치는 동 협정의 일반 분쟁해결절차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한편 동조 제3항에 의하면, 반덤핑마진을 계산할 때 제로잉(zeroing)<sup>67)</sup>을 금지하고, 최소부과원칙(lesser

---

67) ‘제로잉(Zeroing)’이란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하여 덤핑마진을 결정할 때, 조사대상 상품의 음(-)의 덤핑마진을 “0”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이 경우 양(+)의 덤핑마진만 합산되기 때문에 조사대상 상품의 덤핑마진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된다. 따라서 제로잉에 대해 이것이 덤핑마진을 인위적으로 확대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측과 음(-)의 덤핑마진으로 양(+)의 덤핑마진을 상쇄시켜 최종 덤핑마진을 줄이는 것은 불공정무역에 대한 구제책으로 적합하지 않는다는 측으로 나뉘어져 있다. WTO 분쟁해결기구는 제로잉이 모든 비교가능한 수출가격을 고려해야 한다



duty)<sup>68)</sup>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제6.3조는 상계조치와 관련하여 위의 한·칠레 FTA와 동일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6.4조는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즉 동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 타방 당사국의 원산지상품이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 우려의 실질적 원인을 구성할 정도로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 생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 하에,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규율하고 있는 제6.5조에 의하면, 양 당사국은 GATT 제XIX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며, 이에 따라 취해진 조치는 동 협정의 일반 분쟁해결절차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 (3) 한·EFTA FTA

한·EFTA FTA는 무역구제조치에 관하여 별도의 챕터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몇 개의 규정을 통해 이를 규율하고 있다. 먼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제2.9조에 의하면, 보조금 및 상계조치와 관련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GATT 제VI조 및 제XVI조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규율되며, 보조금 조사 개시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반덤핑에 관한 제2.10조에서는 양 당사국이 GATT 제VI조 및 반덤핑협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며, 반덤핑조사 개시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

는 ‘반덤핑협정’에 위배된다고 판결하고 있으나, 관련 협정의 명시적 규정 부재로 여전히 국가들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고 있지 않다.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앞의 책, 268-269쪽; Petros C. Mavroidis, George A. Bermann and Mark Wu, *The Law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Documents, Cases & Analysis*, Thomson Reuters, 2010, pp. 462-463.

68) ‘최소부과원칙’이란 덤핑마진보다 낮은 관세로도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기에 충분할 경우, 낮은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최소부과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제2.11조는 한·싱가포르 FTA 제6.4조와 유사하게 규율하고 있다.

#### (4) 한·ASEAN FTA

한·ASEAN FTA 역시 무역구제에 관한 별도의 챕터를 두지 않고, 몇 개의 조항에서 관련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한·ASEAN FTA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협정 제7조에 의하면, 당사국들은 보조금 및 상계관세, 반덤핑제도와 관련하여 해당 WTO 원칙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기로 한 약속에 관하여 동의하고 재확인한다. 또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규율하고 있는 제9조에 의하면, 양 당사국은 GATT 제XIX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며, 이에 따라 취해진 조치는 분쟁해결제도협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 (5) 한·인도 CEPA

한·인도 CEPA도 무역구제에 관한 별도의 챕터를 두지 않고 있으며, 상품무역 중 제2.13조 내지 제2.27조에 무역구제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제2.13조 제1항에 의하면 양 당사국은 GATT 제VI조 및 반덤핑협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며, 제2항에 의해 반덤핑 조사 개시 이전에 상대국에 통보하도록 합의하였으며, 최소부과원칙, 제로잉 금지 및 재심 종료 후 조사면제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제2.20조에 의하면, 양 당사국은 GATT 제VI조 및 제XVI조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을 준수하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제2.22조에서는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제2.27조에서는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규율하고 있다.

## (6) 한·EU FTA

한·EU FTA는 제3장에서 무역구제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1절은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제2절은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제3절은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제4절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5절은 제도규정에 관해 규율하고 있다.<sup>69)</sup>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제3.7조에 의하면, 조사 개시와 관련 정보에 대해 상대국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3.9조에서 반덤핑 조사 개시 역시 상대국에 서면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10조에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전에 공공이익을 고려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으며,<sup>70)</sup> 제3.14조에서 최소부과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제3.16조에서 무역구제 협력 작업반(Working Group on Trade Remedy Cooperation)을 설치하여 동 챕터의 이행을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FTA와 마찬가지로 제3.7조와 제3.8조에서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 및 상계조치와 관련하여 관련 WTO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함을 확인하고 있다.

## (7) 한·페루 FTA

한·페루 FTA는 제8장에서 무역구제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1절은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제2절은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69) EU는 WTO가 출범한 1995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을 상대로 총 108건의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그 중에서 총 66건에 대해 조치를 취하였는데, 한국은 한 건의 반덤핑조사도 실시한 적이 없다. 손기윤, “한-EU FTA의 반덤핑규정 분석”, 『법학연구』 제19권 제4호, 2009, 95쪽.

70) WTO반덤핑협정에는 공익조항이 없으므로 동 조항의 존재의미가 있으나, 동 조항이 법적 의무가 아닌 권고적 성격을 지니며 구체적 적용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어 향후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조항으로 보인다. 손기윤, 위의 논문, 101쪽; 또한 WTO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도 공익조항이 없어 동 조항은 존재의미가 있으나 법적 의무가 아니므로 그 실익은 찾기 어려워 보인다. 손기윤, “한-EU FTA의 상계관세규정 분석”, 『국제거래법연구』 제18집 제2호, 2009, 101쪽.

제3절은 반덤핑 및 상계조치, 제4절은 무역구제 협력 체계에 관해 규율하고 있다. 제8.6조에 의해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절차의 개시 및 적용 등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제8.9조 제5항에 의해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사를 상대국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역시 다른 FTA와 마찬가지로 제8.1조 제1항과 제8.9조 제1항에서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 및 상계조치와 관련하여 해당 WTO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함을 확인하고 있다.

### (8) 한·미 FTA

한·미 FTA는 제10장에서 무역구제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1절은 긴급수입제한조치, 제2절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3절은 무역구제위원회(Committee on Trade Remedies)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sup>71)</sup> 역시 다른 FTA와 마찬가지로 제10.5조 제1항과 제10.7조 제1항에서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적용과 관련하여 해당 WTO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함을 확인하고 있다.<sup>72)</sup> 또한 제10.8조에서 무역구제위원회를 설치하여 무역구제 관련 문제를 다루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긍정적 현상으로 평가된다.

## 3. 소 결

이상으로 상품무역에 있어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8개 협정문의 주요 규정을 살펴보았다. 한·칠레 FTA에서는 무역구제에 관한 WTO협정에

71) 보다 자세한 설명은 오현석, 앞의 논문(각주 66), 256-260쪽 참조.

72)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핵심은 FTA 회원국에 대한 동 조치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다른 FTA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심각한 피해나 피해 우려의 ‘상당한 원인(substantial cause)’이 아닌 경우에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는 당사국이 FTA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그러나 ‘상당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 조항의 이행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손기윤, “한-미 FTA의 세이프가드규정 분석”, 『법학논총』 제33권 제2호, 2009, 878-879쪽.

따른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한·ASEAN FTA를 제외한 다른 대부분의 FTA에서는 일정한 조건, 즉 제로잉 금지, 최소부과원칙, 통보와 사전협의, 공익 고려 등을 충족하는 경우 하에 관련 WTO협정에 따른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ASEAN FTA 및 한·EU FTA 등에서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역구제와 관련된 분쟁에서 FTA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 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해당 사안은 결국 WTO의 분쟁해결절차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한편 무역구제조치는 FTA로 인한 수입의 급격한 증가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규범을 형성하고 있지만, 국내적 차원의 법률 정비를 통한 보다 다각적 차원의 무역구제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표 10 〉 FTA별 무역구제제도 비교

FTA	반덤핑	상계관세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한·칠레	WTO 합치, 일반 분쟁해결절차 비적용	WTO 합치, 일반 분쟁해결절차 비적용	WTO 합치, 일반 분쟁해결절차 비적용
한·싱가포르	조건부 WTO 합치, 제로잉 금지, 최소부과원칙(should), 일반 분쟁해결절차 비적용	조건부 WTO 합치, 일반 분쟁해결절차 비적용	조건부 WTO 합치, 일반 분쟁해결절차 비적용
한·EFTA	조건부 WTO 합치, 통보와 사전협의, 최소부과원칙(shall), 공동위원회	조건부 WTO 합치, 통보와 사전협의, 공동위원회	양자 긴급수입제한 조치만 규정

제 3 장 FTA의 상품무역규정에 대한 비교분석과 평가

FTA	반덤핑	상계관세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한·ASEAN	WTO 합치, 일반 분쟁해결절차 비적용	WTO 합치, 일반 분쟁해결절차 비적용	WTO 합치, 일반 분쟁해결절차 비적용
한·인도	조건부 WTO 합치, 통보와 사전협의, 제로잉금지, 최소부과원칙(shall), 재심 종료 후 조사 면제	WTO 합치	조건부 WTO 합치
한·EU	조건부 WTO 합치, 통보와 사전협의, 정보공개, 최소부과원칙(should), 공익조항, 일반 분쟁해결절차 비적용, 무역구제 협력작업반	조건부 WTO 합치, 통보와 사전협의, 정보공개, 최소부과원칙(should), 공익조항, 일반 분쟁해결절차 비적용, 무역구제 협력작업반	조건부 WTO 합치, 일반 분쟁해결절차 비적용, 무역구제 협력작업반
한·페루	조건부 WTO 합치, 통보와 사전협의, 조사협조, 정보공개, 최소부과원칙	조건부 WTO 합치, 통보와 사전협의, 조사협조, 정보공개, 최소부과원칙	조건부 WTO 합치
한·미국	조건부 WTO 합치, 일반 분쟁해결절차 비적용, 통보와 사전협의, 무역구제위원회	조건부 WTO 합치, 일반 분쟁해결절차 비적용, 통보와 사전협의, 무역구제위원회	조건부 WTO 합치, 무역구제위원회

## 제 5 절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 1. 개 요

식품의 안전 및 공중보건과 관련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는 국가간 무역이 확대될수록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데, WTO의 부속서 중의 하나인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이하 ‘SPS협정’)'을 통해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이하 ‘SPS조치’)<sup>73)</sup>를 취할 회원국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sup>74)</sup> GATT 제XX조 (b)호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 한 차별적인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가 금지되는 것과 달리, SPS협정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SPS조치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sup>75)</sup>

### 2. FTA 규정의 비교분석

#### (1) 한·칠레 FTA

한·칠레 FTA는 제8장에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먼저 제8.3조에 의하면 양 당사국은 SPS협정에 따라 자국 영역 내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보호상 필요한 경우 어떠한 SPS조치도 채택, 유지 또는 적용할 수 있으며, 적정보호 수준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국의 SPS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73) ‘SPS조치’는 식품에서 기인하는 인간과 동물의 건강상 위험과 질병 또는 병충해로 인한 인간, 동물 및 식물에 대한 위험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정의되는데, 이의 구체적 내용은 SPS협정 부속서 A, 제1항 참조.

74)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앞의 책, 214, 220쪽.

75)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위의 책, 220쪽.

동 협정 제8.4조는 당사국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즉 SPS 조치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거나 불필요한 무역장벽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과학적 원리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의적이거나 불공정한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제8.5조에서는 국제 표준 및 조화에 관한 규정으로 양 당사국의 SPS 조치는 국제 표준, 지침 또는 권고에 기초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8.6조에서는 동등성 원칙(Equivalence)<sup>76)</sup>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SPS 조치는 국제기구에 의해 개발된 위험평가방법을 고려하여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에 대한 위험평가에 기초하여야 한다.<sup>77)</sup> 또한 제8.10조에 따라 각 당사국의 SPS조치의 변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위원회(Committee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를 설립하여 동 챕터를 이행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sup>78)</sup>

## (2) 한 · 싱가포르 FTA

한 · 싱가포르 FTA는 제7장에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먼저 제7.1조에 따라 양 당사국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자국의 SPS조치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동 조치는 과학적 원리에 근거해야 하는데, 이러한 원칙들은 동 협정에 통합되어 일부가 된 SPS협정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SPS조치에 관한 협의 및 정보 교환 등을 위해 양국은 접촉선(contact point)을 유지하도록 하였다.<sup>79)</sup>

76) ‘동등성 원칙’이란 수출국의 SPS조치가 수입국의 조치와 상이하더라도 적정 수준을 달성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 수입국은 수출국의 동 조치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한 · 칠레 FTA 제8.6조 참조.

77) 한 · 칠레 FTA 제8.7조 제1항.

78) 한 · 칠레 FTA 제8.11조.

79) 한 · 싱가포르 FTA 제7.1조 제4항에 의하면 한국은 농림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가, 싱가포르는 농산식품수의청(Agri-Food and Veterinary Authority)이 해당 업무를 담당한다.



(3) 한 · EFTA FTA

한 · EFTA FTA는 제2장 상품무역 중 제2.7조에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동 조항에 의하면 SPS조치에 관한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는 SPS협정에 의해 규율된다.

(4) 한 · ASEAN FTA

한 · ASEAN FTA 기본협정 제14조(Standards and Conformity Assessment and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제2항에 의하면, 농업, 수산업, 동물 및 식품 제품과 작물의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있어서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호협력해야 한다.

이러한 상품무역협정 제7조에 의하면, 당사국들은 SPS협정 등에 따른 WTO 원칙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기로 한 약속에 관하여 동의하고 재확인한다. 그리고 제8조 제3항에서 각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와 관련된 질의에 응답하기 위하여 연락처(contact point)를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제4항에서 이행위원회(Implementing Committee) 산하에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과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작업반(working group on TBT and SPS)’을 설치하여 동 조항의 이행 및 무역 증진과 상호협력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다.

(5) 한 · 인도 CEPA

한 · 인도 CEPA는 제2장 상품무역 중 제2.28조(Technical Regulations and SPS Measures)에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먼저 제1항에 의하면 각 당사국은 SPS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한다. 제2항에서는 당사국은 양자간 교역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보

교환·양자협의 및 상호협력을 위하여 인간, 동물 그리고 식물의 생명 혹은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당사국의 합법적인 권리를 존중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상품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SPS조치의 도입이나 변경에 관해 정보를 교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공동작업반(Joint Working Group)을 설치하여 관련 문제를 다루도록 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대한 어떠한 분쟁도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동 협정의 일반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6) 한·EU FTA

한·EU FTA는 제5장에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5.1조 제1항에 의하면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면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4조에서는 각 당사국이 SPS협정상 의 기존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5조에서는 투명성을 추구하며, 제5.6조에서는 국제기준을 개발하고 협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5.10조에 의해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위원회를 설치하여 동 챕터의 이행 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제5.11조에 의해 동 챕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일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없도록(Neither Party may have recourse to) 규정하고 있다.

#### (7) 한·페루 FTA

한·페루 FTA는 제6장에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면서 SPS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며, SPS조치가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을 것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6.3조에서는 양 당사국이

SPS협정상의 기존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4조에서는 동등성에 관해, 제6.5조에서는 위험평가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또한 제6.7조에 의해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 위원회(Committee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atters)’를 설치하여 동 사안에 대해 협력과 협의 및 무역 증진과 동 챕터의 이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제6.8조에 의해 동 챕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일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해서는 안 되도록(Neither Party shall have recourse to) 규정하고 있다.

#### (8) 한·미 FTA

한·미 FTA는 제8장에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8.2조에 의하면 양 당사국이 SPS협정상의 기존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8.3조에 의해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관한 위원회(Committee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atters)’를 설치하여, 동 사안에 관한 협력과 협의 및 무역을 촉진하고 SPS협정의 이행을 증진하도록 하였으며, 제8.4조에 의해 동 챕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일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3. 소 결

이상으로 상품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에 대한 8개 협정문의 주요 규정을 살펴보았다. FTA의 동 챕터에 관한 내용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체로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는데, 동 챕터는 SPS협정상 FTA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며, 이에 관한 보다 구체적 사안은 SPS위원회나 작업반 등을 설치하여 다루도록 하고 있다. FTA의 일반 분쟁해결절차 이용에 관해서는 입장이 갈리고 있는데, 한·인도

CEPA 이후의 FTA는 관련 규정을 통해 해당 절차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분쟁은 WTO의 분쟁해결기구를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와 관련하여서는 WTO의 SPS협정이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되며, 동 협정에 규정된 내용을 초월하고 있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가 아직 FTA의 주된 관심사항에 속하지는 않기 때문일 것이다.

〈 표 11 〉 FTA별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비교

FTA	SPS협정과 관계	의무와 이행	분쟁해결
한·칠레	SPS협정에 따른 SPS조치 적용, 조건부 자국의 SPS조치 적용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금지, 과학적 원리에 근거, 최혜국 및 내국민대우, 국제표준 및 조화, 동등성, SPS위원회	협의→일반 분쟁해결절차
한·싱가포르	동 협정에 수용되어 일부가 된 SPS협정 적용, 조건부 자국의 SPS조치 적용	접촉선 유지	일반 분쟁해결절차 적용
한·EFTA	SPS협정에 의해 규율	접촉선 교환	일반 분쟁해결절차 적용
한·ASEAN	SPS협정 준수 약속 동의 및 재확인	접촉선 지정, 작업반 설치	일반 분쟁해결절차 적용
한·인도	SPS협정상 권리와 의무 재확인	정보 교환, 국제표준 및 조화, 동등성, 공동작업반 설치	일반 분쟁해결절차 비적용(shall)

FTA	SPS협정과의 관계	의무와 이행	분쟁해결
한·EU	SPS협정상 권리와 의무 재확인	정보교환, 국제기준, SPS위원회	일반 분쟁해결절차 비적용(may)
한·페루	SPS협정상 권리와 의무 확인	동등성, 위험평가, SPS위원회	일반 분쟁해결절차 비적용(shall)
한·미국	SPS협정상 권리와 의무 확인	과학 및 위험평가, SPS위원회	일반 분쟁해결절차 비적용(may)

## 제 6 절 표준관련조치

### 1. 개 요

관세와 수량제한과 같은 전통적인 무역장벽이 무역자유화와 함께 철폐되거나 완화되자, 국가들은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비관세장벽을 도입하였는데, 여기에는 기술장벽, 통관절차,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환경조치 등이 포함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술장벽은 수입국에 불필요하게 엄격한 기술규격, 품질이나 공정과 제조방법에 관한 기술 규정,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표준이나 적합판정절차(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sup>80)</sup>를 통해 차별적 효력을 야기하였다.<sup>81)</sup> 이에

80) TBT협정 부속서 1에 의하면 적합판정절차란 “기술규정 또는 표준 관련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절차로서, 특히 표본추출, 시험 및 검사, 평가, 검증 및 적합보증, 등록, 인증과 승인, 그리고 이들의 결합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를 한·칠레 FTA에서는 ‘적합성평가 절차’로,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적합성평가 제도’로, 한·ASEAN FTA에서는 ‘적합성판정 절차’로 다양하게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81)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앞의 책, 238쪽.

따라 WTO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이하 ‘TBT협정’)’을 채택하여 강제적인 기술규정이거나 자발적인 표준 및 적합판정절차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거나 무역을 방해하는 목적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나 인간의 건강 또는 안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환경의 보호와 같은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회원국의 권리는 인정하고 있다.<sup>82)</sup>

## 2. FTA 규정의 비교분석

### (1) 한·칠레 FTA

한·칠레 FTA는 제9장에 표준관련조치(Standards-Related Measures)라는 제목으로 기술장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9.3조에 의하면 동 챕터는 상품무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준관련조치에 대해 적용되며, 제8장의 SPS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제9.4조에 의해 각 당사국은 표준관련조치를 준비, 채택, 적용 또는 유지할 수 있으며, 이 때 동 조치는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부여하여야 하며, 양 당사국간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야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5조와 제9.6조에서는 각각 양립성과 적합판정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즉 당사국들은 표준관련조치를 조화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적합판정절차에 대한 동등성을 인정하며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을 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제9.8조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표준관련조치 목록을 작성하며, 제9.10조에 따라 표준관련조치위원회(Committee on Standards-Related Measures)를 설립하여 동 챕터의 이행, 시행 및 운영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

82)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위의 책, 238쪽.

## (2) 한·싱가포르 FTA

한·싱가포르 FTA는 제8장에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상호인정(Technical Barriers to Trade and Mutual Recognition)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8.1조에 따르면 동 챗터는 TBT협정의 완전한 이행과 당사국의 표준·기술규정 및 적합판정절차에 대한 상호이해 및 협력증진을 통한 무역증대와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제8.2조에 의해 동 챗터는 상품무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준·기술규정 및 적합판정절차 및/또는 제조업자 또는 제조공정의 평가’에 대해 적용되며, 제7장의 SPS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제8.5조에 따르면 양 당사국은 상대국의 적합판정기관이 수행하는 판정 결과를 수락하여야 하며, 제8.6조에서는 자국의 지정된 적합판정기관의 기술 역량 및 관련 규정상의 요건 준수를 타방 당사국에게 입증하기 위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필수이익 또는 공공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비밀을 유지할 수 있다. 동 챗터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TBT공동위원회(TBT Joint Committee)를 설립하며,<sup>83)</sup> 각 당사국은 여전히 자국법에 따라 자기의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이행할 권한을 보유한다.<sup>84)</sup>

## (3) 한·EFTA FTA

한·EFTA FTA는 제2장 상품무역 중 제2.8조에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s)을 두고 있는데, 동 조항에 의하면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에 관한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는 TBT협정에 의해 규율되고, TBT협정은 동 협정에 수용되어 일부가 된다. 또한 당사국들은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 분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시장 접근을 촉진하며,

83) 한·싱가포르 FTA 제8.7조 제1항.

84) 한·싱가포르 FTA 제8.8조 제1항.

동 협정 발효일 이후 3년 이내에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에서 적합성평가의 결과에 대한 수용에 관하여 진전사항을 평가하고 추가조치에 합의한다.

#### (4) 한·ASEAN FTA

한·ASEAN FTA 기본협정 제14조(Standards and Conformity Assessment and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제1항에 의하면, 무역의 촉진에 있어서의 산업, 농업 및 작물에 대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판정 절차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상호 협력해야 한다.

이어 상품무역협정 제7조에 의하면, 당사국들은 TBT협정 등에 따른 WTO 원칙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기로 한 약속에 관하여 동의하고 재확인한다. 그리고 제8조 제4항에서 이행위원회(Implementing Committee) 산하에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과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작업반(working group on TBT and SPS)’을 설치하여 동 조항의 이행 및 무역 증진과 상호 협력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다.

#### (5) 한·인도 CEPA

한·인도 CEPA는 제2장 상품무역 중 제2.28조(Technical Regulations and SPS Measures)에 기술규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먼저 제1항에 의하면 각 당사국은 TBT협정상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한다. 제2항에서는 당사국은 양자간 교역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보 교환·양자협 의 및 상호협력을 위하여 인간, 동물 그리고 식물의 생명 혹은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당사국의 합법적인 권리를 존중하면서, 양 당사국의 기술규정·표준 및 적합판정절차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공동작업반(Joint Working Group)을 설치하여 관련 문제를 다루도록 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대한 어떠한 분쟁도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동 협정의 일반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6) 한·EU FTA

한·EU FTA는 제4장에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4.1조에 의하면 양 당사자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동 협정에 수용되어 일부가 되는 TBT협정상의 기존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3조에서는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판정 절차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4.10조에 의해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TBT Co-ordinators)를 지정하여 동 챕터의 이행 및 운영을 점검하도록 하며, 부속서 4에 의해 위의 조정자는 한국의 경우 기술표준원(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또는 그 승계기관이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 (7) 한·페루 FTA

한·페루 FTA는 제7장에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7.1조에 의하면 동 챕터는 TBT협정의 이행을 개선하고,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판정절차가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며 양 당사국간 공동협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2조에 의해 양 당사국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동 협정에 수용되어 일부가 되는 TBT협정상의 기존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며, 제7.7조에서는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보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7.9조에 의해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Committee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를 설치하여 동 챕터의 이행, 집행 및 운영을 점검하도록 하였다.

### (8) 한·미 FTA

한·미 FTA는 제9장에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9.1조에 의하면 양 당사국이 TBT협정상의 기존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9.6조에서는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보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9.8조에 의해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Committee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를 설치하여 동 챕터의 이행 및 운영을 점검하도록 하였다.

## 3. 소 결

이상으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즉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판정절차에 대한 8개 협정문의 주요 규정을 살펴보았다. 동 챕터 역시 WTO의 관련 협정에 대한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체로 TBT협정의 이행이나 TBT협정상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모든 FTA에서 표준관련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위원회, 작업반, 조정자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한편, 한·인도 CEPA에서만 표준관련조치에 관한 분쟁에서 FTA의 일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과 관련하여서는 WTO의 관련협정을 인용하는 방식이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와는 구별되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의 경향은 TBT협정을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해당 FTA의 일부로 수용하고 TBT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는 식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어 TBT협정의 규범을 초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표 12 〉 FTA별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비교

FTA	TBT협정과 관계	권리와 의무	이행
한·칠레	WTO협정 플러스 방식, SPS조치 미적용	무역장애가 되지 않는 표준관련조치 채택할 권리, 내국민 및 최혜국대우, 국제표준, 양립성, 적합판정절차, 인증절차, 투명성	표준관련 조치위원회
한·싱가포르	TBT협정의 완전한 이행, SPS조치 미적용	적합판정절차, 국제표준	TBT 공동위원회
한·EFTA	동 협정에 수용되어 일부가 된 TBT협정에 의해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 규율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공동위원회
한·ASEAN	TBT협정 준수 약속 동의 및 재확인	투명성, 통고 절차	작업반
한·인도	TBT협정상 권리와 의무 재확인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판정절차에 대한 정보 교환, 일반 분쟁해결절차 비적용(shall)	공동작업반
한·EU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동 협정에 수용되어 일부가 된 TBT협정상 권리와 의무 확인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판정절차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TBT조정자

FTA	TBT협정과 관계	권리와 의무	이행
한·페루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동 협정에 수용되어 일부가 된 TBT협정상 권리와 의무 확인, SPS조치와 정부조달 미적용	표준관련조치가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보장, 공동 협력	TBT위원회
한·미국	TBT협정상 권리와 의무 확인	공동 협력, 투명성, 정보 교환	TBT위원회

### 제 7 절 평가 및 소결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8개의 FTA 협정문에 규정된 상품 무역과 관련된 조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즉,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와 관세양허 및 비관세조치, 원산지규정과 통관절차, 무역구제제도,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및 표준관련조치에 대한 각 챕터의 주요규정을 차례로 검토하였다.

먼저 내국민대우와 시장접근과 관련하여 각각 GATT 제III조와 제XI조를 해당 FTA의 일부로서 이에 따라 내국민대우를 부여하거나 비관세 조치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는 다소 간단한 형식으로 GATT 제III조에 합치되도록 내국민대우를 부여하거나 비관세장벽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반면, 한·EU FTA 이후 점차 일관된 형식으로 규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즉 각각 GATT 제III조와 제XI조에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FTA의 일부로 인정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한편, 관세 양허와 관련하여서는 모든 FTA에서

양허표(또는 관세철폐계획)에 따라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하며, 이의 가속화 및 확대 가능성에 대해 추후 협의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원산지규정 및 통관절차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FTA는 각각 그 유형과 기준에 차이가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앞에서 소결과 도표를 통해 비교하여 보았다. 그 중에서 NAFTA 방식, Pan European 방식 및 ASEAN 방식으로 구별되는 원산지규정은 체결 상대국과의 협상을 통해 달라진다.

관세나 수출입제한과 같은 무역제한조치 이외에도 덤핑이나 보조금과 같은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통해서도 무역장벽을 형성할 수가 있는데, 이에 관한 대응체제로 무역구제제도가 발전하게 되었다. 각 FTA에도 무역구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대체로 WTO의 관련 협정에 따른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반덤핑과 관련하여 제로잉 금지를 의무화하고 최소부과원칙을 법적 의무로 부과하는 등 WTO의 반덤핑협정보다 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와 관련하여 모든 FTA가 관련 WTO 협정인 SPS협정을 인용하고 있는데, 대체로 SPS협정상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해당 사안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한·인도 CEPA 이후로는 FTA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문제는 다자무역체제인 WTO의 분쟁해결기구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인 표준관련조치와 관련하여서도 모든 FTA가 관련 WTO협정인 TBT협정을 언급하고 있는데, 보통 TBT협정상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한다거나, TBT협정이 그 자체로 또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해당 FTA의 일부가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 본 상품무역에 관한 FTA 규정은 양 당사국의 협상 내용에 따라 구체적 모습은 다르지만, 대체로 관련 WTO협정이나 GATT

규정을 인용하고 있거나 이보다 강화되고 발전된 형식을 보여 줌으로써 결국 FTA가 ‘WTO 플러스 방식’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무역구제제도와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등의 경우 FTA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 대신 WTO의 절차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FTA가 여전히 다자주의를 근간으로 한 WTO체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 제 4 장 FTA의 서비스무역과 투자 및 지식재산권 규정에 대한 비교분석과 평가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협상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서비스무역과 투자, 지식재산권에 관한 규정과 함께, WTO에서는 아직 논의 중에 있거나 일부 국가만이 참여하고 있는 경쟁정책과 정부조달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제 1 절 국경간 서비스무역

#### 1. 개 요

WTO체제의 커다란 업적 중의 하나는 상품무역 이외에 서비스무역과 관련하여 별도의 협정, 즉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을 채택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GATS에는 서비스에 관한 정의규정이 없지만, 보통 무역의 관점에서 서비스란 “통신, 은행, 보험, 육상 및 해상운송, 항공, 회계, 법률, 엔지니어링, 엔터테인먼트 등과 같은 핵심적인 경제활동들을 포함하며, 제품 또는 다른 서비스의 일부분으로 생산되는 것”으로 정의된다.<sup>85)</sup> 어쨌든 이러한 서비스무역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서비스무역을 자유화하는 국제규범의 필요성이 증대하였으며, 이를 위해 GATS가 체결되기에 이른 것이다.<sup>86)</sup>

한편, 서비스를 자유화하는 방식은 ‘포지티브 방식(positive list approach)’과 ‘네거티브 방식(negative list approach)’으로 구분되는데, 포지티브 방식이란 당사국이 양허하여 기재한 분야에 한하여 개방하는 것으로 기재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자유화 의무가 없는 방식을 말하며, 네거티브

85)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앞의 책, 435-436쪽.

86)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위의 책, 438쪽.

방식이란 당사국이 유보한다고 기재한 분야(비합치조치 목록)에 한하여 자유화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방되지 않은 분야는 ‘현재유보’나 ‘미래유보’ 목록에 별도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현재유보’란 협정상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현존 조치를 규정한 목록으로 현재보다 개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뒤로 후퇴하지는 못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을 뜻하며, ‘미래유보’란 협정상 의무에 대한 현존 비합치조치나 전혀 새로운 제한조치가 채택될 수 있는 분야를 규정한 목록(즉, FTA 상 개방되지 않은 분야에 대한 목록)을 뜻한다. 또한 현재유보 방식은 ‘ratchet mechanism(자유화수준 후퇴 금지 메커니즘)’과 ‘standstill(최저 자유화수준 보장)’로 나누어지는데, ratchet mechanism은 해당 개정조치를 기준으로 이보다 자유화를 후퇴시켜 개정하지는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고, standstill은 FTA의 발효 시점을 기준으로 보다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다.<sup>87)</sup>

아래에서는 FTA에 규정되어 있는 국경간 서비스무역에 관한 규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2. FTA 규정의 비교분석

### (1) 한·칠레 F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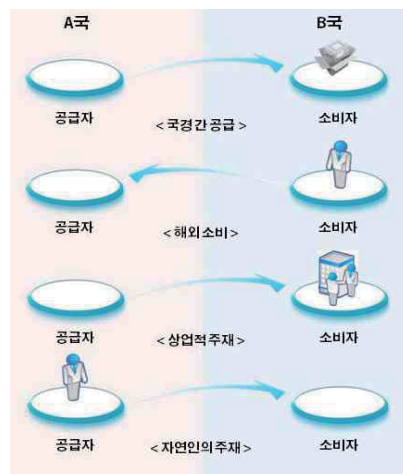
한·칠레 FTA는 제11장에서 ‘국경간 서비스무역(Cross-Border Trade in Services)’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11.1조에 의하면 국경간 서비스 공급 또는 국경간 서비스 무역이란 일방 당사국의 영역에서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 공급되는 서비스(소위 ‘국경간 공급’), 일방 당사국의 영역 내의 사인으로부터 타방 당사국의 사인에게로 공급되는 서비스(소위 서비스 소비자의 ‘해외소비’) 및 타방 당사국의 영역

87) 정세희, “FTA와 법제 실무”, 『법제』, 2012년 6월, 26-29쪽;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앞의 책, 467-468쪽.



내에서 일방 당사국의 국적민이 공급하는 서비스(소위 ‘자연인의 주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즉 GATS 제I조에 정의되어 있는 네 가지 서비스 공급유형 중, 외국 서비스 공급자의 ‘상업적 주재’를 제외한 세 가지 유형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 그림 2 〉 서비스 공급유형



출처: 무역투자연구원 홈페이지.<sup>88)</sup>

제11.3조에서는 타방 당사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내국민대우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1.6조에서는 동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일부 분야에 있어서의 수량제한을 부속서 III 수량규제(Quantitative Restrictions: Chapter 11)의 양허표에 규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제11.5조에서는 내국민대우가 부속서 II 장래조치를 위한 유보(Reservations for Future Measures: Chapters 10 and 11)의 양허표에 규정되어 있는 분야에 대해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7조에서는 자유무역위원회(Free Trade Commission)의 협상을 통한 향후 지속적인 자유화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88) [http://www.iti.re.kr/board/ezboard.exe?db=kboard&action=down&dbf=337&ftype=file&file=KORUS\\_0403.pdf](http://www.iti.re.kr/board/ezboard.exe?db=kboard&action=down&dbf=337&ftype=file&file=KORUS_0403.pdf).

## (2) 한·싱가포르 FTA

한·싱가포르 FTA는 제9장에서 국경간 서비스무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9.1조에 의하면 국경간 서비스 공급이란 위의 한·칠레 FTA 제11.1조와 마찬가지로 서비스 공급유형 중 ‘상업적 주재’(제10장의 투자 부분은 적용됨)를 제외한 3개의 유형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9.3조는 타방 당사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내국민대우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9.4조는 국경간 서비스 공급의 요건으로 현지 주재를 요구하지 않으며, 제9.5조는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9.6조에 의해 내국민대우, 현지 주재 및 시장접근이 적용되지 않는 소위 불합치조치(Non-Conforming Measures)는 부속서 9A 현재조치 및 자유화약속에 대한 유보(Reservation for Existing Measures and Liberalization Commitments)와 9B 미래조치에 대한 유보(Reservations for Future Measures)의 양허표에 규정된 경우 협정상 의무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9.8조에 의해 장래 협상을 통하여 자유화를 보다 심화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9.11조에서는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규제(domestic regulation)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하게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제9.14조에서는 부속서 9A와 9B의 유보를 수정 및 추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한·EFTA FTA

한·EFTA FTA는 제3장에서 서비스무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3.1조에 의하면 동 챕터는 제4.1조(금융서비스)에 규정된 분야, 항공운송서비스 및 제6장의 정부조달에 관한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 분야의 조치에 적용된다.

제3.4조 내지 제3.8조는 각각 최혜국대우,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추가적 약속 및 국내규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규정은 동 챕터에 수용되어 일부가 된 GATS의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3.15조는 예외규정을 기술하고 있는데, 일반 및 안보 예외 역시 동 챕터에 수용되어 일부가 된 GATS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3.16조에 의하면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구체적 약속을 부속서 VII 제3.16조 제3항에 규정된 구체적 약속의 양허표(Referred to in Paragraph 3 of Article 3.16 Schedules of Specific Commitments)<sup>89)</sup>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 양허표에 의하면 ‘자연인의 주재’에 대해서는 양허하고 있지 않으며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GATS 부속서’에 의하여 규율되도록 한다. 또한 제3.17조에서는 무역에 불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허표의 수정 또는 철회를 규정하고 있다.

#### (4) 한·ASEAN FTA

한·ASEAN FTA 기본협정 제2.2조에 의하면, 당사국들은 GATS 제 V조와 합치되게 상당한 분야별 대상범위에서 당사국들간 서비스무역을 점진적으로 자유화하며 이를 위해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 한·ASEAN FTA는 별도로 서비스무역협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동 협정 제2조에 의하면 당해 서비스무역협정은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의 조치에 대해 적용된다. 서비스무역협정은 GATS와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제6조에서는 국내규제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하게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제13조와 제14조는 각각 일반예외와 안보예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9조 내지 제21조는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및 추가적 약속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22조에서는 이들 규정에 따른 구체적 약속을 양허표<sup>90)</sup>에 명시하도록 하였다.

89) 한·EFTA FTA 제3.20조에 의해 동 부속서는 동 챕터의 통합된 일부를 구성한다.

90) 동조 제3항에 의하여, 양허표는 동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24조에서는 당사국들간의 서비스무역의 점진적 자유화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5조에서는 양허표 상의 약속을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리고 제29조에 의해 동 협정의 해석, 이행 또는 적용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분쟁해결제도협정에 규정된 절차와 제도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 (5) 한·인도 CEPA

한·인도 CEPA는 제6장에서 서비스무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6.4조 내지 제6.6조는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및 추가적 약속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6.7조에서는 구체적 약속이 행하여진 분야에서 국내규제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하게 시행하도록 보장할 의무를 부여한다. 제6.14조와 제6.15조는 각각 일반예외와 안보예외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6.17조에서는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국이 행한 구체적 약속을 양허표에 규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6.18조에서는 양허표 상의 약속을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sup>91)</sup> 제6.19조에서는 당사국들간의 서비스무역의 점진적 자유화를 규정하고 있다.

#### (6) 한·EU FTA

한·EU FTA는 제7장에서 서비스무역·설립<sup>92)</sup> 및 전자상거래(Trade in Services, Establishment and Electronic Commerce)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7.3조에 의하면 동 챕터의 이행을 감독 및 평가하기 위해 ‘서비스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 위원회(Committee on Trade in Services,

91) 참고로 우리나라는 총 10개 분야 104개 영역을, 인도는 총 11개 분야 81개 영역을 개방하였다.

92) 동 협정 제7.9조에 의하면, ‘설립’이란 “경제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당사자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법인의 구성, 인수 또는 유지, 또는 지점이나 대표사무소의 설치 또는 유지”를 말한다.

Establishment and Electronic Commerce)’를 설립하여야 한다. 제7.4조 제3항에 의해 동 협정상 국경간 서비스 공급은 국경간 공급과 자연인의 주재로 정의되며, 제7.5조와 제7.6조에서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7.8조는 최혜국대우를, 제7.23조에서는 국내규제를 규율하고 있으며, 동 챕터에서는 컴퓨터 서비스, 우편 및 통신 서비스, 금융서비스, 국제해상운송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sup>93)</sup>

#### (7) 한·페루 FTA

한·페루 FTA는 제10장에서 국경간 서비스무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10.13조에 의하면 상업적 주재를 제외한 세 가지 유형의 서비스 공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10.2조 내지 제10.5조는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시장접근 및 현지주재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10.6조에서는 위의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 비합치조치를, 제10.8조에서는 국내규제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또한 부속서 10A에 전문직 서비스의 상호인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8) 한·미 FTA

한·미 FTA는 제12장에서 국경간 서비스무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12.13조에 의하면 상업적 주재를 제외한 세 가지 유형의 서비스 공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12.2조 내지 제12.5조는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시장접근 및 현지주재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12.6조에서는 위의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 비합치조치를, 제12.7조에서는 국내규제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또한 제12.12조에서는 부속서 12-B와

93) 한·EU FTA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특징에 관해서는 김대원, “EU FTA 접근방식과 한-EU FTA 평가 -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분야를 중심으로 -”, 『국제경제법연구』 제8권 제2호, 2010, 11-12쪽 참조.

부속서 12-C에 특급배달서비스 공급 및 지역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비합치조치에 관한 협의에 대한 구체적 약속이 기재되어 있음을 언급하며, 부속서 12-A는 전문직 서비스의 상호인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3. 소 결

이상으로 국경간 서비스무역에 대한 8개 협정문의 주요 규정을 살펴해보았다. 각 FTA는 서비스무역의 정의를 결정함에 있어 ‘상업적 주재’의 포함 여부에 따라 구분이 되며, 일부 FTA에서 GATS의 규정을 적용하거나 합치되도록 자유화할 의무를 규정한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다. 서비스무역의 자유화와 관련해, 대부분의 FTA가 내국민대우와 계속적인 자유화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에 대한 유보는 부속서에 따로 기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비교적 최근에 채택된 한·미 FTA와 한·페루 FTA는 GATS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 의무를 규율하고 있는 조항의 경우 대체로 GATS의 규정과 큰 차이 없이 유사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EU FTA를 포함한 최신 FTA의 경우 서비스무역의 자유화와 관련하여 GATS 플러스 방식을 채택하여 WTO보다 무역자유화가 진척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표 13 〉 FTA별 서비스무역 비교

FTA	서비스무역의 정의	GATS와의 관계	각종 의무
한·칠레	‘상업적 주재’ 제외한 세 유형	관련 규정 없음	내국민대우, 유보, 수량제한, 향후 자유화
한·싱가포르	‘상업적 주재’ 제외한 세 유형	관련 규정 없음	내국민대우, 불합치조치, 추가 약속, 미래 자유화, 국내규제

FTA	서비스무역의 정의	GATS와의 관계	각종 의무
한·EFTA	네 가지 유형 모두 포함	일부 규정은 동 협정에 통합되어 일부가 된 GATS가 적용(예외규정 포함)	최혜국대우,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추가 약속, 국내규제, 투명성
한·ASEAN	네 가지 유형 모두 포함	GATS와 합치되게 자유화	투명성, 국내규제, 일반예외와 안보예외, 협력,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추가 약속, 점진적 자유화
한·인도	네 가지 유형 모두 포함	관련 규정 없음	최혜국대우,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추가 약속, 국내규제, 일반예외와 안보예외, 점진적 자유화, 투명성
한·EU	‘국경간 공급’과 ‘자연인의 주재’	GATS상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 재확인	서비스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위원회,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투명성, 국내규제
한·페루	‘상업적 주재’ 제외한 세 유형	관련 규정 없음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시장접근, 비합치조치, 국내규제
한·미국	‘상업적 주재’ 제외한 세 유형	관련 규정 없음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시장접근, 비합치조치, 국내규제, 투명성, 구체적인 약속

## 제 2 절 투 자

### 1. 개 요

WTO협정에서 다루지 못하고 도하라운드 협상의제로 미루어졌던 투자 부문은 대부분의 FTA에 별도의 챕터로 규정되며, 특히 ISD(Investor-State Disputes) 절차와 관련하여 여러모로 주된 관심과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sup>94)</sup> 한편 FTA의 투자 챕터는 투자자 또는 투자유치국의 입장에서 안심하고 투자를 진행하고 유치하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로서 기능한다.<sup>95)</sup>

### 2. FTA 규정의 비교분석

#### (1) 한·칠레 FTA

한·칠레 FTA는 제10장에서 투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설립 전 투자에 대해서는 내국민대우, 이행요건(performance requirements) 부과 금지,<sup>96)</sup> 국적의무 부과금지를 규정하여 양국간 투자 자유화를 증진하고,

94) ISD 절차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성봉·김관호·이준규·현혜정, 한·미 FTA 투자분야 주요 쟁점이슈와 평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강준하, “한-미 FTA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S)”, 『국제거래법연구』 제18집 제2호, 2009; 김재성·홍선희, “한미 FTA 협정에서 분쟁해결을 위한 ISD제도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3권 제1호, 2012; 오현석, “한미 FTA 투자자-국가 중재의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안암법학』 제37권, 2012; 왕상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의 오해와 진실”, 『기업법연구』 제25권 제4호, 2011; 최승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공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공법연구』 제36집 제3호, 2008 참조.

95) 최태관, “FTA 투자협정과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7권 제2호, 2007, 147쪽; 김인숙·손희두, 한·미 FTA 투자협상에 따른 국내법제의 정비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7, 26쪽.

96) 보통 투자관련 협정은 체약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부당한 이행요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행요건’이란 투자허용 내지 국내사업진출의 반대급부로 투자유치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구체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 요건을 부과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이행요건은 보호주의 성격으로 자유경쟁과 투자의



회사 설립 후 투자에 대해서는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이행요건 부과금비, 국적의무 부과금지,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여 투자자의 보호를 위한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있다.<sup>97)</sup>

제10.1조에 따르면 투자란 직접 및 간접투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제10.5조에서는 대우의 최소기준(Minimum Standard of Treatment)으로 외국인 대우에 관한 국제관습법상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fair and equitable treatment)’와 ‘완전한 보호와 안전(full protection and security)’을 부여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또한 제10.11조에 의해 투자보호를 위해 송금 및 국제지불이 자유롭고 지체없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해야 하며, 제10.13조 제1항에 의해 공공목적을 위해 비차별원칙에 기초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시장가격에 상응하게 지체없이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를 직간접적으로 국유화하거나 수용할 수 없다.<sup>98)</sup> 제10.16조 제1항에 따르면, 동 챕터와 이 협정의 다른 챕터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 불합치되는 범위 내에서 다른 챕터가 우선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0.19조 내지 제10.42조는 ISD절차에 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분쟁 당사자는 우선 협의나 협상을 통한 해결을 시도하고(should attempt), 청구를 야기한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중재(arbitration)에 들어갈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동 협정 및 적용가능한 국제법 원칙(applicable rules of international law)에 따라 준거법(governing law)<sup>99)</sup>을 결정해야 하며,<sup>100)</sup> 중재판정부에 의해 내려진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금지된다.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앞의 책, 662쪽; 한·칠레 FTA 제10.7조 참조.

97) 정인교, 한·칠레 FTA의 주요 내용,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42쪽.

98) 외국인 재산의 수용과 관련한 국제규범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유희진, “국제투자협정에서의 수용”, 『국제경제법연구』 제9권 제2호, 2011, 1-30쪽 참조.

99) ‘준거법(applicable law, governing law)’이란 당사자들 사이의 권리·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법을 말한다; 준거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영석, “국제상사중재의 준거법 - 법규범(rules of law)을 준거법으로 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 『국제사법연구』 제16호, 2010. 12, 41-59쪽 참조; 한편, 동 협정의 국문본에서는 이를 ‘관할법’으로 잘못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100) 한·칠레 FTA 제10.35조 제1항.

판정(award)은 분쟁 당사자들간 및 당해 사안에 대해여만 구속력을 가진다.<sup>101)</sup> 또한 제10.43조에 의해 양 당사국은 ‘투자 및 국경간 서비스무역위원회(Investment and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Committee)’를 설치하여 투자 및 서비스무역 챕터의 시행 및 운영 감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 (2) 한 · 싱가포르 FTA

한 · 싱가포르 FTA는 제10장에서 투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상대국의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해 내국민대우(제10.4조), 이행요건 부과 금지(제10.7조), 고위경영자에 대한 국적의무 부과금지(제10.8조), 분쟁 해결절차(제10.19조) 등을 규정하여 투자 자유화 및 투자 보호 메커니즘을 유지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 본 한 · 칠레 FTA와 마찬가지로 대우의 최소기준(제10.5조), 송금 및 국제지불(제10.11조), 수용 및 보상(제10.13조)과 ISD 절차(제10.19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외에도 제10.9조에서는 내국민대우, 이행요건 부과금지와 고위경영자에 대한 국적의무 부과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불합치조치를 부속서에 규정하여 해당 의무의 면제를 허용하며, 제10.14조에서는 전쟁 또는 그 밖의 무력충돌 등이 아닌 재산의 징발 또는 파괴로 인해 투자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3) 한 · EFTA FTA

한 · EFTA FTA 제1.4조에 의하면, 투자와 관련하여서는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 · 리히텐슈타인 및 스위스 간에 체결된 투자협정(Agreement on Invest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Iceland,

---

101) 한 · 칠레 FTA 제10.40조 제1항.

the Principality of Liechtenstein and the Swiss Confederation)<sup>102)</sup>을 참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투자협정은 한·칠레 FTA 또는 한·싱가포르 FTA의 투자 챕터와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제3조에 의하면 각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완전한 보호 및 안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4조는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제5조는 국제송금, 제13조는 수용 및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유화 또는 수용이 허용되는 경우로서 공공목적을 위해 비차별을 기초로 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보상(prompt, effective and adequate compensation)”<sup>103)</sup>이 제공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또한 제12조에서는 내국민대우가 적용되지 않는 부속서<sup>104)</sup>상의 유보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제16조는 ISD절차를, 제17조는 금융서비스에서의 ISD절차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즉 금융서비스 소위원회(Sub-Committee on Financial Services)에 먼저 회부하고, 결정이 나지 않는 경우 패널을 설치하기로 규정하였으며, 제18조에 의해 당사국간의 분쟁은 한·EFTA FTA 제9장의 일반 분쟁해결절차가 적용된다. 제20조에서는 공중도덕 또는 공공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및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또는 환경보호조치 등을 위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21조에서는 동 투자협정상 위원회(Committee)를 설치하여 동 협정의 이행 및 감독과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해결 노력을 수행하게 하였다.

102) 한·EFTA FTA 제1.4조 제2문에 의해 이들 투자협정은 FTA 협정문의 일부를 구성한다.

103) 수용에 대한 보상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동 규정을 보통 ‘Hull 공식’이라고 부른다.

104) 부속서 I 제12조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유보, 부속서 II 제12조에 규정된 아이슬란드의 유보, 부속서 III 제12조에 규정된 리히텐슈타인의 유보, 부속서 IV 제12조에 규정된 스위스의 유보, 부속서 V 제12조에 규정된 모든 EFTA 당사국의 유보 참조.

#### (4) 한·ASEAN FTA

한·ASEAN FTA 기본협정 제2.3조에 의하면, 당사국들은 투자제도의 점진적인 자유화, 투자 협력의 강화와 투자 촉진, 투자 보호를 지향하며, 2006년 12월 31일 이전 종료를 목적으로 이에 관한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 한·ASEAN FTA는 별도로 투자협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동 협정 제3조, 제4조와 제6조는 각각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와 이행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제5조는 투자의 일반적 대우(General Treatment of Investment)라는 제목으로 투자에 대해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완전한 보호 및 안전을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에서는 고위경영진에 대한 국적의무 부과금지를 다루고 있다. 또한 제9조에서는 제3, 4, 7조(라오인민민주공화국의 경우 제6조도 포함)가 적용되지 않는 유보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위의 FTA와 마찬가지로 국제송금, ISD절차, 예외규정 등을 두고 있다. 특이하게 제21조에서는 안보 예외 조항을 두고 있으며, 제27조에서는 논의가 필요한 작업계획(Work Programme)의 목록을 마련하고 있다.

#### (5) 한·인도 CEPA

한·인도 CEPA는 제10장에서 투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위의 FTA와 마찬가지로 내국민대우(제10.3조), 이행요건 부과금지(제10.5조), 고위경영진에 대한 국적의무 부과금지(제10.6조)와 이들이 적용되지 않는 비합치조치<sup>105)</sup>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우의 최소기준, 국제송금, 수용 및 보상, 예외조항과 ISD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부속서 10-A 수용(Expropriation)을 통해 직접수용과 간접수용<sup>106)</sup>을 설명하고

105) 부속서 I, II에 우리나라와 인도의 해당 유보목록이 기재되어 있다. 양국은 네거티브 방식의 유보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총 40개(현재유보 11개, 미래유보 29개), 인도는 총 42개(현재유보 20개, 미래유보 22개) 유보안에 합의하였다.

106) 동 협정상 '간접수용'이란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 없이 직접수용과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경우를 말한다.

있는데, 당사국의 조치 또는 일련의 조치가 그 목적 또는 효과에 비추어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때와 같은 드문 상황을 제외하고, 공중보건·안전·환경 및 부동산 가격안정화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위한 당사국의 비차별적인 규제조치는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6) 한·EU FTA

한·EU FTA는 다른 FTA와는 달리, 투자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동 협정이 가서명된 2009년 10월 15일 이전, 즉 리스본조약의 발효일인 2009년 12월 1일 이전까지만 해도 EU법상 ‘투자’에 관한 정책은 각 회원국들의 배타적 권한(exclusive competence)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는 EU기능조약 제207조 제1항에 의해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는 EU의 배타적 권한에 속하는 공동통상정책(common commercial policy)의 일부가 되었다.

#### (7) 한·페루 FTA

한·페루 FTA는 제9장에서 투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다른 FTA와 마찬가지로 내국민대우(제9.3조), 최혜국대우(제9.4조), 대우의 최소기준(제9.5조), 고위경영진에 대한 국적의무 부과금지(제9.6조) 및 이행요건 부과금지(제9.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9.8조에서는 제9.3조, 제9.4조, 제9.6조 및 제9.7조가 적용되지 않는 비합치조치를 언급하고 있으며, 이는 부속서 I, II의 유보목록에 규정되어 있다. 제9.12조는 수용에 관한 조항으로 역시 예외적 경우를 언급하고 있으며, 제9.16조와 제9.17조는 ISD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9.16조 제4항<sup>107)</sup>은 소위 ‘Fork in the road’ 조항으로 ISD절차에서 외국인투자자가 일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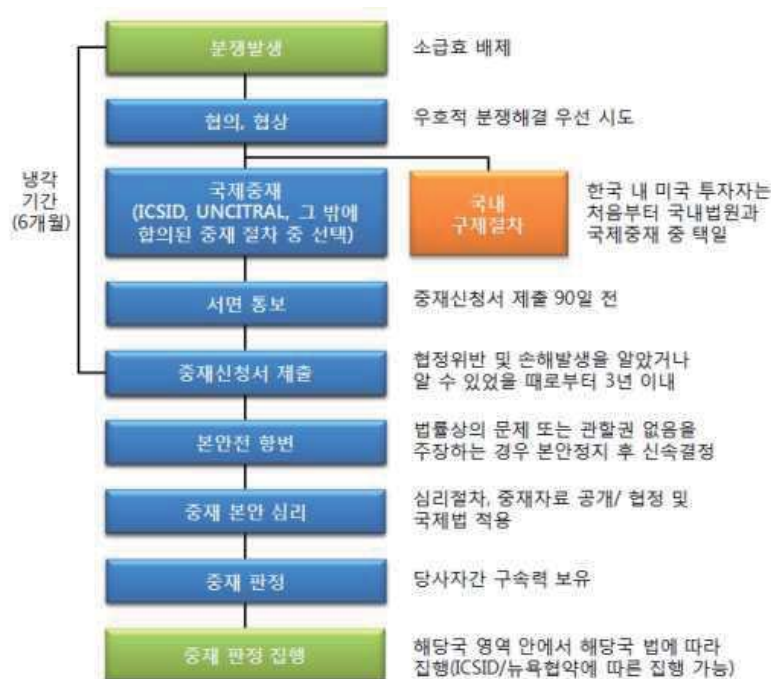
107) “일단, 투자자가 분쟁 당사국의 법원이나 행정법원 또는 제3항에 규정된 어떠한 중재 체계에 분쟁을 회부하였으면, 그 절차의 선택은 최종적이고 배타적이다.”

국내법원 또는 국제중재절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소를 제기하면 다른 나머지 절차에서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절차적 낭비를 방지하고 투자자에게 이중의 보호를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채택되고 있다.<sup>108)</sup>

또한 한·인도 CEPA와 마찬가지로 부속서 9B 수용을 통해 직간접 수용을 확인하고 있다. 다만,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는 “정당한 공공 복지 목적”이 한정적이지 않음을 각주에서 밝히고 있다.

(8) 한·미 FTA

〈그림 3〉 ISD절차 개요도



출처: 외교통상부, ISD 공정한 글로벌 스탠다드, 2011. 11, 3쪽.

108) 외교통상부, 한·페루 FTA 상세설명자료, 2011, 48쪽; 또한 동 절차는 한·칠레 FTA 제10.25조 제3항, 한·EFTA FTA 제16조 제4항, 한·ASEAN FTA 제18조 제5항, 한·인도 CEPA 제10.21조 제4항, 한·미 FTA 제11.18조 제2항 나호에도 규정되어 있다.

한·미 FTA는 제11장에서 투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다른 FTA와 마찬가지로 내국민대우(제11.3조), 최혜국대우(제11.4조), 대우의 최소기준(제11.5조), 이행요건 부과금지(제11.8조) 및 고위경영진에 대한 국적의무 부과금지(제11.9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1.12조에서는 제11.3조, 제11.4조, 제11.8조 및 제11.9조가 적용되지 않는 비합치조치를 언급하고 있으며, 이는 부속서 I, II의 유보목록에 규정되어 있다. 제11.6조는 수용 및 보상에 관한 조항으로 역시 예외적 경우를 언급하고 있으며, 제11.15조 내지 제11.27조는 ISD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페루 FTA와 마찬가지로 부속서 11-B 수용을 통해 직간접수용과 예시적 성격의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언급하고 있다.

### 3. 소 결

이상으로 한·EU FTA를 제외한 투자에 대한 7개 협정문의 주요 규정을 살펴보았다.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각 FTA에 규정된 투자에 관한 내용은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분쟁해결을 위해 모두 ISD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 동안 투자분쟁은 FTA 보다는 BIT의 규정을 둘러싸고 많이 제기되어 왔으며, ISD절차에 관한 중재기구의 해석과 비판적 논의 역시 BIT와 관련된 연구를 기초로 하여 검토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 표 14 〉 FTA별 투자 비교

FTA	각종 의무	분쟁해결절차
한·칠레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대우의 최소기준, 이행요건 부과금지, 국적의무 부과금지, 유보 및 예외, 수용 및 보상, 송금 및 국제지불, 환경조치, 투자및국경간서비스무역위원회	ISD절차

제 4 장 FTA의 서비스무역과 투자 및 지식재산권규정에 대한 비교분석과 평가

FTA	각종 의무	분쟁해결절차
한·싱가포르	내국민대우, 대우의 최소기준, 이행요건 부과 금지, 국적의무 부과금지, 비합치조치, 미래의 자유화, 송금, 수용 및 보상, 환경조치	ISD절차
한·EFTA	일반적 대우 및 보호,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송금, 보건·안전 및 환경조치, 투명성, 유보, 수용 및 보상, 예외, 위원회	ISD절차
한·ASEAN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일반적 대우, 이행요건 부과금지, 국적의무 부과금지, 투명성, 유보, 송금, 수용 및 보상, 일반예외와 안보예외, 미래 자유화	ISD절차
한·인도	내국민대우, 대우의 최소기준, 이행요건 부과 금지, 국적의무 부과금지, 투명성, 비합치조치, 유보, 송금, 수용 및 보상, 보건·안전 및 환경조치, 예외	ISD절차
한·EU	관련 규정 없음	관련 규정 없음
한·페루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대우의 최소기준, 이행요건 부과금지, 국적의무 부과금지, 비합치조치, 보건·안전 및 환경조치, 수용, 송금	ISD절차
한·미국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대우의 최소기준, 수용 및 보상, 송금, 이행요건 부과금지, 국적의무 부과금지, 환경조치, 비합치조치	ISD절차

한편, 서비스무역과 투자에 있어 자유화하는 방식은 다음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네거티브 방식과 포지티브 방식으로 나누어져 각 FTA별로 차이가 있는데, 실제 효과면에서는 비슷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표 15〉 FTA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방식 비교

FTA	자유화 방식
한·칠레	투자(제10장)와 서비스무역(제11장) 상의 의무가 면제되는 유보 목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 - 현재유보 목록에 대하여 ratchet mechanism 규정
한·싱가포르	서비스(제9장)와 투자(제10장) 상의 의무가 면제되는 유보 목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 다만, 금융(제12장)의 경우 포지티브 방식 채택 - 현재유보 목록에 대하여 ratchet mechanism 규정
한·EFTA	서비스(제3장)의 경우 개방분야를 규정하는 구체적 약속의 양허표를 부속서 VII에서 규정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 하였으나, - 투자의 경우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스위스와의 투자 협정(별도 협정문)에서 협정 상의 의무가 면제되는 현재 유보 목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현재유보사항에 대하여 ratchet mechanism 규정
한·ASEAN	서비스(서비스무역에 관한 별도 협정)의 경우 양허표에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 협정상 의무를 규정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하였으나, - 투자(투자에 관한 별도협정)의 경우 협정상 의무가 면제되는 유보 목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현재 유보사항에 대하여 standstill 규정
한·인도	서비스(제6장)의 경우 개방할 영역을 양허표에 명시하는 포지티브 방식 채택, - 그러나 투자(제10장)의 경우 협정상 의무가 면제되는 목록을 명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현재유보 사항에 대하여 ratchet mechanism 규정
한·EU	서비스 및 투자(제7장)에 대하여 개방할 영역을 양허표에 명시하는 포지티브 방식 채택 - 구체적 약속사항에 대한 standstill 규정

FTA	자유화 방식
한·페루	투자(제9장) 및 서비스(제10장) 상의 의무가 면제되는 유보 목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 - 현재유보 목록에 대하여 ratchet mechanism 규정
한·미국	투자(제11장) 및 서비스(제12장) 상의 의무가 면제되는 유보 목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 - 현재유보 목록에 대하여 ratchet mechanism 규정

출처: 정세희, “FTA와 법제 실무”, 『법제』, 2012년 6월, 29-30쪽.

### 제 3 절 경쟁정책

#### 1. 개 요

2004년 WTO에서 ‘무역과 경쟁정책’에 관한 논의는 폐기되었지만, 이러한 논의는 국내경쟁법을 조화시켜 시장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국제무역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FTA에는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sup>109)</sup> FTA에서는 경쟁정책에 관한 별도의 챕터를 통해, 각 당사국의 반경쟁적 영업행위(anti-competitive business conduct)<sup>110)</sup>를 금지함으로써 자국 시장에서의 경쟁과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경쟁법을 유지하거나 채택하며, 경제적 효율성 및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 반경쟁적 영업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sup>111)</sup>

109)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앞의 책, 765, 766쪽.

110) ‘anti-competitive business conduct’를 FTA의 국문본에서는 ‘반경쟁적 기업활동’ 또는 ‘반경쟁적 기업행위’로 번역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111) 한·미 FTA 제16.1조 제1항.

## 2. FTA 규정의 비교분석

### (1) 한·칠레 FTA

한·칠레 FTA는 제14장에서 경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 14.3조에서는 각 경쟁당국(competition authority)<sup>112)</sup>은 집행활동(enforcement activity)이 타방 당사국의 중요한 이익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반경쟁적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타 경쟁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shall notify).

또한 제14.5조에 의하면 각 당사국의 경쟁당국이 타방 당사국의 경쟁당국이 수행하는 조사나 절차가 자국의 중요한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반경쟁적 관행(anti-competitive practices)이 자국의 이익에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substantially and adversely affected)고 판단하는 경우, 자신의 견해를 전달하거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9조에서는 동 챕터에서 발생한 분쟁을 일반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2) 한·싱가포르 FTA

한·싱가포르 FTA는 제15장에서 공정 경쟁의 촉진과 반경쟁적 관행<sup>113)</sup>의 축소를 위한 경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15.3조에서는 국내법에 따라 등록 또는 설립된 모든 사업자에 대해 자국 경쟁법을 적용하도록 보장하며, 반경쟁적 관행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는 투명성·

112) 한·칠레 FTA 제14.1조에 의하면, 한국은 공정거래위원회(Fair Trade Commission), 칠레는 국가경제원(Fiscalía Nacional Económica)이 ‘경쟁당국’이 된다.

113) 한·싱가포르 FTA 제15.1조 제2항에 의하면, ‘반경쟁적 관행’이란 “경쟁사업자 간 반경쟁적인 수평적 합의, 시장지배력의 남용, 사업자 간 반경쟁적인 수직적 합의 및 반경쟁적 인수 및 합병과 같이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 활동 또는 거래”를 말한다.

적시성·비차별성 및 절차적 공정성 원칙(principles of transparency, timeliness, non-discrimination and procedural fairness)에 입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5.5조와 제15.6조에서는 반경쟁적 관행의 제거 및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을 위해 양 당사국이 협의와 협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제15.8조 제2항에서는 동 챕터에서 발생한 분쟁을 일반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지 못하도록 하며, 제3항에서는 동 챕터의 규정과 다른 챕터의 규정이 충돌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다른 챕터의 규정이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한·EFTA FTA

한·EFTA FTA는 제5장에서 경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5.1조 제1항에서 당사국들은 반경쟁적 기업행위가 동 협정의 적절한 운용과 양립하지 않음을 인식하며, 제4항에서 반경쟁적 기업행위의 제거를 위해 각 당사국의 경쟁법 적용을 약속하였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충분하고 호의적인 고려를 하여야 하며, 반경쟁적 기업행위가 당사국들 간 무역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간주되는 경우 협의를 개최하여야 한다.<sup>114)</sup>

### (4) 한·ASEAN FTA

한·ASEAN FTA는 다른 FTA와 달리 경쟁에 관한 별도의 챕터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기본협정하의 서비스무역협정 제9조 영업관행(Business Practices)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국들은 서비스 공급자의 일정한 영업관행이 경쟁을 제약하고 서비스무역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제2항에서는 각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의 관행의 폐지를 목표로 한

---

114) 한·EFTA FTA 제5.1조 제5항, 제6항.

협약의 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5) 한·인도 CEPA

한·인도 CEPA는 제11장에서 경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11.3조와 제11.4조를 통해 양 당사국의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반경쟁적 관행의 제거를 위해 협약을 개시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을 위해 협력 및 협약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또한 제11.5조에 의해 동 챕터에서 발생한 사안이나 분쟁에 대해 일반 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해서는 아니된다.

#### (6) 한·EU FTA

한·EU FTA는 제11장에서 경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특히 하계도 동 챕터는 경쟁정책과 보조금에 관한 절(Section)로 구성되어 있고, 보조금에 관한 절은 보조금의 정의 및 특정성, 금지보조금의 유형, 투명성의무, WTO협정과의 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경쟁과 관련하여서는 먼저 제11.1조와 제11.3조에서 원칙과 이행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양 당사자는 상품, 서비스 및 설립에 무역자유화 과정의 혜택이 반경쟁적 영업행위나 반경쟁적 거래에 의하여 제거되거나 철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자의 경쟁법을 적용하기로 약속하였으며, 각자의 경쟁법을 이행할 당국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제11.4조에 의해 공기업 및 ‘특별한 권리’<sup>115)</sup> 또는 배타적 권리를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기업도 경쟁법의 적용대상이 되며, 제11.5조에서는 상업적 성격의 국

115) ‘특별한 권리’란, 당사국이 객관적·비례적·비차별적인 기준에 의하지 않고, 상품이나 서비스제공을 허가받은 기업의 수를 둘 이상으로 지정·제한하거나,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기업의 능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적 또는 규제적 우위를 주는 경우를 말한다. 김봉철, “한-EU FTA와 경쟁분야의 법적 과제”, 『국제거래법연구』 제18집 제2호, 2009, 89쪽.

가독점에 대해 비차별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제11.6조와 제11.7조는 협력과 협의 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제11.8조는 어떠한 당사자도 동 절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일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7) 한·페루 FTA

한·페루 FTA는 제15장에서 경쟁정책(Competition Policy)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15.2조에 의해 각 당사국은 반경쟁적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자국 시장에서의 경쟁과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경쟁법 및 경쟁당국을 유지해야 하며, 경쟁당국의 집행 정책은 투명성, 시의 적절성, 비차별성 및 절차적 공정성 원칙과 합치해야 한다. 제15.3조와 제15.5조에서는 각각 협력과 협의절차를 언급하고 있으며, 제15.4조에서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집행 활동이 다른 쪽 당사국의 중대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이를 자국의 경쟁당국을 통해 다른 쪽 당사국의 경쟁당국에게 영어로 통지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5.8조는 국경 간 소비자 보호를 언급하고 있으며, 제15.9조는 공기업 또는 지정독점의 설립 또는 유지를 허용하며, 제15.10조에 의해 동 챕터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

#### (8) 한·미 FTA

한·미 FTA는 제16장에서 경쟁 관련 사안(Competition-Related Matters)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먼저 제16.1조에서 동 챕터의 목적과 경쟁법의 이행 및 협력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으며, 동조 제5항<sup>116)</sup>에서는

116) “각 당사국은 자국 경쟁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자국의 당국에 그 집행조치의 대상자와 상호 합의에 의하여 행정적 또는 민사적 집행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집행조치의 대상자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합

동의의결제를 도입하고 있다. 제16.2조와 제16.3조에서는 일정한 의무 하에 지정독점과 공기업을 설립하거나 유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sup>117)</sup> 제16.6조는 국경간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제16.7조는 협의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16.8조에 의해 제16.1조,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3. 소 결

이상으로 경쟁정책에 대한 8개 협정문의 주요 규정을 살펴보았다. 모든 FTA에서 경쟁정책에 관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신 협의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한·EU FTA 이후 반경쟁적 관행을 금지하기 위해 국내경쟁법의 집행을 규율하고 있는데, 이 때 투명하고 시의적절하며 비차별적이며 공정한 방식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시장경쟁의 원리를 강조하고 경쟁제한적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경쟁정책은 무역장벽을 해소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이에 관한 국제적 차원의 모델 규범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의한 시정방안을 취하는 경우 위법성판단을 받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절차를 종결하는 동의의결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사건처리에 있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외교통상부, 한·미 FTA 상세설명자료, 2011, 135-136쪽; 동의의결제(혹은 동의명령제)는 미국의 제도인데 FTA를 통해 우리나라에도 도입되게 되었으며, 동 제도는 법 위반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수범자의 합의하에 취해진다는 점에서 재판상 화해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김두진, “FTA와 경쟁정책 - 한미 FTA상의 경쟁 장의 내용 및 국내법제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한양법학』 제20권 제1집, 2009, 59-60쪽.

117) 지정독점에서 ‘지정(designate)’이란 공식적이건 그 효과가 그러하건 독점을 설립, 지정 또는 승인하거나 독점의 범위를 추가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되도록 확대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부독점(government monopoly)’이란 당사국의 중앙정부에 의하여 직·간접적인 지분소유를 통하여 소유되거나 통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김두진, 위의 논문, 56쪽.

〈 표 16 〉 FTA별 경쟁정책 비교

FTA	원칙과 이행	분쟁해결
한·칠레	통보 의무, 협의	일반 분쟁해결절차 비적용
한·싱가포르	국내경쟁법의 집행(투명성·적시성·비차별성 및 절차적 공정성 원칙), 협의 및 협력, 투명성	일반 분쟁해결절차 비적용, 다른 챕터와 충돌시 다른 챕터가 우선
한·EFTA	국내경쟁법의 적용, 협의	일반 분쟁해결절차 비적용
한·ASEAN	협의 개시 의무	일반 분쟁해결절차 비적용
한·인도	협의 및 협력	일반 분쟁해결절차 비적용
한·EU	국내경쟁법의 집행(투명성·적시성·비차별성 및 절차적 공정성 원칙), 협의 및 협력	일반 분쟁해결절차 비적용
한·페루	국내경쟁법의 집행(투명성·적시성·비차별성 및 절차적 공정성 원칙), 협의 및 협력, 통지 의무, 비밀유지, 기술지원	일반 분쟁해결절차 비적용
한·미국	국내경쟁법의 집행(투명성·적시성·비차별성 및 절차적 공정성 원칙), 투명성, 협의	일반 분쟁해결절차 비적용

## 제 4 절 정부조달

### 1. 개 요

일반적으로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이란 행정주체가 교육, 국방, 사회간접시설, 보건 등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품 또



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WTO체제에서는 WTO 회원국 모두가 아닌, 원하는 국가만 가입할 수 있는 복수국간 무역협정(Plurilateral Trade Agreements)의 형태로 WTO설립협정 부속서 4종의 하나로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이하 ‘GPA’)이 채택되었다.<sup>118)</sup> 동 협정은 1996년 1월 1일자로 발효되었으며, 2012년 9월 현재 WTO 회원국 157개 중 한국을 포함한 41개 국가만이 동 협정에 가입하고 있다.<sup>119)</sup> 이처럼 적은 수의 국가만이 동 협정에 참가하고 있는 이유는 아직 많은 국가들이 국내산업 지원을 위해 자신의 정부조달에 대한 권한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sup>120)</sup>

그러나 양자 또는 소수의 국가만이 참여하는 FTA에서는 보통 정부조달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 2. FTA 규정의 비교분석

### (1) 한·칠레 FTA

한·칠레 FTA는 제15장에서 정부조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먼저 제15.1조에서 ‘정부조달’을 “정부가 상업적 판매나 재판매, 또는 상업적 판매나 재판매를 위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또는 공급에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정부활동의 목적상, 모든 계약적인 수단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양자의 결합에 대해, 그 사용을 확보하거나 취득하는 과정”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118)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앞의 책, 589, 591쪽.

119) [http://www.wto.org/english/tratop\\_e/gproc\\_e/memobs\\_e.htm](http://www.wto.org/english/tratop_e/gproc_e/memobs_e.htm) 참조; 가입국은 EU의 27개 회원국, 아르메니아, 캐나다, 홍콩,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일본, 한국, 리히텐슈타인, 네덜란드령 아루바,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위스, 대만, 미국이 해당된다.

120)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앞의 책, 591쪽; 한편, 2006년 12월 GPA의 개정안이 잠정적으로 합의되었다. [http://www.wto.org/english/tratop\\_e/gproc\\_e/overview\\_e.htm](http://www.wto.org/english/tratop_e/gproc_e/overview_e.htm) 참조.

제15.3조를 통해 각 당사국은 정부조달과 관련하여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부여하여야 하며, 제15.4조에서 조달기관의 대응구매(Offsets)<sup>121)</sup>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제15.6조 내지 제15.12조는 입찰절차, 조달 참여 조건, 기술규격 및 낙찰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으며, 제15.13조에서는 “비차별적이고, 적시의, 투명하고 효과적인(non-discriminatory, timely, transparent and effective)”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5.17조는 동 챕터의 이행과 관련하여 ‘정부조달 실무작업반(Government Procurement Working Group)’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부속서 15.1에서는 정부조달의 범위, 부속서 15.2에서는 정부조달의 실행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43개의 중앙정부기관, 15개의 지방자치단체, 18개의 투자기관을 양허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칠레는 155개의 중앙정부기관과 52개의 지방정부를 양허기관으로 지정하였다.<sup>122)</sup>

## (2) 한·싱가포르 FTA

한·싱가포르 FTA는 제16장에서 정부조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먼저 제16.1조 제1항에 의하면 GPA 회원국인 양 당사국은 GPA상의 자국의 권리와 의무 및 각 당사국의 정부조달시장에서의 양자간 무역기회를 추가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당사국의 관심을 재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제16.3조에서는 계약대상가액 선정, 내국민대우 및 비차별, 원산지규정, 입찰절차, 이의신청, 예외와 관련하여 GPA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6.9조에서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접촉선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부속서 16A에서는 정부조달의 범위를, 부속서 16B에서는 정부조달의 이행을 규정하고 있는데, 양허

---

121) 한·칠레 FTA 제15.1조에 의하면, ‘대응구매’란 “현지부품사용, 기술면허, 투자 및 연계무역 또는 이와 유사한 조건에 의하여 현지발전을 장려하거나 조달기관 당사국의 국제수지계정을 개선하기 위해 조달과정중에 또는 조달과정에 앞서 당해 당사국의 조달기관에 의해 부과되거나 고려되는 조건”을 말한다.

122) 정인교, 한·칠레 FTA의 주요 내용,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46쪽.

기관으로 우리나라는 43개의 중앙정부기관, 15개의 지방자치단체, 19개의 투자기관을 지정하였으며, 싱가포르는 23개의 국가기관과 24개의 기타기관을 지정하였다. 부록 16B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싱가포르는 정부조달중재위원회가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 (3) 한 · EFTA FTA

한 · EFTA FTA는 제6장에서 정부조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6.1조에 의해 한 · 싱가포르 FTA와 마찬가지로 정부조달에 관한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는 GPA에 의해 규율된다. 제6.2조에서는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제공을 위해 부속서 XII에 접촉선<sup>123)</sup>이 기재된다고 하였으며, 제6.3조에서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혜택의 확대 가능성에 관한 추가협상을 허용하고 있다.

### (4) 한 · ASEAN FTA

한 · ASEAN FTA는 다른 FTA와 달리 정부조달에 관한 별도의 챕터를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한 · ASEAN FTA 기본협정하의 서비스무역협정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서비스무역에 관한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등은 정부기관의 서비스조달을 규율하는 법률, 규정 또는 요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한 · ASEAN FTA 기본협정하의 투자협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동 협정은 정부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5) 한 · 인도 CEPA

한 · 인도 CEPA는 위의 한 · ASEAN FTA와 마찬가지로 정부조달에 관해 별도의 챕터를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역시 정부조달과 관련한

123) 우리나라는 재정경제부, 스위스는 경제부, 노르웨이는 현대화부, 리히텐슈타인은 외교부, 아이슬란드는 재무부를 '접촉선'으로 기재하였다.

몇 가지 규정을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 제6.2조에서 서비스무역에 관한 챕터가 정부조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0.8조 제4항에 의해 투자에 있어 내국민대우와 국적의무 부과금지 원칙은 정부조달에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조달’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제13.12조는 정부조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조달 분야에 있어 양 당사국이 협력 활동 촉진을 위해 노력해야(shall endeavour to)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6) 한·EU FTA

한·EU FTA는 제9장에서 정부조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9.1조 제1항에서 GPA상의 각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 및 정부조달시장에서의 양자 간 무역기회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당사국의 관심을 재확인하며, 제9.3조에 의해 정부조달에 관한 문제를 합의하기 위해 정부조달 작업반을 가동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과 EU는 GPA에 규정된 양허 이상의 추가 개방은 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일반 정부조달 절차는 GPA 개정안의 절차 규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sup>124)</sup>

#### (7) 한·페루 FTA

한·페루 FTA는 제16장에서 정부조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16.3조에서 일반원칙으로 내국민대우와 비차별, 조달 수행방식, 원산지규정, 대응구매 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6.2조에서는 국가안보와 공중도덕이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

124) 외교통상부, 한·EU FTA 상세설명자료, 2010, 127-128쪽; GPA의 개정안은 아직 발효하지 않은 상태인데, 우리나라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 의하여 이미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EU와 우리나라의 양허안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김대인, “한-EU FTA의 법적 쟁점: 정부조달분야를 중심으로”, 『유럽헌법연구』 제10호, 2011, 47-48쪽 참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비록 페루는 GPA에 가입하고 있지 않지만, 정부조달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에 대해 GPA 회원국 수준의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속하였다.<sup>125)</sup>

또한 제16.18조에서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16.19조에 의해 조달위원회(Committee on Procurement)를 설치하여 동 챕터의 이행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부속서 16A에서는 정부조달을 위한 양허기관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중앙행정기관 41개, 지방자치단체 15개, 공기업 18개를 양허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 (8) 한·미 FTA

한·미 FTA는 제17장에서 정부조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역시 제17.1조 제1항에서 GPA상의 각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 및 정부조달시장에서의 양자 간 무역기회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당사국의 관심을 재확인하며, 제17.3조 제1항에서는 계약대상가액 선정, 내국민대우 및 비차별, 원산지규정, 입찰절차, 이의신청, 예외와 관련하여 GPA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GPA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동 챕터에 수용되어 일부가 됨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개정된 GPA가 양 당사국에서 발효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제1항의 규정을 개정된 GPA의 적절한 규정으로 대체하여 신속하게 통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7.10조에 의해 정부조달 작업반을 설치하여 정부조달 관련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속서 17-A에서 양허기관을 기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중앙행정기관 51개를, 미국은 연방정부기관 79개에 대해 개방하고 있다.<sup>126)</sup>

125) 외교통상부, 한·페루 FTA 상세설명자료, 2011, 78쪽.

126)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주정부의 경우 GPA에 따른 양허수준을 유지할 것을 주장하여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기업에 대해서도 양허를 배제하기로 하였다. 외교통상부, 한·미 FTA 상세설명자료, 2011, 140쪽.

### 3. 소 결

이상으로 정부조달에 대한 8개 협정문의 주요 규정을 살펴보았다. 한·싱가포르 FTA 및 한·EU FTA 이후의 FTA에서는 GPA에 규율된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하거나, 기본 규정에 대해 이를 준용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심지어 GPA에 가입하지 않은 페루도 GPA에 규정된 의무 수준을 부담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며, 작업반이나 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정부조달에 관한 이행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록 GPA가 WTO 회원국 중 일부만 참여하고 있는 복수국간 무역협정의 하나지만, FTA에서 준용해야 할 기본 협정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일부 FTA 부속서는 중앙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투자기관 중 정부조달을 위해 양허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기재하고 있다. 한편, GPA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국가들과 체결한 한·ASEAN FTA와 한·인도 CEPA에서는 일단 정부조달에 관한 별도의 챕터를 두고 있지 않을 뿐더러, 서비스무역과 투자 부문에 정부조달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형식의 소극적 규정만을 두고 있다.

〈 표 17 〉 FTA별 정부조달 비교

FTA	GPA와의 관계	일반원칙과 이행	부속서 등
한·칠레	관련 규정 없음	내국민대우와 비차별, 대응구매 금지, 투명성, 이의제기, 협력, 추가협상, 정부조달실무작업반	정부조달의 범위와 실행 규정

FTA	GPA와의 관계	일반원칙과 이행	부속서 등
한·싱가포르	GPA상의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 재확인 및 GPA 규정의 준용 (내국민대우와 비차별, 원산지규정, 이의신청, 예외 등)	협력, 투명성, 접촉선 지정	정부조달의 범위와 실행 규정
한·EFTA	GPA에 의해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 규율	정보교환, 추가협상	접촉선 지정
한·ASEAN	관련 규정 없음	서비스무역에 관한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 및 투자협정은 정부조달에는 비적용	관련 규정 없음
한·인도	관련 규정 없음	서비스무역과 투자에 있어 내국민대우와 국적의무 부과금지원칙은 정부조달에는 비적용; 정부조달 협력 노력 의무	관련 규정 없음
한·EU	GPA상의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 재확인	정부조달작업반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
한·페루	GPA의 비회원국인 페루는 GPA 회원국 수준의 의무 부담 약속	내국민대우와 비차별, 원산지규정, 대응구매 금지, 예외, 투명성, 정보공개, 이의제기에 대한 심의절차, 추가협상, 협력, 조달위원회	정부조달의 범위

제 4 장 FTA의 서비스무역과 투자 및 지식재산권규정에 대한 비교분석과 평가

FTA	GPA와의 관계	일반원칙과 이행	부속서 등
한·미국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등 협정에 수용되어 일부가 된 GPA상의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 재확인 및 GPA 규정의 준용(내국민대우와 비차별, 원산지규정, 이의신청, 예외 등)	절차적 규정, 정부조달작업반	정부조달의 범위

참고로 아래 표는 GPA와 FTA 부속서에 규정된 정부조달에 있어 양허하한선에 관해 나타낸 것이다.

〈 표 18 〉 FTA별 정부조달 양허하한선 비교

단위: SDR (1 SDR =1,525.27원)

FTA	중앙정부기관			지방정부기관			기타기관(공기업)		
	상품	서비스	건설 서비스	상품	서비스	건설 서비스	상품	서비스	건설 서비스
GPA	13만	13만	500만	20만	20만	1500만	45만	미양허	1500만
한·칠레	5만	5만	500만	20만	20만	1500만	45만	미양허	1500만
한·싱가 포르	10만	10만	500만	20만	20만	1500만	40만	미양허	1500만
한·EU	GPA와 동일								
한·페루	9만 5천	9만 5천	500만	20만	20만	1500만	40만	페루측 40만	1500만
한·미국	7만	7만	500만	미양허					

출처: 외교통상부, 한·페루 FTA 상세설명자료, 2011, 82쪽.



## 제 5 절 지식재산권

### 1. 개 요

WTO가 창설되면서 부속서 중의 하나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TRIPs’)'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WTO의 가장 중요한 업적 중의 하나로 인정된다.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sup>127)</sup>에 관한 국제적 차원의 보호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이하 ‘WIPO’)와 지식재산권에 관한 다양한 국제조약의 채택을 통해 상당한 정도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지식재산권이 국제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증가하고 중요해짐으로써 WTO 체제 내에 이와 관련한 협정이 포함되게 되었고, WTO의 분쟁해결양해를 통해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게 되었다.<sup>128)</sup>

TRIPs는 회원국들 간의 지식재산권에 대해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를 부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무역적 측면에서 저작권, 상표, 지리적 표시, 디자인, 특허 등에 관해 규율하고 있다. 그 중에서 주목해야 할 규정으로 TRIPs와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기존 협약과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제2조를 들 수 있는데, 동 조항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제협약을 기본으로 하여 새로운 의무를 추가하는 소위 ‘국제협약 플러스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sup>129)</sup>

127) 한·싱가포르 FTA 제17.1조에 의하면, ‘지식재산권’이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 지리적 표시, 디자인, 특허, 집적회로 배치설계, 미공개 정보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한편, 한·EFTA FTA 제7.2조에서는 지식재산의 범위와 관련하여 저작권에 ‘컴퓨터 프로그램 및 자료 편집’을 포함하였으며, ‘식물 다양성’도 지식재산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한편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를 FTA 협정문에서는 ‘지적재산권’ 또는 ‘지식재산권’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국내법에서는 ‘지식재산권’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다.

128)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앞의 책, 485쪽.

129)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위의 책, 493쪽.

FTA에서도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려 있는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대해 별도의 챕터를 통해 다음과 같이 규율하고 있다.

## 2. FTA 규정의 비교분석

### (1) 한·칠레 FTA

한·칠레 FTA는 제16장에서 지식재산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먼저 제16.1조에서 각 당사국의 의무로서 지식재산권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보호와 집행을 제공하고, 지식재산권의 이행조치가 정당한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않을 것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16.2조에 의해 동 협정과 TRIPs에 합치되는 한도에서 국내법으로 보다 더 광범위한 보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16.3조와 제16.4조에서는 상표 및 지리적 표시의 보호(한국 3개, 칠레 3개)에 관해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16.5조는 TRIPs에 규정된 조항과 합치되는 ‘집행조치(Enforcement)’를 각 국내법에 규정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 (2) 한·싱가포르 FTA

한·싱가포르 FTA는 제17장에서 지식재산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일반적 의무를 규율하고 있는 제17.2조에서 양 당사국은 TRIPs에 규정된 의무를 재확인하고, TRIPs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제17.3조에 의하면, 양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의 집행과 관련하여 TRIPs에 합치하게 각 당사국의 법률에 규정하여야 하며, 제17.4조에 보다 광범위한 보호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또한 제17.5조에서는 지식재산권 분야에 있어서의 양국의 협력을 강조하며, 제17.9조에서는 동 챕터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지식재산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 (3) 한·EFTA FTA

한·EFTA FTA는 제7장에서 지식재산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7.1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국들은 지식재산권에 충분하고, 효과적이며 비차별적인 보호를 부여하고 보장하며, 집행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동조 제2항과 제3항에서 각각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규정하며, 제7.3조에서는 지식재산권 분야에 있어서의 당사국들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유형별 보호내용과 집행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속서 XIII 제7.1조 제1항에 규정된 지식재산권’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특히 특허와 관련하여 인간의 치료를 위한 진단·치료 및 외과적 방법 또는 동물의 신체에 행해진 방법 등을 TRIPs 예외규정에 추가하여 특허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sup>130)</sup> 한·EFTA FTA의 지식재산권 규정은 TRIPs의 보호수준을 능가하고 있는데, 이는 EFTA 회원국이 의약품, 식품 등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선진국이기 때문이다.<sup>131)</sup>

## (4) 한·ASEAN FTA

한·ASEAN FTA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별도의 챕터를 두지 않고 몇 개의 조항에서 관련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한·ASEAN FTA 기본협정 제10조에서 당사국들의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한·ASEAN FTA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협정 제7조에 의해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TRIPs에 따른 WTO 원칙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기로 한 약속에 관하여 동의하고 재확인한다. 한편, ASEAN 회원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국제기준에 다소 못미치는 편이라 동 협정에서는 보호 강화를 위한 협력에 강조를 두고 있다.<sup>132)</sup>

130) 한·EFTA FTA 부속서 XIII 제2조 참조.

131) 권인희, “FTA와 지적재산권”, 『한양법학』 제20권 제1집, 2009, 7쪽.

132) 권인희, 위의 논문, 8쪽.

### (5) 한·인도 CEPA

한·인도 CEPA는 제12장에서 지식재산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일반적 의무에 관한 제12.2조에서 한·싱가포르 FTA 제17.2조와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다. 또한 제12.3조 내지 제12.5조에서 지식재산권의 보다 광범위한 보호, 집행조치 및 협력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12.6조에 의하면 동 챕터에서 발생한 분쟁이나 사안을 일반 분쟁해결절차로 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6) 한·EU FTA

한·EU FTA는 제10장에서 지식재산에 관하여 매우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1절에서는 동 챕터의 목적, 의무의 성격 및 범위, 기술이전 및 권리소진<sup>133)</sup>에 대해 규율하고 있으며, 제2절에서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 디자인, 지리적 표시, 특허 등에 대해 언급하며, 제3절에서는 지식재산권의 집행과 관련하여 민사구제, 형사집행,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국경조치를 규율하고 있으며, 지리적 표시 보호대상품목(한국 64개, EU 162개)에 관한 2개의 부속서를 첨부하고 있다.

먼저 제10.2조에 의하면, 동 챕터의 규정은 TRIPs에 규정된 양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보완하고 구체화한다. 예컨대, 제10.6조와 제10.14조를

---

133) ‘권리소진의 원칙(Doctrine of Exhaustion of Rights, Principle of First Sale)’이란 일단 적법하게 만들어진 복제본을 판매하면 권리자의 권리는 소진되므로, 그 복제본의 권리자는 원권리자의 독점적인 배포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판매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미국 등 선진국은 동 원칙을 제한하여 병행수입을 금지하고자 하는 반면, 개도국들은 병행수입을 인정하고자 하는 입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TRIPs 제6조는 권리소진의 원칙을 인정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각 회원국에 일임하였고, 이에 관한 사항은 분쟁해결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여, 향후 계속해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앞의 책, 497-498쪽.

통해 저작물의 보호기간을 기존 50년에서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으로 연장하였는데, 우리나라는 동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었다.<sup>134)</sup> 또한 제10.7조에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규정하였는데, 최초송신으로부터 50년간 보호하도록 하였다. 제10.12조 제4항에서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예외 및 제한 사유를 국내법 및 국제협정에 따라 규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0.40조에 유전자원·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의 보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0.50조에서 사법당국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정신적 손해와 같은 경제적 요인 외의 요소 등 모든 측면을 고려하도록 하였으며, 저작권이나 상표권 침해의 경우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7) 한·페루 FTA

한·페루 FTA는 제17장에서 지식재산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먼저 제17.2조에서 양 당사국은 TRIPs 및 WIPO가 관장하는 협정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간 유효한 그 밖의 모든 지식재산 관련 다자협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고 있다. 제17.3조에서 광범위한 보호를, 제17.4조에서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와 같은 일반원칙을 규율하고 있으며, 제17.5조에서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에 관한 보호를 규정하였다. 또한 제17.7조에서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한·EU FTA와 마찬가지로 경과규정을 두고 70년으로 연장하였으며, 부속서 17A에 지리적 표시 보호대상품목(한국 82개, 페루 4개)을 규정하고 있다.

134) 동 조항을 통해 저작권 분야의 권리 확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와 함께 이용자의 공정이용의 확대도 요구된다. 이대회, “한-EU FTA의 지적재산권 주요 쟁점 분석”, 『고려법학』 제53권, 2009, 272쪽.

### (8) 한·미 FTA

한·미 FTA는 제18장에서 지식재산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sup>135)</sup> 먼저 제18.1조 제2항에 의해 양 당사국은 TRIPs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며, 동조 제5항과 제6항에서 광범위한 보호와 집행 및 내국민대우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또한 제18.2조 제1항에서 냄새 또는 소리만으로 구성된 상표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8.4조 제4항에서 한·EU FTA, 한·페루 FTA와 마찬가지로 경과규정(제18.12조 제2항)을 두고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였다. 제18.10조에서 집행조치 및 국경조치에 대해 자세하게 규율하고 있는데,<sup>136)</sup> 동조 제30항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 3. 소 결

이상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8개 협정문의 주요 규정을 살펴보았다. 모든 FTA에서 관계를 표현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TRIPs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즉 TRIPs의 충실한 이행을 약속하던지 TRIPs에 규정된 기존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거나 TRIPs 이외에 양 당사자가 가입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제조약의 성실한 이행을 규정하고 있다. 한·EFTA FTA와 별도의 챕터를 두고 있지 않은 한·ASEAN FTA를 제외하고는 모든 FTA에서 국내법으로 ‘보다 더 광범위

---

135) 미국은 WTO 규정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게도 소위 ‘TRIPs 플러스 방식’으로 TRIPs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규정에 추가하여 보호요건이상의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박지현, “한미 FTA속의 TRIPs-Plus”, 『국제법학회논총』 제53권 제2호, 2008, 87쪽.

136) 미국의 주장에 의해 삽입된 한·미 FTA 제18.10조 제6항의 ‘법정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최경진,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과 지적재산권 침해손해배상제도”, 『법경제학연구』 제4권 제2호, 2007. 12, 253-268쪽 참조.

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제공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한·싱가포르 FTA와 한·인도 CEPA에서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에 동 협정에 규정된 일반 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의 경우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따로 부속서를 두고 있는 FTA의 경우, 주로 지리적 표시의 보호대상목록을 기재하고 있다.

한편, FTA에 규정된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서는 선진국의 법제를 그대로 수용하고 오랜 심사숙고 없이 관련 국내법을 성급하게 개정한 것이 많아 해당 업계를 위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 표 19 〉 FTA별 지식재산권제도 비교

FTA	TRIPs와의 관계	일반적 의무와 이행	부속서 등
한·칠레	TRIPs를 포함한 국제협약의 충실한 이행	지재권의 효과적인 보호와 집행, TRIPs에 합치되는 국내법상 광범위한 보호, 일반 분쟁해결절차 적용	지리적 표시의 보호대상 기재
한·싱가포르	TRIPs에 규정된 당사국 의무의 재확인	TRIPs에 따라 지재권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 국내법상 광범위한 보호, 협력, 지식재산공동위원회 설치, 일반 분쟁해결절차 비적용	협력
한·EFTA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에 관한 TRIPs의 준용	지재권의 충분, 효과적, 비차별적 보호와 집행, 협력	지재권의 보호내용과 집행
한·ASEAN	TRIPs에 따른 WTO 원칙 준수 약속의 재확인	협력 증진 의무	관련 규정 없음

FTA	TRIPs와의 관계	일반적 의무와 이행	부속서 등
한·인도	TRIPs에 규정된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 재확인	TRIPs에 따라 지재권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 국내법상 광범위한 보호, 집행조치 및 협력, 일반 분쟁해결절차 비적용	관련 규정 없음
한·EU	TRIPs와 지재권협약의 이행과 TRIPs에 규정된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의 보완 및 구체화	권리소진, 경과규정 하 70년의 저작물 보호기간, 방송사업자 권리, 지재권의 집행, 정신적 손해	지리적 표시의 보호대상 기재
한·페루	TRIPs 및 WIPO가 관장하는 협정, 모든 지재권협약상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 확인	국내법상 광범위한 보호, 지재권의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비차별적 보호와 집행,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경과규정 하 70년의 저작물 보호기간	지리적 표시의 보호대상 기재
한·미국	TRIPs에 규정된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 확인	국내법상 광범위한 보호와 집행, 내국민대우, 투명성, 냄새 또는 소리 상표 허용, 경과규정 하 70년의 저작물 보호기간, 지재권의 집행	관련 규정 없음

## 제 6 절 평가 및 소결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8개의 FTA 협정문에 규정된 서비스무역과 투자, 경쟁정책 및 정부조달과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조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서비스무역과 관련하여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 FTA는 대체로 ‘상업적 주재’를 제외한 세 유형의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며, 상품무역의 경우와는 달리 일부 FTA에서만 WTO의 GATS상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서비스무역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부여, 시장접근, 국내규제, 투명성 등 GATS의 규정이 상당부분 그대로 인용되고 있다.

투자와 관련하여 한·EU FTA를 제외한 모든 FTA에서 ISD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며,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대우의 최소기준, 이행요건 부과금지, 국적의무 부과금지, 환경조치, 수용 및 보상 등을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하는 방식은 FTA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그 효과를 살펴보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난다.

WTO협정에 규율되지는 못하였지만, 국가들이 자유무역에 있어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경쟁정책은 FTA에는 비교적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가입한 모든 FTA에서 경쟁정책과 관련한 분쟁을 FTA의 일반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여전히 해당 사안은 계속해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달과 관련하여 GPA의 회원국인 FTA 당사국은 GPA상의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GPA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GPA에 규율되고 있는 내국민대우와 비차별, 대응구매 금지, 투명성, 이의제기 절차, 협력 등을 관련 챕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8개의 모든 FTA가 TRIPs를 인용하고 있는데, 즉 TRIPs상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거나 이의 충실한 이행을 약속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한·EFTA FTA와 한·ASEAN FTA를 제외한 모든 FTA에서 국내법을 통한 보다 더 광

범위한 지식재산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한·EU FTA, 한·페루 FTA 및 한·미 FTA에서는 보다 강력해진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집행절차의 규정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보호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4장에서 살펴 본 규정들은 현재 서비스무역과 정부조달 및 지식재산권과 같이 WTO협정의 규율대상이 되고 있거나 투자 및 경쟁정책과 같이 향후 규율대상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구분이 되는데, 전자의 경우는 WTO의 관련 협정을 인용하거나 여기서 좀 더 발전된 모습을 지향하고 있으며, 후자는 FTA에서도 여전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거나 선진국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되는 등 일관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각 쟁점별로 다각적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나름의 유형 및 모델을 개발하고 정립시키려는 태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제 5 장 FTA의 행정 및 환경규정에 관한 비교분석과 평가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의 기반이 되는 주요한 원칙 및 실체적 규범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제5장에서는 절차적 관점에서 중요성을 갖는 분쟁해결에 대해 먼저 고찰한 후, FTA의 원칙들의 이탈이 허용되는 예외규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8개의 FTA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들어 그 중요성과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무역과 환경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환경 챕터에 대해서 자세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

### 제 1 절 분쟁해결

#### 1. 개 요

WTO체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강제관할권, 시간구속적 절차, 항소제도, 강력한 이행제도 등을 가진 분쟁해결제도를 창출하였다는 것이다. WTO설립협정 부속서 2에 ‘분쟁해결양해(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공식명칭은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를 별도의 문서로 첨부하여 분쟁해결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역컨센서스(reverse-consensus)<sup>137)</sup> 제도를 도입하여 패널 및 항소기구의 보고서를 자동 채택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발전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

137) 의사결정 방식 중의 하나인 ‘컨센서스’는 반대가 없을 경우 통과되는 방식인데, 과거 GATT시절 패널보고서가 패소국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실상 분쟁해결절차를 무력화시켰다. 이에 대한 비판으로 ‘역컨센서스’를 도입하였는데, 역컨센서스는 하나의 국가라도 찬성하는 경우 해당 보고서를 통과시키는 방식이라, 승소국의 ‘찬성’만 있으면 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는 방식이다.

FTA에서도 별도의 챕터를 두어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보통 WTO협정의 분쟁해결절차를 그대로 이용하도록 하거나 WTO와 FTA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138)</sup> 그 이유는 FTA의 가입국이 대부분 WTO의 회원국이기도 한데, 동일한 사안에 대해 WTO와 FTA의 분쟁해결절차를 중복해서 이용할 경우 시간 및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sup>139)</sup>

## 2. FTA 규정의 비교분석

### (1) 한·칠레 FTA

한·칠레 FTA는 제19장에서 분쟁해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19.3조에 의하면 동 협정과 WTO협정, 동 협정에 따라 체결된 협정 또는 승계협정 하에서 제기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은 당사국이 원하는 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일단 분쟁해결절차가 개시되면 다른 절차의 이용은 배제되어야 한다.

한·칠레 FTA의 일반 분쟁해결절차는 당사국간의 협의(consultations), 주선(good offices), 조정(conciliation) 및 중개(mediation), 중재패널(arbitral panel)과 이행(implementation)의 단계로 이루어진다.<sup>140)</sup> 이 때 부속서 19.10에 규정된 ‘모범절차규칙(Model Rules of Procedure)’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며, 제19.13조에 의해 패널은 전원일치로 합의되지 않은(unanimously agreed) 사항에 대한 별도의견을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당사국에 제출한다. 제19.14조 제1항에 의해 최종보고서는 양 당사국에 구속력을 가지며(shall be binding), 상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shall not be subject

---

138) Simon Lester and Bryan Mercurio (eds.), *Bilateral and Regional Trade Agreements: Commentary and Analys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p. 378.

139) 김인숙, “FTA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연구 - 한국이 체결한 FTA를 중심으로 -”, 『국제법학회논총』 제52권 제2호, 2007, 96쪽.

140) 한·칠레 FTA 제19.4조 내지 제19.15조 참조.

to appeal). 또한 제19.15조에 의해 제소국은 패널보고서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피소국에 대해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혜택의 적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may suspend). 한편 제19.11조에 의하면, 패널은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사인 또는 기관으로부터 정보나 전문적 조언을 구할 수 있다.

### (2) 한·싱가포르 FTA

한·싱가포르 FTA는 제20장에서 분쟁해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20.3조에서 동일사안에 대한 분쟁이 WTO협정과 동 협정에 모두 적용될 경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된 절차는 배타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이어 제20.4조 내지 제20.14조에서 분쟁해결절차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위의 한·페루 FTA와 동일하다. 제20.13조에 의해 중재패널의 최종보고서는 마찬가지로 당사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며 상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또한 제20.15조에 의하면 절차의 진행 및 모든 문서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부속서 20A에 모범절차규칙을 통해 역시 중재패널이 따라야 할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3) 한·EFTA FTA

한·EFTA FTA는 제9장에서 분쟁해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9.1조 제2항에 WTO협정과 동 협정의 분쟁해결절차의 선택에 관해 규율하고 있다. 제9.2조 내지 제9.10조는 위의 FTA와 마찬가지로 분쟁해결의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중재패널의 최종보고서는 역시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국에 대한 동 협정상의 혜택을 정지시킬 수 있다.

#### (4) 한·ASEAN FTA

한·ASEAN FTA는 기본협정하의 분쟁해결제도협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데, 21개의 조문과 부속서(중재패널 절차를 위한 규칙 및 절차)로 이루어진 동 협정은 제2조 제1항에서 ‘대상협정(covered agreements)’<sup>141)</sup>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동 협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조 제5항에 의해 일단 분쟁해결절차가 대상협정 또는 분쟁당사국들이 당사자인 그 밖의 조약에서 발생한 분쟁당사국들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하여 동 협정 또는 그 밖의 조약에 따라 개시되었을 경우, 제소국이 선택한 분쟁해결절차는 배타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제3조 내지 제15조는 분쟁해결의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별도의 협정 속에 관련 조항이 들어가다 보니 다른 FTA와 비교하여 보다 자세하고 정교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WTO의 분쟁해결양해와 그 모습이 매우 닮아있다. 그러나 여전히 중재패널의 최종보고서에 대해서는 상소가 허용되지 않으며, 제15조는 ‘보상 및 양허 또는 혜택의 정지(Compensation and the Suspension of Concessions or Benefits)’라는 제목을 달아 패널보고서의 불이행에 대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6조에서는 모든 절차의 진행과 문서를 영어로 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 (5) 한·인도 CEPA

한·인도 CEPA는 제14장에서 분쟁해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14.3조에 위의 FTA와 마찬가지로 분쟁해결절차의 선택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14.4조 내지 제14.14조는 분쟁해결의 절차에 대해 언급하고

---

141) 한·ASEAN FTA 기본협정하의 분쟁해결제도협정 제1조에 의하면, ‘대상협정’이란 “가. 기본협정; 나.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다. 이 협정; 라. 그 협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기본협정의 관련조항에 따라 당사국간에 체결될 협정”을 말한다.

있다. 중재패널의 최종보고서의 법적 성격과 동 보고서의 불이행에 관한 조치 역시 위의 FTA와 마찬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제14.15조에 의해 공식 언어는 영어이며, 모범절차규칙이 부속서 14-A에 규정되어 있다.

#### (6) 한·EU FTA

한·EU FTA는 제14장에서 분쟁해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14.3조 내지 제14.12조는 다른 FTA와 마찬가지로 분쟁해결의 절차에 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절차는 부속서 14-B 중재절차 규칙의 규율을 받으며, 제14.17조에 의해 중재패널은 컨센서스로 결정을 취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shall make every effort).

#### (7) 한·페루 FTA

한·페루 FTA는 제23장에서 분쟁해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23.4조 내지 제23.20조에서 분쟁해결의 절차에 대해 규율하고 있으며, 구체적 내용은 부속서 23A 모범절차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23.5조에 의하면, 협의가 실패하고 중재패널로 가기 전에 분쟁해결을 위해 공동위원회의 회합을 요청할 수 있다.

#### (8) 한·미 FTA

한·미 FTA는 제22장에서 제도 규정 및 분쟁해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22.3조 내지 제22.15조에서 일반 분쟁해결에 관해 규율하고 있으며, 제22.7조 내지 제22.15조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다. 한·페루 FTA와 마찬가지로 제22.8조에서 공동위원회 절차를 별도로 두고 있으며, 제22.15조에서 동 협정 발효 후 5년 이내에 공동위원회에 불이행에 대한 조치의 운영 및 효과를 검토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 3. 소 결

이상으로 일반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8개 협정문의 주요 규정을 살펴보았다. 한·EU FTA를 제외하고,<sup>142)</sup> 모든 FTA에서 FTA와 WTO협정(또는 동 협정에 따라 체결된 협정이나 양국이 당사자로 있는 그 밖의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분쟁해결절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절차는 배타적으로 이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분쟁해결 이용 빈도를 살펴보면, FTA의 절차는 거의 이용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복잡한 메커니즘 때문에 전혀 이용되지 않기도 한다.<sup>143)</sup> FTA 회원국 중 거의 대부분이 WTO 회원국이기도 한 상황에서 WTO체제 내의 가장 훌륭한 메커니즘으로 인정되는 WTO 분쟁해결제도를 회원국들은 여전히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EU FTA 이전의 FTA에서는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로서 주선, 조정 및 중개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패널보고서의 구속력과 최종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보다 자세한 절차는 모범절차규칙에서 규율하도록 정하고 있다.

〈 표 20 〉 FTA별 분쟁해결제도 비교

FTA	분쟁해결절차의 선택	분쟁해결의 절차	기 타
한·칠레	동 협정, WTO협정, 동 협정에 따라 체결된 협정 또는 승계협정 중 선택 가능, 선택된 절차는 배타적 이용	협의, 주선·조정·중개, 중재패널과 이행	패널보고서의 구속력, 상소 불허, 부속서 (모범절차규칙)

142) 한·EU FTA는 선택된 분쟁해결기구가 절차적 또는 관할적인 이유로 그 의무의 구제를 구하는 주장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의무의 구제를 양 절차에서 구해서는 안된다(shall not seek)고 규정하여, 다른 FTA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는 선택된 절차가 배타적으로 이용되도록 하고 있다.

143) Lorand Bartels and Federico Ortino (eds.),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the WTO Legal System*,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p. 349.



FTA	분쟁해결절차의 선택	분쟁해결의 절차	기 타
한·싱가포르	동 협정과 WTO협정, 동 협정에 따라 체결된 협정 또는 승계협정 중 선택 가능, 선택된 절차는 배타적 이용	협의, 주선·조정·중개, 중재패널과 이행	패널보고서의 구속력, 상소 불허, 부속서(모범절차규칙), 절차 진행과 문서는 영어로
한·EFTA	동 협정과 WTO협정 중 선택 가능, 선택된 절차는 배타적 이용	협의, 주선·조정·중개, 중재패널과 이행	패널보고서의 구속력, 상소 불허
한·ASEAN	동 협정과 당사자로 있는 그 밖의 조약 중 선택 가능, 선택된 절차는 배타적 이용	협의, 주선·조정·중개, 중재패널과 이행	패널보고서의 구속력, 상소 불허, 절차 진행과 문서는 영어로
한·인도	동 협정과 WTO협정, 동 협정에 따라 체결된 협정 또는 승계협정 중 선택 가능, 선택된 절차는 배타적 이용	협의, 주선·조정·중개, 중재패널과 이행	패널보고서의 구속력, 상소 불허, 부속서(모범절차규칙), 절차 진행과 문서는 영어로
한·EU	동 협정과 WTO협정 중 선택한 경우, 선택절차 종료 전까지 다른 절차 개시 불가능	협의, 중재패널과 이행	패널보고서는 컨센서스로 채택 위해 노력 (반대의견 비공표), 부속서(중재절차규칙)
한·페루	동 협정, WTO협정과 양국이 당사국으로 되어 있는 무역협정 중 선택 가능, 선택된 절차는 배타적 이용	협의, 공동위원회, 중재패널과 이행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보고서는 최종적, 구속력; 패널보고서는 과반수로 채택 (별도의견 제시), 부속서(모범절차규칙)

FTA	분쟁해결절차의 선택	분쟁해결의 절차	기 타
한·미국	동 협정, WTO협정과 양국이 당사국으로 되어 있는 그 밖의 협정 중 선택 가능, 선택된 절차는 배타적 이용	협의, 공동위원회, 중재패널과 이행	모범절차규칙 제정의무

## 제 2 절 예외규정

### 1. 개 요

WTO협정 자체에는 별도의 예외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보통 예외규정이라고 하면 GATT 제XX조 일반예외(General Exceptions)<sup>144)</sup>와 제XI조 안보예외(Security Exceptions) 및 GATS 제XIV조 일반예외와 제XIV조의2 안보예외를 대표적인 조항으로 언급한다. 특히 분쟁해결에서 많이 인용되는 GATT 제XX조는 두문(chapeau)과 10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두문의 요건(즉, ‘자의적 또는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과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과 (a), (b) 및 (g)호의 해석이 가장 중요하다.<sup>145)</sup> 이와 관련하여, WTO 분쟁해결기구의 해석은 시간이

144) “Subject to the requirement that such measures are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between countries where the same conditions prevail,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the adoption or enforcement by any contracting party of measures:

(a) necessary to protect public morals;

(b) necessary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  
 (g)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of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 if such measures are made effective in conjunction with restrictions on domestic production or consumption;”

145) 이와 관련한 자세한 해석에 대해서는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앞의 책, 156-167쪽 참조.

흐름에 따라 점차 환경을 위한 무역제한조치를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 분쟁해결절차에서 GATT 제XXI조의 안보예외가 원용된 사례는 극히 소수, 즉 GATT 시절 11건, WTO에서 2건에 불과하다.

아래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FTA의 예외규정에 대해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 2. FTA 규정의 비교분석

### (1) 한·칠레 FTA

한·칠레 FTA는 제20장에서 예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20.1조 내지 제20.4조에서 일반예외, 안보예외, 과세 및 국제수지에 대한 예외를 규율하고 있다. 먼저 일반예외와 관련하여 GATT 제XX조와 GATS 제XIV조가 동 협정에 수용되어 일부가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해당 규정이 동 협정에도 적용되도록 하였다. 또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동 협정이 당사국의 조세조치에 적용되어서는 안 되며, 국제수지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외환거래와 관련하여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sup>146)</sup>

### (2) 한·싱가포르 FTA

한·싱가포르 FTA는 제21장에서 예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일반예외, 안보예외 및 과세에 대한 예외를 규율하고 있다. 제21.2조에서 일반예외와 관련하여 동 협정에 수용되어 일부가 된 GATT 제XX조와 GATS 제XIV조가 적용된다고 하였으며, 제21.3조에서 동 협정이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당사국의 과세조치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146) 한·칠레 FTA 제20.3조, 제20.4조.

### (3) 한·EFTA FTA

한·EFTA FTA는 다른 FTA와는 달리, 예외에 관한 별도의 챕터를 두고 있지 않고 몇 개의 조항 속에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즉, 제2.13조에서 GATT 제XX조와 제XXI조가 동 협정에 수용되어 일부가 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15조와 제4.15조에서는 GATS 제XIV조와 제XIV조의2가 동 협정에 적용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 (4) 한·ASEAN FTA

한·ASEAN FTA 역시 한·EFTA FTA와 마찬가지로 예외에 대해 별도의 챕터 대신 몇 개의 조항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먼저 한·ASEAN FTA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협정 제11조와 제12조에서 일반예외와 안보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GATT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는 언급 대신, GATT 제XX조와 제XXI조의 내용을 거의 완전히 그대로 가져오고 있다. 또한 한·ASEAN FTA 기본협정하의 서비스무역협정 제13조와 제14조에서 일반예외와 안보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GATS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는 언급 대신, GATS 제XIV조와 제XIV조의2의 내용을 거의 완전히 그대로 가져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 (5) 한·인도 CEPA

한·인도 CEPA도 역시 몇 개의 조항에서 예외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제2.9조 일반 및 안보예외에서 동 챕터(상품무역)의 목적상 GATT 제XX조와 제XXI조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동 협정에 수용되어 일부가 됨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무역에 관한 챕터 중 제6.14조와 제6.15조에서 일반예외와 안보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역시 GATS 제XIV조와 제XIV조의2와 유사하게 규율하고 있다.

## (6) 한·EU FTA

한·EU FTA는 제15장 제도·일반 및 최종규정에서 예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15.7조 내지 제15.9조에서 과세, 국제수지를 이유로 한 예외 및 안보예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일반예외와 관련하여서는 각 관련 챕터에서 별개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예컨대 상품무역에 대한 일반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제2.15조에 의하면, 동 협정에 수용되어 일부가 된 GATT 제XX조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됨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무역과 관련하여 제7.50조에서는 GATS 제XIV조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복하여 규율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불과 자본이동에 관한 제8장의 제8.3조에서 GATS 제XIV조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 (7) 한·페루 FTA

한·페루 FTA는 제24장에서 예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동 챕터에서는 일반예외, 안보예외, 과세 및 국제수지를 이유로 한 예외와 정보공개예외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제24.1조 일반예외 조항에 의하면 GATT 제XX조와 GATS 제XIV조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동 협정에 수용되어 일부가 된다.

## (8) 한·미 FTA

한·미 FTA는 제23장에서 예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일반예외, 안보예외, 과세조치 및 정보공개에 관한 예외를 규율하고 있다. 일반예외에 관한 제23.1조에 의하면, GATT 제XX조와 GATS 제XIV조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동 협정에 수용되어 일부가 된다.

### 3. 소 결

이상으로 예외규정에 대한 8개 협정문의 주요 규정을 살펴보았다. 먼저 일반예외와 관련하여서는 GATT 제XX조와 GATS 제XIV조의 규정이 해당 FTA에 그대로 또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수용되어 일부가 된다고 규정하거나, GATT 제XX조와 GATS 제XIV조의 규정을 거의 그대로 FTA의 일반예외로 인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안보예외와 관련하여서는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EFTA FTA, 한·ASEAN FTA 및 한·인도 CEPA에서는 GATT 제XXI조와 GATS 제XIV조의 2의 규정을 해당 협정에 수용하여 일부가 되었다고 언급하거나, GATT 제XXI조와 GATS 제XIV조의 2의 규정을 거의 그대로 FTA의 안보예외로 사용하고 있다. 그 외의 FTA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긴 하지만, 역시 GATT 제XXI조와 GATS 제XIV조의 2와 유사한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안보예외가 이용되는 경우는 매우 적은 편이다. 또한 이외에도 과세, 국제수지 또는 정보공개에 대한 예외조항을 별도로 두는 경우가 많다.

〈 표 21 〉 FTA별 예외규정 비교

FTA	일반예외	안보예외	기타 예외
한·칠레	동 협정에 수용되어 일부가 된 GATT 제XX조와 GATS 제XIV조의 적용	별도의 규정	과세, 국제수지에 대한 예외
한·싱가포르	동 협정에 수용되어 일부가 된 GATT 제XX조와 GATS 제XIV조의 적용	별도의 규정	과세에 대한 예외

FTA	일반예외	안보예외	기타 예외
한·EFTA	동 협정에 수용되어 일부가 된 GATT 제XX조와 GATS 제XIV조의 적용	동 협정에 수용되어 일부가 된 GATT 제XXI조와 GATS 제XIV조의 2의 적용	국제수지보호를 위한 제한
한·ASEAN	GATT 제XX조와 GATS 제XIV조 거의 그대로 인용	GATT 제XXI조와 GATS 제XIV조의 2 거의 그대로 인용	경상수지보호를 위한 제한
한·인도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동 협정에 수용되어 일부가 된 GATT 제XX조의 적용과 GATS 제XIV조 거의 그대로 인용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동 협정에 수용되어 일부가 된 GATT 제XXI조의 적용과 GATS 제XIV조의 2 거의 그대로 인용	국제수지보호를 위한 제한
한·EU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동 협정에 수용되어 일부가 된 GATT 제XX조의 적용과 GATS 제XIV조 거의 그대로 인용	별도의 규정	과세, 국제수지에 대한 예외
한·페루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동 협정에 수용되어 일부가 된 GATT 제XX조와 GATS 제XIV조의 적용	별도의 규정	정보공개, 과세, 국제수지에 대한 예외
한·미국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동 협정에 수용되어 일부가 된 GATT 제XX조와 GATS 제XIV조의 적용	별도의 규정	과세, 정보공개에 대한 예외

### 제 3 절 환경규정

#### 1. 의 의

국가들은 ‘무역자유화’와 함께 ‘환경보호’에도 점차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양자의 관계 구축에 있어 GATT 제XX조 일반예외의 규정을 통해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되지 않은 차별 또는 위장된 무역보호수단이 아닌 경우에는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제한의 합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사실 도하라운드를 통해 환경 규범이 주요 의제의 하나로 제기되었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있고, 대신 최근의 FTA 협정에서 환경에 관한 언급과 이에 대한 고려가 진행 중이어서 주목을 요하고 있다.<sup>147)</sup>

우리나라가 체결한 8개의 FTA 중에서 ‘환경(또는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하여 투자, 예외규정 등에서 간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별도의 챕터를 두어 규정하고 있는 것은 2007년에 서명된 한·미 FTA가 최초이며, 이후 각각 2010년과 2011년에 서명된 한·EU FTA와 한·페루 FTA가 이에 속한다. 또한 2012년 8월 1일자로 정식서명절차를 거친 한·터키 FTA 기본협정에서도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개별 챕터를 두고 있다.<sup>148)</sup>

FTA 협정문에 이처럼 환경에 관한 별도의 고려를 포함하기 시작한 데에는 1992년에 서명된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이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sup>149)</sup> EU가 체결한 FTA의

147) 이로리, “지역무역협정에서의 환경보호”, 『통상법률』 통권 제81호, 법무부, 2008. 6, 199-200쪽.

148) [http://www.fta.go.kr/new/pds/fta\\_korea/turkey/기본협정문\\_eng.pdf](http://www.fta.go.kr/new/pds/fta_korea/turkey/기본협정문_eng.pdf) 참조.

149) 이로리, 앞의 논문, 200쪽; 이재영·김문홍, “FTA체제하에서 환경규정의 제정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5권 제2호, 2011. 6, 393쪽; 강준하, “한국-EU FTA 환경분야에 관한 연구”, 『국제법평론』 통권 제31호, 2010, 2쪽; NAFTA에는 아직 ‘환경’에 관한 별도의 챕터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고, 대신 북미환경협력협정(North American Agreement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NAAEC’)을 부속협정으로 채택하여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다루고 있다. Gantz, *op. cit.*, pp. 147-148.



경우 구체적인 환경규정을 포함하기 보다는 일반적 예외로서 환경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와 달리 미국은 FTA에 구체적 규정을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환경부속협정을 체결하는 경향이 있었다.<sup>150)</sup>

한편 FTA와 같은 지역무역협정에 환경규정이 포함되는 주된 이유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중요한 목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내 환경법의 효율적 집행과 협력 강화를 통해 당사국 간의 경쟁조건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한다.<sup>151)</sup>

## 2. FTA 협정문의 환경규정

### (1) 한·칠레 FTA

우리나라가 최초로 체결한 한·칠레 FTA의 경우 별도의 장으로 환경보호를 규율하지는 않았지만, 서문에 WTO설립협정의 서문<sup>152)</sup>과 유사하게 “환경보호 및 보존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동 협정이 이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sup>153)</sup> 그리고

150) 이로리, 위의 논문, 203-204쪽; 한편, 강준하, “한국-미국 FTA 환경챕터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제11권 제1호, 2010, 429쪽에서는 미국과 EU 등 선진국이 채택한 FTA의 경우 환경챕터가 포함되어 왔다고 언급하고 있어, 두 학자가 서로 다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자가 확인해 본 결과, EU가 체결한 지역무역협정의 경우 ‘환경’에 관해 챕터로 규정하는 대신, 보통 하나의 조항에 협력의무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 이후, 각각 2011년 3월 22일과 23일에 가서명된 EU-중미제휴협정(EU-Central America association agreement)과 EU와 콜롬비아 및 페루 간의 무역협정(Trade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Colombia and Peru)에서는 각각 2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제5부 환경,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Title V: Environment, Natural Disasters and Climate Change)’와 20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제9부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Title IX: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별도의 챕터를 포함하고 있다. <http://ec.europa.eu/trade/creating-opportunities/bilateral-relations/agreements/>;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11/march/tradoc\\_147704.pdf](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11/march/tradoc_147704.pdf);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11/march/tradoc\\_147663.pdf](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11/march/tradoc_147663.pdf) 참조.

151) 이로리, 위의 논문, 201쪽.

152) “seeking both to protect and preserve the environment”.

153) 심영규, “지역무역협정(RTAs)의 확산과 지속가능한 발전 - RTAs 내 환경규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제51권 제1호, 2010. 2, 87쪽.

상품무역에 있어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중 위험평가에 관한 규정, 표준관련조치 중 합치성에 관한 조문에 일부 관련 규정이 존재하고, 투자 챕터에는 별도의 환경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제10.18조 (Environmental Measures, 환경조치) 제2항 제1문에 의하면, “당사국은 국내 보건, 안전 및 환경조치를 완화함으로써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규율하여 투자에 있어 환경을 고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 (2) 한·싱가포르 FTA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표준관련조치 중 제8.8조에서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 또는 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조치를 채택하는 것을 허용하며, 한·칠레 FTA와 마찬가지로 투자 챕터에서 환경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3) 한·EFTA FTA

한·EFTA FTA는 서문에서 WTO설립협정의 서문과 완전히 동일한 규정, 즉 환경의 보호 및 보존을 추구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4) 한·ASEAN FTA

한·ASEAN FTA의 기본협정 제11조에서는 환경협력활동<sup>154)</sup>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154) ‘환경협력’이란 환경 관리의 개선을 위한 당사국들의 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현행 환경정책 협력, 환경 관련 전문지식 공유,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등이 포함된다. 김정곤·금혜윤, 주요국의 FTA 환경협정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64쪽.

## (5) 한·인도 CEPA

한·인도 CEPA는 서문에서 WTO설립협정 및 한·EFTA FTA의 서문과 완전히 동일한 규정, 즉 환경의 보호 및 보존을 추구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투자 챕터 중 제10.16조(보건, 안전 및 환경조치)에서 한·칠레 FTA와 동일한 방식의 규정을 두고 있다.

## (6) 한·EU FTA

한·EU FTA는 먼저 서문에서 환경 보호 및 보존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환경법과 정책의 개발과 집행 강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또한 제1.1조에서 “양 당사자의 환경 및 노동법의 적용과 집행에서 환경, 노동 또는 직업 건강과 안전 기준의 저하나 축소 없이 외국인 직접투자를 증진하는 것”을 동 협정의 목적 중 하나로 삼고 있다.

한편 한·미 FTA 협정과는 달리, 예컨대 제7.50조를 보면 서비스 분야의 일반적 예외를 규정하면서 “환경조치”를 명시하는 대신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표현함으로써 환경조치를 간접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조치를 직접적 이유로 해서 FTA 의무 위반을 정당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sup>155)</sup> 또한 환경서비스의 개방과 관련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 (7) 한·페루 FTA

한·페루 FTA는 먼저 서문에서 “환경 보호 및 보전과 기본적 인권 및 기본권 보호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동 협정을 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표준관련조치 챕터 중 제7.7조에 의해 투명성을 위해

---

155) 강준하, 앞의 논문(각주 149), 19쪽.

제출해야 할 문건으로서 환경보호 관련 표준조치, 투자 챗터 중 제9.7조의 이행요건 중 환경요건, 한·칠레 FTA 협정 제10.18조와 유사한 제9.9조(보건, 안전 및 환경조치)를 통해 환경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수용에 관해 규정한 부속서 9B에서는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정책 조치(예컨대, 저소득층 가계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되고 적용되는 당사국의 비차별적인 규제 행위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일반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제24.1조 제1항과 제2항에서 GATT 제XX조 및 GATS 제XIV조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환경 조치”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 (8) 한·미 FTA

한·미 FTA는 서문에서 환경법과 정책의 개발과 집행 강화에 대해 언급하며, 동 협정을 환경 보호 및 보존과 합치되는 방식으로 이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표준관련조치 챗터 중 제9.7조에서 환경보호와 같은 정당한 목적을 위해 무역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투자 챗터 중 이행의무 부과금지에 관한 제11.8조와 투자와 환경에 관한 제11.10조에 한·칠레 FTA 제10.18조와 거의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수용에 관해 규정한 부속서 11-B는 한·페루 FTA와 마찬가지로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 가격안정화(예컨대, 저소득층 가계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통한)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되고 적용되는 당사국의 비차별적인 규제 행위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 규정의 환경 규제가 그 목적 또는 효과에 비추어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일 때는 간접수용을 구성할 수 있는데,

환경 규제의 목적과 효과가 때로는 과학적 불확실성으로 간접수용에 해당할 수 있어 이에 관한 세부적인 대책이 요구된다.<sup>156)</sup>

또한 동 협정의 의무 위반으로부터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한 제23.1조에서 GATT 제XX조 및 GATS 제XIV조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동 협정의 관련 규정에 적용되며, 한·페루 FTA와 마찬가지로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환경조치’가 포함됨을 적시하고 있다.<sup>157)</sup>

### (9) 소 결

우리나라가 채택하여 현재 발효한 8개의 FTA 협정문은 서명일을 기준으로 한·미 FTA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이전에는 개별적 환경 관련 챗터를 포함하여 규정하는 대신 보통 서문, 표준관련조치나 서비스 양허표, 예외나 투자 조치에 일부 관련 내용을 (산만하게) 규율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한·미 FTA를 기점으로 환경 또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제목의 챗터를 두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환경보호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 3. 주요 환경규정의 내용과 쟁점

### (1) 서 언

여기서는 별도의 환경 챗터를 가지고 있는 세 개의 FTA 협정문을 기초로 하여 주요 조문의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협정 간 차이점 또는 특성에 대해 비교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협정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주된 검토 대상으로 환경보호수준, 환경협정, 환경법의

156) 조은래, “한미 FTA 환경협정의 주요쟁점과 평가”, 『환경법연구』 제30권 제1호, 2008, 317쪽; 이재영·김문홍, 앞의 논문, 395쪽.

157) 강준하, 앞의 논문(각주 150), 441쪽.

적용 및 집행, 절차적 보장, 제도적 장치, 대중 참여, 환경협력 및 분쟁해결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여기에서는 환경 챕터가 만들어진 순서, 즉 FTA 협정의 서명일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 (2) 환경규정의 비교분석

### 1) 한·미 FTA

한·미 FTA는 환경과 관련하여 별도의 챕터 제20장과 부속서 20-A 및 대중 참여 및 환경법에서의 동등성에 관한 부속서한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페루 FTA 협정과 마찬가지로 노동에 관해 별도의 챕터(제19장)를 두고 있다.

#### ① 정 의

한·미 FTA는 제20.11조에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어 용어의 명확화를 추구하고 있다. 동 조항에 따르면, 환경법이란 당사국이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지역에서 환경보호 또는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당사국의 법 또는 규정이나 그 조항을 의미한다. 또한 미국의 환경법은 연방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집행 가능한 환경법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미국은 주 차원에서 규율하는 환경법이 많아 우리나라와의 법집행의무와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 부속서한을 통해 환경과 관련한 분쟁에서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기 전 자국에서 범위가 실질적으로 동등한 환경법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158)</sup>

---

158) 강준하, 앞의 논문(각주 150), 434쪽.

## ② 보호수준

한·미 FTA 제20.1조는 환경보호수준과 관련하여 각 당사국이 환경법 및 정책을 결정할 재량권을 가지며,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규정하고 장려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환경보호수준이 높은 수준의 보호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부속서 20-A에 기재된 국제협정의 환경기준보다 높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sup>159)</sup> 또한 환경보호수준을 향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sup>160)</sup>

## ③ 환경협정 및 환경협정과외의 관계

한·미 FTA 제20.2조에 의하면 부속서 20-A에 기재된 7개의 국제환경협약<sup>161)</sup>의 의무이행을 위해 자국의 법, 규정 및 그 밖의 모든 조치를 채택, 유지 및 이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sup>162)</sup>

159) 강준하, 위의 논문(각주 150), 432쪽.

160) 강준하, 위의 논문(각주 150), 433쪽.

161) 해당 7개의 국제환경협약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이하 ‘CITES’),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협약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f 1978 Relating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국제포경규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Regulation of Whaling), 전미열대참치위원회 설립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American Tropical Tuna Commission)을 말한다.

162) 이 7개의 환경협약 중 3개 MEAs(해양오염방지협약 의정서, 국제포경규제협약, 습지보전협약)는 직접적으로 무역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CITES, 기후변화, 생물다양성보존 등의 협약과 연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윤창인, 한·미 FTA 이행대상 다자환경협약(MEAs)의 무역규제조치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98-101쪽; 특히, 이 7개 환경협약의 무역규제와 관련한 내용은 윤창인, 위의 연구보고서, 101쪽 참조.

그러나 7개의 국제환경협약에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과 카르타헤나생명안전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sup>163)</sup> 물론 양 당사국은 이외의 다자환경협정을 포함시키기 위해 위 목록의 수정을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sup>164)</sup> 목록 추가의 여지는 제공하고 있다.<sup>165)</sup>

한편 제20.10조에서 양 당사국은 자신이 당사국으로 있는 다자환경협정 및 무역협정 간의 상호 지지를 증진시키는 수단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하며, 특히 동 협정과 위 7개 환경협정상의 의무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 양 협정상의 의무 균형을 추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때, 무역에 위장된 제한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라면 7개 환경협정상 의무를 추구하기 위한 특정 조치를 허용하고 있다. 즉, 동 조항은 GATT 제XX조의 전문요건 보다는 (두 개의 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을 충족하면 되므로) 다소 용이한 요건을 만족시키면 환경 보호를 위한 무역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FTA와 같은 지역무역협정이 WTO와 같은 다자무역협정을 선도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sup>166)</sup>

#### ④ 환경법의 적용 및 집행

한·미 FTA는 제20.3조에서 환경법의 적용 및 집행에 관한 엄격한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동 조항의 규정 이유는 환경법 집행에 있어 기업에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인데, 즉 한 당사국이 다른

---

163) 조은래, 앞의 논문, 306쪽; 이들 3개의 협약 또는 의정서에 한국은 가입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당사국으로 되어 있지 않다.

164) 한·미 FTA 부속서 20-A 제2항.

165) 윤창인, 앞의 연구보고서, 102쪽; 강준하, 앞의 논문(각주 150), 436쪽.

166) 윤창인, 위의 연구보고서, 107쪽.



당사국에 비해 엄격한 환경법 집행으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어렵게 만들지 않기 위한 것이다.<sup>167)</sup>

#### ⑤ 절차적 보장

한·미 FTA는 제20.4조에서 환경 보호에 관한 절차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해관계인의 환경법 위반 조사 요청권, 환경법 위반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또는 구제 보장 및 접근권,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이해관계인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는 손해배상, 구제명령, 금전적 벌칙, 긴급폐쇄, 활동의 일시적 정지 등이 포함된다.

#### ⑥ 제도적 장치

한·미 FTA는 제20.6조에 의해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환경협의회(Environmental Affairs Council)를 설립하여 동 챕터의 이행 감독을 담당한다. 특히 동 협의회는 대중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대중으로부터 자문을 구하며, 환경 문제에 대해 대중과 대화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협의회의 공식 결정은 공개하여야 한다.

#### ⑦ 시민사회 참여

한·미 FTA는 제20.7조에서 환경법에 대한 대중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환경법 위반 주장을 조사하도록 요청하며 환경법과 환경법 집행 및 준수 절차의 공개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각 당사국은 특정 조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한 당사국의 사인으로부터 서면 입장제출(submission)을 접수받아 이에 응답하여야 한다. 이러한 동 조항을 통해 양 당사국은 환경보호수준의 제고와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노리고 있다.<sup>168)</sup> 또한 민간에 의한 입장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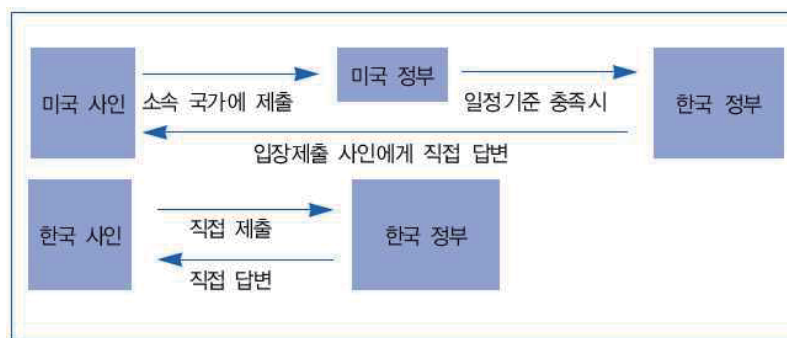
167) 강준하, 앞의 논문(각주 150), 433쪽.

168) 강준하, 위의 논문(각주 150), 437쪽.

제도는 국내 환경법의 효과적 이행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가 환경보호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부수적 효과도 가진다.<sup>169)</sup>

또한 제3항에서는 환경 분야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국가자문위원회(National Advisory Committee)를 소집하여 동 챕터의 이행에 관한 의견을 접수하고, 환경협의회가 이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대중참여의 확대로 인해 행정부담의 증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대국 소속 사인은 소속국을 통해 입장을 제출토록 하고, 각 당사국은 해당 입장이 동 챕터의 특정 조항의 이행과 관련되는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타당사국에게 전달하도록 ‘부속서한’에 규정하고 있다.<sup>170)</sup>



출처: 외교통상부, 한·미 FTA 상세설명자료, 2011, 169쪽.

한편, 위 부속서한이 우리 측 협정문에만 들어가 있고 미국 측 협정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동 서한의 법적 효력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외교부는 이 서한이 협정문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문서(예컨대, 의정서, 부속서나 부록 등)는 아니지만,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169) 김정곤·금혜윤, 앞의 연구보고서, 54, 99쪽; 참고로 NAAEC에 따른 민간조사요구는 국가 대 국가절차보다 훨씬 많이 이용되었는데, 1995년부터 2011년 9월까지 총76건이 이용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해당 절차로 인해 당사국의 환경보호가 강화된 경우도 있었다. 김정곤·금혜윤, 위의 연구보고서, 53쪽.

170) 강준하, 앞의 논문(각주 150), 438쪽; 조은래, 앞의 논문, 308쪽.

협약 제31조와 제32조(조약의 해석)를 통해 볼 때 양 당사국이 합의한 서한, 문서가 해석의 준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동 서한은 협정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설명하였다.<sup>171)</sup>

#### ⑧ 협력

한·미 FTA는 제20.8조에서 환경 문제에 대한 양 당사국의 협력 관계 확대를 약속하며, 특히 이를 위해 (NAFTA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환경협력협정(Agreement on Environmental Cooperation)을 채택하여 이에 따라 협력활동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공식 명칭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환경협력에 관한 협정은 2008년 3월 18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2년 1월 23일 서명되어 동년 3월 15일자로 발효되었다. 동 협정은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목적, 중점 분야, 환경협력위원회 설립, 작업프로그램, 대중 참여, 다른 기구들과의 조정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특히 양 당사국은 환경협력위원회의 주도로 30여개의 환경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sup>172)</sup>

또한 제20.8조 제4항에 의해 동 챕터와 환경협력협정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대중의 의견 및 권고를 고려해야 함을 의무로 하고 있다.

#### ⑨ 분쟁해결

한·미 FTA는 제20.9조에서 분쟁해결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환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환경 협의(Environmental Consultation)와 환경협의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즉,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이 지정한 접촉선에게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안의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시도를 하여야 하며, 양 당사국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어떠한 사인 또는 기관으로부터 자문 또는

171) <http://news.mofat.go.kr/enewspaper/articleview.php?master=&aid=110&ssid=11&mvid=359>.

172) 강준하, 앞의 논문(각주 149), 14쪽.

지원을 구할 수 있다. 이 때 동 분쟁이 동 협정 및 부속서 20-A에 규정되어 있는 환경협정상의 의무와 모두 관련되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협의절차 또는 관련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협의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당사국은 상대국의 접촉선에 서면을 통해 환경협의회 회합을 요청할 수 있다. 동 협의회는 주선, 조정 또는 중개 절차를 포함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동 협정 및 부속서 20-A에 규정되어 있는 환경협정상의 의무와 모두 관련되어 있는 경우 동 환경협정을 다루는 권한 있는 모든 실체와 협의하고, 그 성격 및 지위에 비추어 적절한 한도에서 그 협정상의 해석 지침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환경협의회를 통해서도 분쟁 해결에 실패한 경우, 동 협정 제22장의 협의 또는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에 사안을 회부할 수 있으며, 그 이후 패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때 환경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을 보유한 사람이 패널 위원에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위원에 대해서는 기피할 수 없다.<sup>173)</sup>

또한 제20.9조 제5항에 의해 일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환경 협의와 환경협의회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EU FTA와 한·페루 FTA에서 일반 분쟁해결절차를 아예 배제하고 있는 것과는 구별된다.

## 2) 한·EU FTA

한·EU FTA는 제13장의 제목을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하여 환경 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준의 준수 의무에 대해서도 규정함으로써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큰 개념 내에서 환경과 노동 문제를 다루고 있다.<sup>174)</sup> 또한 동 챕터

173) 한·미 FTA 제22.9조 제4항.

174) 강준하, 앞의 논문(각주 149), 4-5쪽.

규정 중 제13.7조를 제외한 대부분이 당사국의 구체적 의무를 규정한다기 보다는 의무이행을 위한 노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연성법(soft law)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 ① 목적과 적용범위

한·EU FTA 제13.1조는 동 챕터의 목적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데, 특히 각 당사국의 환경 (또는 노동) 기준을 조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무역관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조항은 동 챕터를 해석하는 데 있어 주요한 지침으로 작용할 것이다.<sup>175)</sup> 또한 제13.2조에 의하면 동 챕터의 적용범위는 모든 환경(과 노동) 문제가 아니라 “환경 문제의 무역 관련 측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당사국에 의해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by the Parties affecting trade-related aspects of (labour and) environmental issues)”가 된다.

#### ② 보호수준

한·EU FTA 제13.3조에 의하면 당사국은 자신의 환경보호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며,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 또는 협정에 합치되는 높은 환경보호수준을 규정하고 장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shall strive to)” 한다. 이는 당사국의 역량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제공의무는 구체적인 보호수준, 의무 이행에 대한 판단기준 및 위반에 대한 강제수단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선언적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sup>176)</sup> 다만, 환경보호수준을 저하하는 행위는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sup>177)</sup>

175) 강준하, 위의 논문(각주 149), 8쪽.

176) 이로리, 앞의 논문, 206쪽.

177) 이재형, “FTA 환경규정상 당사국의 의무에 관한 연구”, 『고려법학』 제49호, 2007, 481쪽; 이로리, 앞의 논문, 206쪽에서 재인용.

한편, 동 조항상 어떤 국제협정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지만, 제13.5조를 통해 우리나라와 EU가 당사국인 기후변화 협약과 교토의정서를 포함한 다자환경협정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sup>178)</sup>

### ③ 환경협정

한·EU FTA 제13.5조에서는 동 협정의 당사국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다자환경협정을 자국의 법과 관행을 통해 효과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함을 규정하고 있다. 한·미 FTA 협정에서는 7개의 다자환경협정을 특정하고 있는데, 동 협정에서는 이를 한정하고 있지 않아 고려 대상인 환경협정의 범위가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sup>179)</sup> 또한 제13.5조 제3항에서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및 발리행동계획을 특별히 언급함으로써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높아진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 ④ 환경법의 적용 및 집행

환경법의 적용과 집행을 규정하고 있는 한·EU FTA 제13.7조는 다른 조항과 달리 엄격한 법적 의무를 규율하고 있다. 먼저 제1항에서는 “당사국은 양 당사자 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환경 (및 노동) 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다. 제2항은 양 당사자가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환경법 또는 기준을 면제하거나 완화시키거나 이러한 제의를 통해 국내법상 환경 보호를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규정한다.

---

178) 강준하, 앞의 논문(각주 149), 9쪽.

179) 강준하, 위의 논문(각주 149), 10쪽.

그러나 한·미 FTA 협정과 달리 ‘환경법’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떤 법 규정이 동 조항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sup>180)</sup>

#### ⑤ 협력

한·EU FTA 제13.11조에 따라 양 당사자는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부속서 13에 규정된 대로 협력 활동을 수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동 부속서는 동 챕터의 목적 달성과 의무 수행을 위해 ‘예시적 규정’으로서 지속가능성 영향 평가, 국제포럼에서의 협력,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협력, 다자환경협정과 국제무역규범과의 관계에 대한 의견 교환 등 13개의 협력 활동 분야를 규정하고 있다.

#### ⑥ 제도적 장치

한·EU FTA는 동 협정을 이행하는 방법으로서 제13.12조에 제도적 장치와 제13.13조에 시민사회 대화 메커니즘 및 제13.14조 내지 제13.16조에 분쟁해결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제도적 장치로 접촉선(contact point),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및 국내자문단(Domestic Advisory Group)이 설치되는데, 특히 무역위원회 산하에 설치되는 전문위원회(Specialised Committee)의 하나인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고위급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협력 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접촉선은 동 챕터의 이행 업무를 담당하며, 이행의 자문을 위해 설립된 국내자문단은 환경 및 노동전문가, 기업인과 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를 균형 있게 대표하도록 구성된다.

---

180) 강준하, 위의 논문(각주 149), 12쪽.

⑦ 시민사회 참여

한·EU FTA는 제13.13조에서 국내자문단으로 하여금 1년에 1회 시민사회포럼을 개최하여 동 챕터의 이행을 논의하게 함으로써 시민사회와의 대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대중 참여원칙은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의 원칙 10<sup>181)</sup>에 선언된 환경원칙 중 하나이다.

⑧ 분쟁해결

한·EU FTA 협정은 동 챕터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제13.14조의 정부간 협의(Government Consultations)를 통해 해결하고, 이것이 실패하는 경우 제13.15조에 규정된 3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Panel of Experts)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13.16조에 의해 동 챕터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는 일반 분쟁해결절차로는 해결할 수 없고, 정부간 협의 또는 전문가 패널 절차만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3) 한·페루 FTA

한·페루 FTA는 한·EU FTA와는 달리, 노동에 관해서는 별도의 챕터(제18장)를 규정하고 있다.

① 일반규정

한·페루 FTA는 제19장에서 ‘환경’에 관한 별도의 챕터를 포함하고 있는데, 먼저 제19.1조에서 동 챕터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환경 보호

---

181) “Environmental issues are best handled with **participation of all concerned citizens**, at the relevant level. At the national level, each individual shall have appropriate access to information concerning the environment that is held by public authorities, including information on hazardous materials and activities in their communities, and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decision-making processes. States shall facilitate and encourage public awareness and participation by making information widely available. Effective access to judicial and administrative proceedings, including redress and remedy, shall be provided.”



약속 및 일반 사항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동조 제2항에서 무역 및 환경 정책이 상호 지지적인(mutually supportive) 관계임을 언급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적에 기여해야 함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제3항에서 자국의 환경정책 목표를 준수하기 위해 자원 배분에 관한 결정권을 각 당사국이 가짐을 확인하며, 제4항은 환경법 집행활동은 각 당사국의 국내 관할권에 속하는 사항임을, 제5항은 환경 협력 강화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② 보호수준

한·페루 FTA 제19.2조는 환경보호수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항은 위의 한·EU FTA와 마찬가지로 각 당사국이 환경보호수준과 환경법 및 정책의 채택 및 수정에 있어 재량권을 가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보다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 ③ 환경협정

한·페루 FTA는 제19.3조에서 양 당사국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다자환경협정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확인하며, 특히 ‘비차별적이고 자의적이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장벽을 구성하지 않는 한’에 있어 다자환경협정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GATT 제XX조의 전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무역을 제한하는 환경 조치가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인데, 한편으로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결을 통해 볼 때 전문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 ④ 환경법의 적용 및 집행

환경법의 적용 및 집행과 관련하여 한·페루 FTA 협정 제19.5조는 한·EU FTA 제13.17조와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역시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한 방식의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⑤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

한·페루 FTA는 제19.6조와 제19.8조에서 특히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해당 사안에 대한 양 당사국의 특별한 관심과 공동의 약속을 확인할 수 있다.

⑥ 제도적 장치

한·페루 FTA는 제19.10조를 통해 동 챗터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설립하고 있는데, 고위급 대표로 구성된 환경협의회(Environmental Affairs Council)를 구성하여 환경 협력 활동 및 동 챗터의 이행 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행 업무를 담당하는 접촉부서(contact point)<sup>182)</sup>를 각 당사국 행정부 내에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⑦ 협력

한·페루 FTA는 제19.11조에 의해 환경 정책의 무역 관련 측면에 대한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부속서 19A에 규정된 협력 활동을 수행하도록 약속하였다. 동 협정의 부속서 19A는 한·EU FTA 부속서 13과 유사하게 동 챗터의 목적 달성과 의무 수행을 위한 11개의 환경 협력에 관한 예시적 목록을 마련하고 있다.

⑧ 환경영향

한·페루 FTA는 제19.13조에서 양 당사국이 환경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⑨ 분쟁해결

한·페루 FTA는 제19.12조와 제19.14조에서 동 챗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먼저 서면으로 협의 요청을 하고, 상호 만족스러운

---

182) ‘contact point’를 한·EU FTA와 한·미 FTA에서는 ‘접촉선’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해결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고 있으며,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경우 환경협약회의 회합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 챕터와 관련한 모든 사안은 한·EU FTA와 마찬가지로 일반 분쟁해결절차로는 해결할 수 없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 (3) 소 결

〈 표 22 〉 한·EU, 한·페루, 한·미 FTA 환경 챕터 비교

	한·미 FTA	한·EU FTA	한·페루 FTA
환경법 정의규정	제20.11조; 용어의 명확화 추구	없음	없음
환경보호 수준	재량권+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위해 노력	재량권+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위해 노력	재량권+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위해 노력
다자환경 협정	7개의 국제환경협정의무 이행(합의를 통해 목록 추가 가능); 무역에 위장된 제한을 부과하지 않는 한, 무역제한조치 가능	한국과 EU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환경협정의 효과적 이행 약속	한국과 페루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환경협정의 이행 준수; 비차별적이고 자의적이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장벽을 구성하지 않는 한, 무역제한조치 가능
환경법의 적용 및 집행	환경법의 효과적인 집행의무+환경법의 적용 면제·이탈 금지	환경법의 효과적인 집행의무+환경법의 적용 면제·이탈 금지	환경법의 효과적인 집행의무+환경법의 적용 면제·이탈 금지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환경협의회 (이행감독)	접촉선,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내자문단	환경협의회 (이행감독); 접촉 부서(이행)

제 5 장 FTA의 행정 및 환경규정에 관한 비교분석과 평가

	한·미 FTA	한·EU FTA	한·페루 FTA
대중 참여	이해관계인의 주장 조사 및 정보 공개; 사인의 서면 입장제출 및 답변 의무; 국가자문위원회의 의견 수렴	국내자문단의 시민사회포럼 개최	관련 규정 없음
협 력	환경협력 증진을 위해 환경협력협정 체결; 협력 활동시 대중의 의견 및 권고 고려	부속서에 예시적 협력 활동 분야 기재 (13개)	부속서에 예시적 협력 활동 분야 기재 (11개)
분쟁해결	환경 협의→환경협의회 →일반 분쟁해결절차 (협의→공동위원회 →패널→이행)	정부간 협의→전문가 패널 (일반 분쟁해결절차 비적용)	협의→환경협의회 (일반 분쟁해결절차 비적용)
기 타	무역과 환경 정책은 상호 지지적 관계; 환경 보호에 관한 절차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환경과 노동에 대한 통합적 접근방식; 적용범위는 환경의 무역 관련 측면에 국한	무역과 환경 정책은 상호 지지적 관계;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에 관한 별도의 규정; 환경영향 검토

위 표와 앞에서 언급한 논의를 기초로 하여 몇 가지 주요한 사항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면, 먼저 환경 챕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법적 의무(shall)를 표현함으로써 구속력을 갖는 부분과 노력해야 한다 (shall strive to, shall endeavour to)라고 표현함으로써 권고적 효력에 미치는 부분으로 나뉘는 것을 알 수 있다. 환경법의 적용과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 많은 부분에서 권고적 성격의 표현을 보임으로써 환경 보호에 관한 국가들의 규율 의지가 이전보다는 많이 나아지긴 하였지만, 무역자유화와 견주어 볼 때 아직 확고하지는 못한 것처럼 보인다. 특히, 환경보호수준과 관련하여 위 세 개의 FTA 협정문은 모두 당사국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덧붙여 보다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에다 ‘높은 수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여전히 한계가 보인다.

또한 한·페루 FTA는 관련 규정이 없긴 하지만, EU와 미국과 체결한 FTA에는 대중 참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됴으로써 환경 보호 및 증진과 협정의 이행을 위해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며, 한·미 FTA는 특히 일반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을 보장함으로써 (이행과 이에 대한 감독 규정을 통해) 보다 강력한 환경보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회의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FTA 협정이 WTO협정 보다는 훨씬 더 발전되고 진화된 모습으로 환경 규정을 갖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는 향후 DDA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된다. 환경 보호, 특히 무역 규범 내의 환경 규정의 도입과 전개는 아직 시작 단계에 와 있으며, 앞으로 발전이 기대되는 분야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무역과 환경이 상호 지지적이며 무역자유화가 환경보호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반대로 환경보호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무역자유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은 주목할 만하다.<sup>183)</sup> 또한 한·미 FTA와 한·페루 FTA의 경우 (단서를 달고 있긴 하지만) 일부 다자환경협정상 의무 수행을 위해 무역 제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환경 보호를 위해 무역 규범의 의무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다.<sup>184)</sup>

183) 이재영·김문홍, 앞의 논문, 397쪽; 심영규, 앞의 논문, 94쪽.

184) 동지: 이로리, 앞의 논문, 219쪽.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 및 EU와 체결한 FTA 협정의 환경 조항은 두 선진국의 요구 사항을 맞추는 방식으로 규정된 것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채택할 FTA 협정에서 환경에 관하여 어떠한 입장을 채택할 것인지가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sup>185)</sup>

#### 제 4 절 평가 및 소결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8개의 FTA 협정문에 규정된 분쟁 해결과 예외규정 및 서명일 기준으로 한·미 FTA 이후의 환경챕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거의 모든 FTA에서 FTA와 WTO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분쟁해결절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일단 선택된 절차는 배타적 성격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개 FTA의 분쟁해결절차는 협의, 중재패널과 이행의 단계로 구성되며, 패널보고서는 당사국에 구속력이 있으며 상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WTO와 동시에 FTA의 회원국인 분쟁당사국은 여전히 다자무역체제인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활발히 이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남소의 방지를 위해 하나의 절차만을 선택하도록 강제하였다.

예외규정과 관련하여서는 일반예외의 경우, 보통 GATT 제XX조와 GATS 제XIV조가 그 자체로 또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해당 FTA의 일부로서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보예외의 경우에도 GATT 제XXI조와 GATS 제XIV조의 2가 그 자체로 또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관련 FTA의 일부로 적용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별도의 규정으로 언급하고 있다. FTA의 예외규정은 이와 같이 사실상 GATT의 관련 규정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WTO의 분쟁해결기구를 통해 수차례 해

---

185) 김정곤·금혜윤, 앞의 연구보고서, 97쪽.

석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 FTA를 통해 좀 더 개선된 접근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또한 환경규정은 한·미 FTA, 한·EU FTA 및 한·페루 FTA 등 최근에 채택된 FTA에서 별도의 챕터를 두어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당사국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면서 보다 높은 수준의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해당 규정이 보통 선진국의 입장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받아들여진 것이긴 하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FTA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당 챕터를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깊이 있는 연구와 함께,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환경보호와 무역규범의 조화를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제 6 장 결 론

우리나라를 포함한 우리의 주요 무역상대국들은 모두 다자무역체제인 WTO에 가입하고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컨센서스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합의를 이끌어 내기 어려운 WTO체제의 문제들로 말미암아 최근 들어 무역자유화를 목적으로 양자 또는 소수의 국가들이 참여하는 FTA 체결에 점차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2년 9월 현재, 미국 및 EU와의 협정을 포함하여 8개의 FTA에 가입하여 이를 이행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가 체결하여 발효 중인 8개의 FTA, 즉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ASEAN FTA, 한·인도 CEPA, 한·EU FTA, 한·페루 FTA 및 한·미 FTA를 대상으로 하여 상품무역과 무역구제, 서비스무역과 투자 및 지식재산권, 그리고 분쟁 해결과 예외규정 및 환경규정 등을 중심으로 하여 법적 쟁점이 되는 사항을 비교해서 살펴보았다. 특히, 각 이슈별로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 도표를 작성하여 쉽게 관련 내용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상품무역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비차별원칙을 구성하고 있는 내국민대우와 양허 인하 또는 철폐 및 비관세장벽의 제거를 중심으로 각 FTA별로 규정을 검토하였다. 이외에도 원산지규정과 통관절차, 반덤핑과 상계관세 및 긴급수입제한조치를 규율하는 무역구제제도,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와 표준관련조치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았다. 상품무역에 관한 FTA의 규정은 대체로 관련 WTO협정 및 GATT 규정을 그 자체로 또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FTA에 적용하도록 하였는데, 한·EU FTA와 한·미 FTA를 거치면서 그 규정이 점차 정교해지고 유사해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서비스무역 및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서도 이미 WTO의 관련 협정이 존재하고 있기에, 해당 협정을 주로 FTA에 적용하도록 하는



방식을 보여주었다. 복수국간 무역협정에 해당하는 GPA의 경우에도 GPA의 가입국인 경우에는 역시 GPA상의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는 규정을 두었다. 반면 투자나 경쟁정책의 경우에는 전자는 양자투자협정의 내용과 유사한 방식으로 규율하고, 후자는 양 당사국의 협의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분쟁해결과 관련하여서는 WTO의 분쟁해결절차와 FTA의 분쟁해결절차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이를 배타적으로 이용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실제로는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WTO 절차가 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한편, 예외규정 중 일반예외와 안보예외는 GATT와 GATS의 관련 규정을 그대로 또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국가들의 관심이 보다 증가하고 있는 환경과 무역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FTA에서는 WTO협정보다 개선되고 발전된 규정을 두기 시작하였다. 그 이유는 국제경제법 중에서도 특히 FTA에 관한 법이 현재 계속해서 형성 중에 있으며, 진화의 속도가 빠른 편에 속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는 8개의 FTA는 각각 상대국에 따라 양허와 구체적 의무의 수준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보다 명확해지고 정교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관련 WTO협정의 규정을 기본으로 하여 여기서 좀 더 강화된 무역자유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환경 보호와 같은 예외규정의 확대를 통해 무역과 비경제적 가치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미국이나 EU와 같은 선진국의 입장이 주로 반영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법제가 선진화된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데, 향후 체결하는 FTA에서는 우리나라가 좀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상대국에게 협정문을 제안하고 구성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FTA 체결로 인해 실질적인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해당 업계의 상황과 피해구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검토를 수행하고 이들에 대한 법적 지원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I. 국내 문헌

#### 1. 단행본 및 연구보고서

- 국회입법조사처,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주요 정책 및 입법과제 I, 2012.
- 관세청,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2010.
- 김대순, 『국제경제법론』, 삼영사, 1998.
- \_\_\_\_\_, 『국제법론』, 제16판, 삼영사, 2011.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신국제경제법』, 박영사, 2012.
- 김동훈·김봉철·박찬호, 한-EU FTA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 법제연구원, 2007.
- 김인숙·손희두, 한·미 FTA 투자협상에 따른 국내법제의 정비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7.
- 김정곤·금혜윤, 주요국의 FTA 환경협정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대외 경제정책연구원, 2011.
- 김한성·조미진·정재완·김민성,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 명진호·백청아, 2011년 주요국 FTA 추진동향과 시사점 - 18개 경제권(64개국)을 중심으로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1.
- 문준조, 우리나라의 FTA 체결을 위한 체계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5.
- 이성봉·김관호·이준규·현혜정, 한·미 FTA 투자분야 주요 쟁점이슈와 평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싱가포르 FTA의 주요 내용, 2005.
-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EFTA FTA의 주요 내용, 2005.

## 참고문헌

-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ASEAN FTA 주요 내용, 2007.
-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인도 CEPA 주요 내용, 2009.
- 외교통상부, 한·EU FTA 상세설명자료, 2010.
- 외교통상부, 한·페루 FTA 상세설명자료, 2011.
- 외교통상부, 한·미 FTA 상세설명자료, 2011.
- 정인교, 한·칠레 FTA의 주요 내용,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 조미진·김한성·김민성·양주영, 동아시아 FTA를 대비한 한국 원산지규정 추진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 2. 학술논문

- 강준하, “한국-미국 FTA 환경챕터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제11권 제1호, 2010.
- \_\_\_\_\_, “한국-EU FTA 환경분야에 관한 연구”, 『국제법평론』 통권 제31호, 2010.
- \_\_\_\_\_, “한-미 FTA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S)”, 『국제거래법 연구』 제18집 제2호, 2009.
- \_\_\_\_\_, “한국-미국 FTA 원산지규정에 관한 연구”, 『통상법률』 통권 제80호, 2008.
- 고준성,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FTA 원산지 특례규정 활용방안”, 『안암법학』 제28권, 2009.
- 김대인, “한-EU FTA의 법적 쟁점: 정부조달분야를 중심으로”, 『유럽헌법연구』 제10호, 2011.
- 김대원, “EU FTA 접근방식과 한-EU FTA 평가 -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분야를 중심으로 -”, 『국제경제법연구』 제8권 제2호, 2010.
- 김두진, “FTA와 경쟁정책 - 한미 FTA상의 경쟁 장의 내용 및 국내법 제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한양법학』 제20권 제1집, 2009.

- 김봉철, “한-EU FTA와 경쟁분야의 법적 과제”, 『국제거래법연구』 제18집 제2호, 2009.
- 김인숙, “FTA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연구 - 한국이 체결한 FTA를 중심으로 -”, 『국제법학회논총』 제52권 제2호, 2007.
- 김재성·홍선희, “한미 FTA 협정에서 분쟁해결을 위한 ISD제도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3권 제1호, 2012.
- 권인희, “FTA와 지적재산권”, 『한양법학』 제20권 제1집, 2009.
- 박덕영, “한미 FTA 협정상 관세관련 주요 내용 고찰”, 『조세법연구』 제13집 제2호, 2007.
- 박지현, “한미 FTA속의 TRIPs-Plus”, 『국제법학회논총』 제53권 제2호, 2008.
- 손기윤, “한-EU FTA의 반덤핑규정 분석”, 『법학연구』 제19권 제4호, 2009.
- \_\_\_\_\_, “한-미 FTA의 세이프가드규정 분석”, 『법학논총』 제33권 제2호, 2009.
- \_\_\_\_\_, “한-EU FTA의 상계관세규정 분석”, 『국제거래법연구』 제18집 제2호, 2009.
- 심영규, “지역무역협정(RTAs)의 확산과 지속가능한 발전 - RTAs 내 환경규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제51권 제1호, 2010. 2.
- 오현석, “한미 FTA 투자자-국가 중재의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안암법학』 제37권, 2012.
- 오현석, “한·미 무역구제제도 및 KORUS-FTA 제10장에 대한 평가 및 유의점에 관한 고찰”, 『한국무역상무학회지』 제41권, 2009. 2.
- 유희진, “국제투자협정에서의 수용”, 『국제경제법연구』 제9권 제2호, 2011.
- 이균, “WTO의 FTA룰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7권 제1호, 2007.
- 이대희, “한-EU FTA의 지적재산권 주요 쟁점 분석”, 『고려법학』 제53권, 2009.
- 이로리, “지역무역협정에서의 환경보호”, 『통상법률』 통권 제81호, 법무부, 2008. 6.

## 참고 문헌

- 이영석, “국제상사중재의 준거법 - 법규법(rules of law)을 준거법으로 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 『국제사법연구』 제16호, 2010. 12.
- 이재영·김문홍, “FTA체제하에서 환경규정의 제정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5권 제2호, 2011. 6.
- 왕상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오해와 진실”, 『기업법연구』 제25권 제4호, 2011.
- 정세희, “FTA와 법제 실무”, 『법제』, 2012년 6월.
- 조은래, “한미 FTA 환경협정의 주요쟁점과 평가”, 『환경법연구』 제30권 제1호, 2008.
- 채형복·황해륙, “한·EU FTA 원산지규정에 관한 연구”, 『법학논고』 제32집, 2010.
- 최경진,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과 지적재산권 침해시 손해배상제도”, 『법경제학연구』 제4권 제2호, 2007. 12.
- 최승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공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공법연구』 제36집 제3호, 2008.
- 최태판, “FTA 투자협정과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7권 제2호, 2007.

## II. 외국문헌

- Bartels, Lorand and Ortino, Federico (eds.),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the WTO Legal System*,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 Gantz, David A., *Regional Trade Agreements: Law, Policy and Practice*, Carolina Academic Press, 2009.
- Irish, Maureen (ed.), *The Auto Pact: Investment, Labour and the WTO*, Kluwer Law International, 2004.
- Lester, Simon and Mercurio, Bryan (eds.), *Bilateral and Regional Trade Agreements: Commentary and Analys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 Lynch, David A., *Trade and Globalization: An Introduction to Regional Trade Agreements*,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10.
- Mavroidis, Petros C., Bermann, George A. and Wu, Mark, *The Law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Documents, Cases & Analysis*, Thomson Reuters, 2010.
- Van den Bossche, Peter, *The Law and Policy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Text, Cases and Materials*, 2<sup>nd</sup>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